
국정관리연구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제13권 제4호(통권31호)

2018년 12월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목 차

〈일반논문〉

지역역량강화사업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봉화지역 5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실증분석 / 손창훈·안용진	1
자산유형과 고령자 삶의 만족도: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장향채	21
지역사회 치매노인의 치매예방관리에 관한 구조화 분석: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중심으로 / 최인규·유근환·박지은·장광현	45
한국 고령층의 경제적 복지수요에 관한 연구: 복지의존 선호도와 유관요인에 관한 분석 / 이왕원·김문조	71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정책공감성에 관한 연구: 균형인사정책의 수용성 및 성과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 김선아·박성민	103

지역역량강화사업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봉화지역 5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실증분석

손창훈·안용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물리적 하드웨어 중심에서 비물리적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사업의 일환인 교육·훈련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실증연구는 미비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된 경북 봉화지역 5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소프트웨어 사업 시행에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순위형 로짓 모형을 적용한 실증분석 결과, 주민참여 기회요인의 세부 변수인 주민회의 참여, 선진지 견학 참여, 홍보 및 정보제공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교육훈련 프로그램 만족도에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행정지원/거버넌스, 취업/수입증대 요인은 예상과 다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주민회의 참여($B=5.08$) 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선진지 견학 참여($B=3.09$), 홍보 및 정보제공($B=1.64$)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 주민참여를 통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제공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으며, 따라서 지역리더 육성 보다는 사업참여 주민의 개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공동체 활동에 초점을 둔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 교육·훈련프로그램, 주민만족도, 주민참여, 순위형 로짓모형]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마을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등 상호 협력을 통해 상향식 지역사회개발(communit

development)에 관심을 두어왔다. 1990년대 초 지방자치의 부활과 함께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가 정치적 이슈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정치·행정적 관심도 함께 증가하였다. 1950년대 지역사회개발사업이 시작된 이후,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비록 대부분의 지역사회개발 사업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하향식 개발(top-down development)사업 위주였으나, 2004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시작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마을 권역단위로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수행되는 상향식 지역개발사업(bottom-up development)이라는 점에서 지역개발사회의 본질과 이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민참여형 농촌개발 정책은 아직까지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개발의 핵심 주체인 지역주민들이 정책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체적인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역의 문제 인식부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능력, 지역주민과의 협의과정 도출, 리더십, 자발적인 학습 능력 등이 취약하다는 점을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유학열, 조영재, 정혜영, 2000).

최근 농촌개발의 초점이 과거 하드웨어사업 위주에서 소프트웨어사업 위주의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에 모아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과 이에 필요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실시된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의 7대 부문별 중점 추진과제에 '지역발전 역량강화'가 포함되어, 지역역량강화사업이 농촌지역 발전의 중요한 필요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하드웨어사업을 지양하고, 소프트웨어사업 중심의 역량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농림부, 2012),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주민의 참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지역역량강화사업 즉, 소프트웨어사업에 있어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연구가 거의 이뤄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7년 현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의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하여 향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계획수립 과정과 사업시행에 있어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세부프로그램들이 지향해야할 사업방향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의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역량강화의 개념과 세부 사업내용 등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지역역량강화사업 교육·훈련프로그램 추진현황과 사업비, 사업성과를 검토하였다. 이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를 검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모형과 세부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2005년-2017년까지 사업이 완료된 지역 중에서 우수권역으로 분류되는 권역을 선정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추출된 지역의 사업추진주체들을 대상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의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¹⁾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SPSS 20.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및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순위형 로짓모형을 활용하여 사업추진 주체인 주민들의 평가한 지역역량강화사업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및 운영사례 분석

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지역역량강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²⁾의 농촌공간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사업의 주요 내용은 동일한 생활권·영농권

- 1) 연구에 필요한 설문응답을 확보하기 위해 본 설문조사에 앞서 예비조사(2018년 3월 8일~16일까지 9일간 소천권역, 한누리권역, 오전애권역을 대상으로 실시)를 실시하여 조사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설문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정하여 본 설문조사를 수행함
- 2) 2004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지침서의 개발유형 및 주요사업내용에 따르면, 전통보전, 친환경육성, 자연생태보전, 기초경관형성, 경관주택중점 5가지 기본유형과 농촌관광기반형, 지역 특성화형, 기초생활복지형 3가지의 복합유형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함. 2005년부터 2007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는 2004년도의 기본유형 및 복합유형을 없애고 3~5개 마을로 구성되는 소규모 권역을 설정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소득기반확충 및 기초생활환경정비시설지원과 함께하는 지역혁신을 위한 소프트웨어 관련사업의 시설사업 위주로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 2008년 사업시행지침에서부터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내용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권역별 지원한도 설정기준(대, 중, 소)을 마련하여 권역사업비(기준사업비 55억 원)에 차등을 둬. 2010년부터 국가

등으로 동질성을 가지며,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권역 단위로 개발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기초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 지역사회유지를 위한 사업과 지역역량강화사업 관련 사업으로 나뉜다.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농촌개발정책 관련 지역역량강화의 주요 내용은 연구자들마다 다소 차이와 이견이 존재할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1)참여자 개인의 인적 역량 못지않게 조직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2) 농촌개발사업 추진 조직과 외부 참여주체의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두 가지 핵심적인 지역역량강화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역시 주요 전략으로 강조된다.

〈표 1〉 역량강화의 개념

학자	주요 내용
유정규(2015)	개인, 조직, 사회가 자신의 생활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해 가는 과정 혹은 지역개발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확보과정
유학열, 조영재, 정혜영(2008)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주민 교육 프로그램 등의 연구에 주로 사용
김정섭, 마상진, 권인혜(2009)	역량강화는 ‘개별 인적자원 개발’, ‘조직 개발’, ‘제도적·법률적 틀 개선’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인적자원 개발 차원의 역량강화는 개인이 효과적으로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보·지식에 대한 이해, 습득, 접근,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ABCD Institute (1995)	지역커뮤니티 발전을 이끄는 역할과 효과적 지역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과 커뮤니티 조직의 능력과 기술을 강화하는 것 개인역량, 지역의 민간조직 역량, 공공서비스 역량, 물리적 역량, 그리고 지역경제역량 등 다섯 가지 역량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역의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하면 이 다섯 가지 역량이 모두 혹은 그 중 일부가 강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스키너(1997)	지역조직의 능력, 조직의 구조, 체계, 회원 및 기술을 강화함으로써, 커뮤니티 단위에서 목표를 수립, 달성하고, 파트너십에 관여하며 나아가 지역사업에까지도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일
이윤화(2000)	개인적 변화수준, 조직적 변화수준, 지역사회 변화수준 등으로 개념화되며, 개인 및 조직의 역량이 강화되면 지역역량강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시 개인역량에 영향을 주는 환류과정을 거침
UNCED(1992)	인적자원 개발, 조직개발, 법률적·제도적 틀이라는 세 차원에서 관련 주체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

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지역개발계정사업의 세출)과 제40조(포괄보조금 지원)에 따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사업이 통합되면서 기존 소규모 권역사업에서 마을-소생활권-읍·면소재지-인근도시 등 상호 보완적인 주민 정주 체계를 감안한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함.(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매뉴얼(2004), 농림수산식품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농촌마을 발전의 기초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은 지역 사회 역량을 축적하려는 노력을 말하며, 이러한 역량을 축적하기 위한 활동은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여러 가지 계기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농촌개발 정책사업의 시행지침에서 여러 유형의 역량 강화 활동을 해당 사업의 추진과정에 동반하여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권장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하는 중앙 단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훈련은 일반적으로 중앙 단위와 지방 단위로 이원화되어 진행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앙 단위의 교육·훈련은 대부분 농촌관광개발 분야의 마을 단위 정책사업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나 사업시행지침에는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토론과 학습 이외에 컨설팅, 홍보마케팅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컨설팅, 홍보마케팅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역량강화 전략으로의 전환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실제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당초의 의도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적지 않다. 이는 주민주도를 위한 형식적 틀을 갖췄졌지만 실제의 사업진행과정과 운영에서는 여전히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지원하는 방식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민참여도 형식적인 참여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유학열, 조영재, 정혜영, 200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은 크게 리더교육과 주민교육, 권역특성화교육, 국내외 선진지 견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은 보다 다양한 다수의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 주민참여의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함이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주도, 주민자력의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유지·관리를 통해 사업효과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둔다. 따라서 권역의 여건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과 형태, 방법이 매우 다양해질 수 있으며, 주민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관련 기술과 이론적 강의, 실습, 선진지 견학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론적 강의와 실습 프로그램의 준비와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 강사의 확보와 참여자와의 친밀감 형성을 위한 노력은 주민참여의 호응을 높이고 교육·훈련효과를 증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선진지 견학은 타 지역의 성공적인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노하우를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선진지 견학을 위한 이동, 식사,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이 함께 이뤄지면서 목적활동 이외의 활동시간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 간 유대감 강화를 위한 친목활동이 이뤄지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을 통한 운영관리 능력향상과 개인역량강화, 공동체 활성화 등 사업의 이해도와 참여도가 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라고 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지역역량강화사업 교육·훈련부문 세부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교육 · 훈련 부문	리더교육	- 단계별 지도자 교육, 지역 경영자 교육
	주민교육	- 동기화, 인식변화 교육, 주민워크숍 등
	권역특성화교육	- 도농교류(마을해설사 양성, 농촌관광 운영, 민박서비스, 지역특산음식 개발 등) - 농업인 양성교육(농산물 품질관리, 유통관리, 친환경농업 관련 농산물가공·이용·유통 체계 교육) - 경영인 양성교육(권역사무장, 농업경영, 재무, 지역마케팅)
	국내견학	- 당일, 1박2일 과정으로 국내 선진 농촌마을 견학
	국외견학	- 일본, 유럽 등 권역개발 관련 선진지 견학

자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매뉴얼(2012). 농림수산식품부

2.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사례분석

본 실증연구의 핵심내용인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지역역량강화사업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사례분석은 봉화군 권역사업 대상지에 초점을 두었다. 봉화군은 2012년 농촌개발사업 지역발전위원회 최우수 등급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2006년 서벽권역을 시작으로 9개 권역내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소득증대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위한 총 57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사업이 완료된 5개 권역(서벽권역, 한누리권역, 소천권역, 청량산권역, 오전에권역)을 중심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경북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수사례지로 손꼽히는 만큼 사례 대상지로 선정하게 되었다.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 3〉와 같다.

5개 권역 공통적으로 국내외 선진지견학, 마을리더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으나, 전문가 초청교육 및 분야별 전문교육(친환경 농업 등)은 권역에 따라 선별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교육훈련 사업비 규모는 약 1억 700만원에서 2억 1600 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사업비에서 교육훈련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4%~3.73%로 확인되어 아직까지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의 실제 집행 비율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표 3〉 봉화군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대상지 교육·훈련프로그램 세부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교육·훈련 사업비 (전체 사업비 비중)
서벽 권역	지역리더육성교육	- 실무형 리더교육, 맞춤형 주민교육	193,852,000원 (2.98%)
	권역맞춤형교육 (전문인력육성)	- 목건축 기능 전수과정, 마을해설사 과정, 마을사무장	
	전문가초청교육	- 사업이해를 위한 전문가 초청교육,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	
	친환경농업교육	- 최고경영자과정, 벤처 농업대학	
	국내외 선진지견학	- 국내 선진지견학, 국외 선진지견학(일본)	
한누리 권역	마을리더 및 주민교육	- 실무형 리더교육, 맞춤형 주민교육	216,000,000원 (3.08%)
	권역 맞춤형 교육(전문인력 육성)	- 마을 사무장 과정, 마을해설사 과정, 농촌체험프로그램 지도자 과정, 마을 복지사 과정, 마을 시설물 관리 전문가 과정	
	분야별 전문교육	- 사업이해를 위한 전문가 초청교육 -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	
	국내외선진지견학	- 국내 선진지견학 - 국외 선진지견학(유럽, 독일)	
소천 권역	마을리더 육성교육	- 사업추진사례 등	107,000,000원 (1.94%)
	마을리더 위탁교육	- 농촌관광대학, 마을리더과정(초급, 중급, 고급) - 사무장과정(초급, 중급, 고급)	
	전문가 초청교육	- 사업추진사례, 문화교육(난타) - 사랑채활성화교육	
	국내외 선진지견학	- 국내 선진지견학, 국외 선진지견학(유럽)	
청량산 권역	리더교육	- 마을리더과정(초급, 중급, 고급)	169,000,000원 (2.45%)
	주민교육	- 사업추진사례, 마을가꾸기, 농촌체험 운영, 건강증진, 문화 교육 등	
	전문가 양성교육	- 농촌체험지도사(초급, 중급), 마을해설사과정(초급, 중급) - 향토음식개발	
	국내외 선진지견학	- 국내 선진지견학 - 국외 선진지견학(일본)	
오전애 권역	리더교육	- 지역리더양성, 사무장 초급, 중급, 고급과정	113,500,000원 (3.73%)
	주민교육	- 사업추진사례, 전문가초청교육, 체험프로그램개발	
	국내외 선진지견학	- 국내 선진지견학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 내부자료 활용

III 선행연구 검토 및 조사설계

1. 선행연구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주민만족도에 관한 연구로 허주열(2009)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29개 시·군 87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현황을 분석하고, 추진실태조사와 주민참여 만족도를 추진위원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추진위원에 비해 일반주민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고,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참여도 제고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주민참여 및 추진단계에 따른 만족도에 초점을 두어 분석을 수행하여 소프트웨어 사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한계를 보인다. 안상유·정원식(2014) 연구 역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조사하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영향정도를 밝히고자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경제적 만족도와 사회적 만족도로 구분하여 만족도를 측정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 독립변수 중 행정지원 충분성과 주민참여 기회 변수의 중요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정부에서 우수 대상지로 선정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2008)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 전후 모니터링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과 이를 통한 사업의 시행효과를 분석하였다. 2005년 착수권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시행 효과 분석이지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수행 및 평가 담당자들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자료의 성격이 강해 사업 시행에 따른 중간단계 평가분석을 위한 정량적인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사업시행의 효과를 파악하는데 그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교육·훈련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역량강화에 관한 연구로 서재호(2008)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역사회개발모형을 활용하여 교육훈련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내용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김진경·황기원(2011)은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시대학 교육프로그램의 주민역량강화 효과성을 분석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은 주민역량강화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개인적 변화, 대인적 변화, 사회·정치적 변화로 나타남을 설명하였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주민역량변화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

리와 참가 대상별, 수준별 차별화된 ‘강의내용’ 및 수립된 계획의 예산 및 인력지원 등 ‘실행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각각의 주제에 따라 고찰한 결과,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참여 주체별, 정책별 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와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하고, 농촌지역개발 정책의 변천 과정과 정책적 모순을 지적하고 우리 농촌지역에 맞는 개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 측면에서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정부 기금을 활용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7대 부문별 중점 추진과제로써 막대한 재정투자를 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관점에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시행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의 부문별 세부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미 완료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의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규명하여 향후 지역역량강화사업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및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측면의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기존에 고려되었던 변수를 참조하는 한편, 주민 의식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변수를 세분하여 실증모형에 반영하였다.

2. 연구가설 및 분석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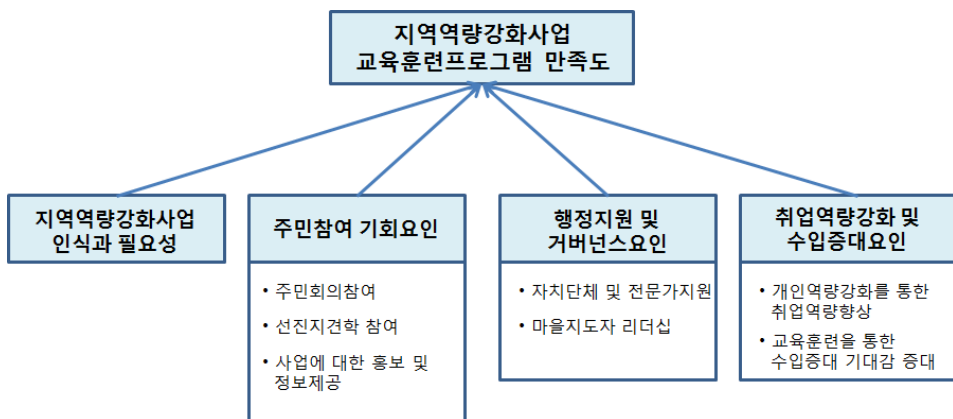
1) 연구가설 및 변수구축

본 실증모형에서 지역역량강화사업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 정의된 4가지 요인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주요하게 언급된 변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무엇보다, 연구 가설 설정을 위한 접근 방법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 이후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와 효과 사이의 연관성 정도를 고려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의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 영향 요인 관련 선행연구(김경희, 2017.; 윤준상, 2012.; 유학열, 2009.; 김제안, 2011.; 허

주열, 2009:)에 근거했을 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지역역량강화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는 사업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역량강화 사업의 긍정적인 인식여부가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로 이뤄지고 이는 곧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주민참여 기회요인인 ‘주민회의 참여’와 ‘선진지견학 참여’,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은 사업추진 주체들에게 사업 참여에 얼마나 많은 참여 기회를 부여하였는가와 실제로 교육·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며, 이를 통해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였다. 행정지원 및 거버넌스 요인으로 ‘자치단체 및 전문가지원’과 ‘마을지도자 리더십’은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지자체와 농어촌공사,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행정적·실무적 지원이 있었는지를 나타내며, 마을지도자인 이장과 추진위원장, 사무장들의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주민들을 사업에 참여시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이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였다. 취업역량강화 및 수입증대요인에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을 통한 개인역량 강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이로 인한 지속적인 수입 증대를 통해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림 5]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 영향 요인



〈표 4〉 지역역량강화사업 독립변수 요인과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와의 가설설정

구분	가설내용	예상부호
가설1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인식과 필요성 요인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	주민참여 기회요인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3	행정지원 및 거버넌스 요인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4	취업역량강화 및 수입증대 요인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지역역량강화사업의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해당지역 소재 주민들이 지역역량강화사업 교육·훈련프로그램 추진과정 및 결과에 대해 느끼고 있는 만족도(5점 척도)를 평가한 측정치를 의미한다. 특히 해당 변수는 김정섭 외(2009), 채종훈(2011)등 선행연구에서 이미 종속 변수로 선정되어 분석된 바 있으며, 농림부(2010)가 제시한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주요 목적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 이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과에 대한 내용적 근거로 활용된 바 있다. 이외에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지역역량강화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주민참여 기회요인, 행정지원 및 거버넌스 요인, 취업역량강화 및 수입증대요인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변수 설정

변수명			세부사업내용
종속 변수	지역역량강화사업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		교육·훈련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독립 변수	지역역량강화사업 인식과 필요성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인식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인지도
	주민참여 기회요인	주민회의 참여	사업추진 과정동안 응답자의 회의 참여 정도
		선진지견학 참여	사업추진 과정동안 선진지견학 참여 정도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	사업추진 과정동안 지역주민대상 설명회 및 정보제공 정도
	행정지원 및 거버넌스요인	자치단체 및 전문가지원	지속적인 자치단체의 관심 및 지원, 전문가지도 등의 만족도
		마을지도자의 활동 및 역량	추진위원장 및 사무장의 활동 및 역량에 대한 만족도
	취업역량강화 및 수입증대요인	신규일자리창출	개인역량강화를 통한 취업역량향상
		개인수입증대	교육·훈련을 통한 수익증대 기대감

2)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경북 봉화군 지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농림축산식품부 기금활용) 5개 권역사업을 대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누리권역, 소천권역, 오전애권역, 청량산권역, 서벽권역 총 5개 권역 2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2018년 4월 13일부터 5월 11일까지 28일간 현지에서 실시하였다. 5개 권역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추진위원 및 마을리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10부 중 결측 값을 제외한 197부의 유효설문지를 통해 분석하였다.

현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은 SPSS 20.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먼저 기술통계와 신뢰도·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지역역량강화사업 인식과 필요성요인 및 주민참여기회요인, 행정지원 및 거버넌스요인, 취업역량강화 및 수입증대요인들인 독립변수와 지역역량강화사업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순위형 로짓분석(Ordered Logit Model)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종속변수가 순위형 변수일 경우 다중회귀모형 대신에 보다 발전된 모형인 순위형 로짓모형이 활용된다(김호정, 2007).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최종학력, 연소득, 마을 거주 기간을 통제변수로 하였고, 설명변수인 지역역량강화사업 인식과 필요성요인, 주민참여기회요인, 행정지원 및 거버넌스요인, 취업역량강화 및 수입증대요인들의 하위변수들과 종속변수인 지역역량강화사업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를 중심으로 인과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순위형 로짓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설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종속변수에 대한 각 독립변수들의 영향 정도를 파악하였다.

IV. 실증모형 분석결과

1. 기초통계량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의 교육·훈련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한 권역별 대상지 주민 197명의 인구 통계적 특성 요인을 포함한 실증모형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표6>와 같다. 우선 종속변수로 정의된 지역역량강화사업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 관측치 평균값은 3.41로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는 50세 이상 60세 미만의 인구가 76%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성별은 남성이 77%로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학력은 고졸이 79%를 차지하였다. 연소득은 2천만원미만이 76%를 차지하였으며, 거주기간은 15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가 70%로 비교적 장기 거주가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의 경우 소천권역의 비중이 22%로 가장 많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오전애권역이 비교적 낮은 16%로 확인되었다.

〈표 6〉 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		총 표본수(197)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		3.41	.703	3	5
성별(남=1)		.77	.421	0	1
연령	50세미만	.05	.222	0	1
	50세이상~60세미만	.76	.430	0	1
	40세 이상	.19	.395	0	1
학력	중졸이하	.16	.363	0	1
	고졸	.79	.410	0	1
	대졸이상	.02	.143	0	1
연소득	2천만원미만	.76	.430	0	1
	2천만원이상	.24	.430	0	1
거주기간	15년미만	.30	.457	0	1
	15년이상	.70	.457	0	1
권역	서벽권역	.21	.410	0	1
	소천권역	.22	.417	0	1
	한누리권역	.21	.406	0	1
	청량산권역	.20	.403	0	1
	오전애권역	.16	.363	0	1
역량강화사업 인지도		2.64	.687	1	4
주민회의 참여		3.27	.579	2	5
선진지견학 참여		3.00	.433	2	4
홍보 및 정보제공		3.13	.523	2	5
자치단체 및 전문가지원		3.46	.645	2	5
마을지도자 리더쉽		3.37	.641	2	5
개인역량강화를 통한 취업역량향상		2.88	.579	1	4
교육훈련을 통한 수입증대 기대감 향상		2.78	.507	1	4

2. 순위형 로짓모형 분석결과

순위형 로짓모형을 적용한 분석 결과는 아래<표7>와 같다. 우선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VIF값을 도출한 결과, 6이하로 확인되어 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모형 적합성 검토 결과, χ^2 값이 1515.063***, 유사 결정계수 Cox & Snell과 Nagelkerke R제곱 값이 각각 .626과 .784으로 나타났다.

〈표 7〉 실증모형 분석결과

변수명		B	S.E.	Wald	VIF
성별(남=1)		1.053	.714	2.175	1.081
연령 (50세이상 60세미만)	50세 미만	-1.805	2.049	.776	1.398
	60세 이상	.349	.657	.282	1.218
학력	중졸 이하	-1.475	1.628	.821	5.614
	고졸	-4.146	2.975	1.942	5.946
연소득	2천만원 미만	-.687	.602	1.306	1.046
거주기간	15년 미만	.107	.613	.031	1.190
사업권역 (서벽권역)	소천권역	1.648	.800	4.249**	1.993
	한누리권역	.110	.940	.014	1.985
	청량산권역	1.295	.855	2.294	2.080
	오전애권역	-1.176	1.269	.859	1.883
역량강화사업 인지도		-.182	.388	.219	1.176
주민회의 참여		5.086	.866	34.463***	2.576
선진진견학 참여		3.094	.800	14.941***	1.354
홍보 및 정보제공		1.646	.748	4.846**	2.576
자치단체 및 전문가지원		.565	.398	2.017	1.112
마을지도자 리더십		-.308	.449	.470	1.290
개인역량강화를 통한 취업역량향상		.023	.579	.002	1.683
교육훈련을 통한 수입증대 기대감 향상		-.539	.564	.914	1.798

*= $p<.05$; **= $p<.01$; ***= $p<.001$

N=197, $\chi^2=1515.063$ ***, Cox and SNELL .626, Nagelkerke .784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내용에 근거한 실증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실증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세부 프로그램 사업 변수 중에서 주민회의 참여, 선진지 견학 참여, 홍보 및 정보제공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보였다($p<.01$). 특히, 주민회의 참여 변수의 영향력($B=5.086$)이 상대적으로 높게 확인되

어 주민회의 참여 기회가 제도적 또는 민주적으로 확립되어 있을수록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증가함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성공요인으로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기존 선행연구(이재문·이사문, 2003)와 유사한 결과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에 대한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국내외 선진지 견학이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타 지역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함으로써 사업 성공 노하우를 체득하면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동기부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보 및 정보제공 역시 예상대로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민회의 및 선진지 견학 등 직접적인 참여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전문가집단 및 행정 차원의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제공된 정보는 간접적으로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농촌주민들의 특성상 각 마을의 이장들 또는 지역 리더들, 행정적인 정보 제공을 제외하고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은 중요한 사업 성공 요인으로 평가된다.

반면, 비록 통계적 유의미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예상과 다르게 마을지도자 리더십의 경우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가설과 상반된 분석 결과가 도출된 점은 사업추진에 있어 전반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는 높았으나 지역리더인 추진위원장, 사무장과 마을이장 및 주민들 간의 교육·훈련프로그램 참여정도에 따라 견해차이, 다툼 등의 갈등요인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에 (-)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훈련을 통한 수입증대 기대감 향상에 있어서도 특성화 교육으로 개인역량(자격취득 등)을 강화하거나 농업활동 및 농외소득(개별농가 수확체험)창출과의 연계가 이뤄져야하나 한시적인 수입증대에 그치며, 지속적인 수입증대로는 이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갈등발생 요인인 추진위원장의 독선, 개인이익 챙기기, 마을간 사업배분, 공동사업 이해관계, 지자체의 무관심이 지속적인 갈등을 조장하고 추진위원회를 통한 갈등조정이 필요하다는 기존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허주열·이성근, 2009).

권역별로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서벽권역에 비해 소천권역이 유의

미한 수준($p<0.01$)에서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한누리권역, 청량산권역, 오전애권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소천권역은 다른 4개의 권역에 비해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가 50%정도 낮게 구성되어 있고 전체 사업비에서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중이 가장 낮은 1.94%로 집계되었으나, 교육·훈련프로그램 추진 횟수와 복지 교육을 통한 동아리활동 프로그램 운영이 타 권역에 비해 참여도도 높고 조직적으로 활성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 성별, 연령, 학력, 연소득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거주 기간에 따라 마을과 사업에 대한 애착이 강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해당 변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V. 결론 및 시사점

과거 물리적 하드웨어 사업에서 비물리적 소프트웨어 사업 중심으로 농촌개발사업 모델이 전환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에 기반한 상향식 사업추진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 측면에서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하여 향후 지역역량강화사업 세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는 경북 봉화군 지역 5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유효설문 응답을 토대로 순위형 로짓모형을 적용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주민참여 기회요인의 세부 변수인 주민회의 참여, 선진지견학 참여, 홍보 및 정보제공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에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행정지원/거버넌스, 취업/수입증대 요인은 예상과 다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주민회의 참여($B=5.08$) 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선진지견학 참여($B=3.09$), 홍보 및 정보제공($B=1.64$)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향후 예산제약 상황을 가정할 경우, 행정지원/거버넌스, 취업/수입증대 요인에 초점을 둔 사업 운영보다는 민주적이고 균등

한 주민회의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타 지역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사업의 성공 노하우를 체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5개 사업 권역별 분석결과,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실제 사업비 규모가 적고 전체 사업비에서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사업 비중이 가장 낮은 소천권역의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게 확인됨에 따라, 다양한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의 조직적인 운영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운영시 일부 추진위원들과 리더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권역 주민들과 추진위원들이 사업을 공유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주민역량강화와 인식의 변화는 농촌의 인구구조변화와 생산여건의 변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주민참여를 통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제공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다각화, 다변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단계별, 수준별로 주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교육·훈련프로그램들은 대부분이 지역리더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사업에 대한 인식개선에서부터 개인역량을 위한 특성화교육, 공동체와 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교육의 일방적 전달교육이 아닌 쌍방향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술된 정책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경북 봉화 지역내 5개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기에 도출된 결과를 다른 지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연구 설계 측면에서 5개 사업 권역별 샘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사업 대상지 고유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사업 운영상 특수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의 공간 범위, 사업 대상지 수, 유효 설문 표본수를 보완하여 본 실증연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보다 일반화 된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충남발전연구원. (2009). “충남 농촌의 인적역량강화 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권오상·이기원·손은일. (2008).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이와 역량강화사업모델의 개

- 발.” 「한국지역사회학회」, 16(4): 133-156.
- 김경희·오대민·정충섭. (2017). “농촌 지역사회개발의 학습단계와 주민역량강화: 자립형 농촌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농촌지도학회」, 24(1): 49-61.
- 김진경·황기원. (2011). “도시대학 교육프로그램의 주민역량강화 효과성 분석: 푸른경기21 도시대학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2(5): 5-18.
- 김정섭. (2009). “농촌개발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강화방안.” 「한국농촌지도학회」, 17(3): 385-418.
- 김제안·채종훈. (201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주민만족도 및 개인소득증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산업경제학회」, 24(5): 2671-2691.
- 김주현·장명준·조덕호. (2017).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귀농정착자들의 귀농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상북도 상주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29(2): 47-68.
- 서재호. (2008). “교육훈련을 통한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 방안 연구: Rothman의 지역사회개발모형(CDM)을 토대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3): 65-87.
- 안상유·정원식. (201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주민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논단.
- 오다해·김철영. (2014).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참여주체의 특성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기법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15(5): 5-16.
- 오형은·김용근. (2015). “주민참여를 통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조경학회」, 43(5): 121-131.
- 윤준상·박은병. (2012). “효율적인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주민만족요인분석.” 「한국농촌지도학회」, 19(4): 773-798.
- 이왕기·지남석. (2015). “사례 비교를 통한 인천시 재생사업의 주민참여 개선방안 연구.” 「국토지리학회」, 49(3): 307-323.
- 이정환·남진. (2008). “농촌마을 유형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계획내용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주대진·김진모. (200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주민참여 방법론 탐색.” 「한국농촌지도학회」, 11(2): 303-320.
- 지은구. (2006). “지역사회 역량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19: 47-75.

허주열·이성근. (200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주민참여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지역개발학회」, 21(3): 45-70.

허주열. (200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 수준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손창훈(孫彰焄): 주저자.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지역개발, 도시·지역계획, 도시재생, 지역역량강화 등이다.(thsckdgn33@naver.com)

안용진(安鏞鎭): 교신저자.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도시계획학박사학위(School of Public Policy)를 2013년 취득.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 책임연구원을 역임하고 현재 대구대학교 도시·조경학부 도시계획전공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관심 분야는 도시계획(건강도시, 토지이용, 지속가능한 개발, 주거환경/생활안전), 도시설계(단지설계, 해외신도시개발) 등이다. 미국 Lusk Center for Real Estate의 Doctoral Dissertation Fellowship(2011~2012)을 수상하였으며, 주요 연구실적으로 “The Prevalence of Asthma and Severe Asthma in Children Influenced by Transportation Factors: Evidence from Spatial Analysis in Seoul, Korea(2019)”, “Do local employment centers modify the association between neighborhood urban form and individual obesity(2018)”, “Built environment factors contribute to asthma morbidity in older people: A case study of Seoul, Korea(2018)”, “Sustainable Mobility: Longitudinal Analysis of Built Environment on Transit Ridership(2016)”, “Health impact of TOD in Seoul and Los Angeles(2015)” 등이 있다. (yjahn@daegu.ac.kr).

자산유형과 고령자 삶의 만족도: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항채

본 연구는 자산유형과 사회적지지가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 본조사 및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이론을 검토한 후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첫째,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관계를 나타낸 반면 부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둘째, 가계총자산과 삶의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가 나타난 반면 부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산유형별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며, 또한 자산과 삶의 만족도의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지지가 관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고령화,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사회적지지, 삶의 만족도, 국민노후보장패널]

I. 서론

지구촌에는 고령화의 큰 흐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는 지속성, 가속성, 확장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위력은 상상을 뛰어넘고 있다(장항채, 2017). 유엔이 2012년에 발표한 세계인구전망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상의 65세 이상 인구가 2010년 429백만 명에서 2030년에는 905백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10년 11%에서 2050년 35%로 세계 최고의 초고령 사회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Paul Irving, 2016; 김선영 역).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진행속도 면에서 볼 때 최고 수준으로 사회에 미치

이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 '고령자 삶의 만족도의 다차원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2017)'에 포함된 '자산과 삶의 만족도' 부분을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연구의 기초부분은 대체로 수정 없이 인용하였음.

논문접수일: 2018.11.03, 심사기간(1차~2차): 2018.12.05~12.26, 게재확정일: 2018.12.26

는 파급효과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현상은 노인빈곤율 및 자살률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노인빈곤율의 경우, 2016년 OECD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2.6% 보다 4배 높은 49.6%를 나타내고 있다(오승연, 2016)¹⁾. 2016년 보험개발원 자료에서는 은퇴 후 최소생활비 이하 인원이 전체의 84.0%로 예상하고 있어 노후빈곤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²⁾. 자살률³⁾의 경우도 2013년 OECD 자료에 의하면 10만명 당 자살인원이 OECD 평균 12.2명 보다 2배 이상 높은 28.7명으로 나타났고, 특히 201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70대가 62.5명, 80대가 83.7명으로 후기 고령자의 자살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장항채, 2017).

자산의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50세 이상의 가구주로 이루어진 가구에 대해서 중위자산의 50%를 자산빈곤선으로 보고, 그 이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를 빈곤가구로 정의한 다음 가구주별 자산빈곤 현황을 살펴보면 자산빈곤층은 80대 57.7%, 70대 47.5%, 60대 28.6%로 나타나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산빈곤층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상호, 권순현, 2008). 또한 순자산의 구성비율에서도 부동산자산이 1.024(7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은 0.1022(8%), 기타자산은 0.0212(2%), 부채는 -0.1478(11%)로 나타나(남상호, 권순현, 2008의 자료를 기초로 재작성) 노후 생활에 매우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이 고령화에 따른 높은 빈곤율 및 자살률 그리고 자산유형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 기인한 낮은 고령자 삶의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관계망 구축

- 1) 노인빈곤율은 65세 이상 노인들 중 전 국민 중위소득(national median income)의 50% 미만의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노인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 노인빈곤율 지표는 구성에서 공적연금, 퇴직연금, 화폐연금, 근로소득 등 가처분소득만 포함되고 주택, 농지와 같은 부동산 등 자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교치 이다.
- 2) 보험개발원 설문조사(2014~2015년 1,266명)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최소생활비는 평균 월 196만원으로 발표(2016.1.19. 보도자료)
- 3) 자살의 관련이론을 보면, 먼저 경제적 접근이론인 Hamermesh & Soss(1974)의 기대효용이론은 합리적인 개인이 남은 인생의 기대효용이 '0'이 되었을 때 자살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접근이론인 Durkheim(1951)의 사회통합이론은 자살을 개인의 병리가 아닌 사회적 현상으로 보고, 사회통합의 약화를 사회의 유대감의 약화로 설명하고, 이것은 사회관계의 약화로 인한 소외감이 우울증을 유발시켜 자살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사회통합론을 계승한 Shaw & McKay(1942)의 사회해체론(Disorganization Theory)은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행으로 지역의 공동가치를 약화시키고 사회해체를 야기하여 범죄를 일으키게 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경제적, 사회적 요인은 자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요인을 통해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는 자살로 이어지게 된다.

에 대한 논의도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고령화 정책은 산업화 시대를 지배해 온 주류 경제학과 인간자본론⁴⁾의 이념 하에 경제적 지원정책 위주로 획일적으로 시행되어 왔다(장항채, 2017). 즉 현행 정부의 고령화에 대한 복지정책은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경제적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고령자 삶의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관계망 구축에서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정책 방향이 경제적 지원 중심에서 고령자 삶의 만족도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자원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노인 빈곤으로부터 발생하는 고독사 및 자살률의 증가와 노후 생활에 불리한 자산유형,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의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는 고령자 삶의 만족도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천문학적인 재원의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원의 효율적 집행이 차선책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자산포트폴리오를 통해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기초로 최적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도되었다. 선행연구를 보면 자산은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얻는 소득의 감소나 직업상실, 이혼 등을 겪게 될 때 감소된 소득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며(McKernan & Sherraden, 2008; Skinner, 1988), 이전에 축적된 자산은 소득이 감소하기 전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Haveman & Wolff, 2005, Lerman & McKernan, 2008 재인용). 그러나 자산유형별로 삶의 만족도와 영향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자산유형별 삶의 만족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고, 양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 매개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부채 등 자산유형별로 고령자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규명하고, 그에 따른 자원의 최적 분배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고령자 삶의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적지지 제도 구축에 관해 논의 하였다.

4) Sen은 '인간자본론은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을 감수하고 생산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인간의 행위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Sen, 1999:414)'을 지적하고,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길 실질적인 자유(substantive freedom)를 증진하는 토대역량 접근을 제시하였다. 토대역량이란 자신의 삶을 원하는 대로 꾸려갈 수 있는 능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기능들의 다양한 조합'(Sen, 1999:133)을 의미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고령자 삶의 만족도

역사적으로 공경의 대상인 노인은 산업화를 거치면서 인식이 변하여 과거에 집착하는 집단으로 사회에 부담을 주는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이 시기를 ‘자기실현의 기회’로 보고, 생산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자기계발과 관리에 힘쓰고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긍정적 특성에 대한 관심으로 변하고 있다(한경혜, 윤성은, 2007). 이러한 변화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삶의 만족도는 Neugarten, Havighust, Tobin(1961)이 50~90세의 남녀 노인 177명을 대상으로 한 삶의 만족도 측정 연구에서 사용된 개념으로 GDP(국내총생산) 등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할 수 없는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일상생활 및 살아온 인생에 대한 만족과 인생목표의 달성에 대한 만족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장항채, 2017). 유사한 개념으로 최근 폭넓게 사용되는 ‘well-being’은 산업화가 가져온 물질적 측면의 편중된 현대인들의 병폐를 인식하고, 육체적·정신적 측면의 조화를 통해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새로운 삶의 경향 또는 문화를 의미한다. 그 외에도 행복, 삶의 질, 성공적 노화 등이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행복에 관한 논의는 기원전 그리스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시대정신에 따라 개념과 기준도 변화되어왔다. 행복의 개념에 대한 쾌락적 차원(hedonism)과 자기 실현적 차원(eudaimonism)의 두 흐름은 오늘날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과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PWB)으로 발전되어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주관적 삶의 만족도(Subjective Well-Being: SWB)는 자신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하여 만족하는가를 자신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정도으로써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 폭넓게 사용되는 개념이다(장항채, 2017).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인지적 평가와 감정적 평가를 포함하며, 개인의 심리적, 환경적 요인과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는 생활역사에 따라 영향을 받고, 생활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주관적이며, 복합적인 감정이다(Diener, 1984:542-575).

삶의 만족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삶의 만족도와 영향요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먼저 경제적 요인과 삶의 만족도의 영향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Johnson

& Krueger, 2006; Krause & Borawski, 1995; 권미애, 김태현, 2008; 이호성, 2005, 허준수, 2004). 반면에 잘 알려진 Easterlin paradox는 일정한 소득 이상 도달하면 평균 행복은 개인의 GNP가 상승하여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Veenhoven(1993)은 일본의 연도별 소득 대비 평균적인 행복 연구에서 1인당 GNP가 상승하여도 평균적인 행복 수준은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는 절대소득보다 상대적 소득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Clark, A. E., Frijters, P., & Shields, M. A., 2008)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 요인과 함께 사회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적 요인과 삶의 만족도의 영향관계에서 Kahnemman의 모멘트-베이스방법에 의한 연구를 보면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혼자 있는 것에 비해 강한 긍정적 느낌과 강한 부정적 느낌을 주지만 긍정적 느낌이 압도적이다(Kahnemman et al, 2004).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거의 항상 쾌락의 원천이라는 직관을 지지하는 증거이다(Bruni, Porta, 2005; 강태훈역, 142).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는 조명한과 차경호(1998)의 한국형 삶의 만족도 측정 문항(K-SWLS: Korean version of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을 사용하였다. 이는 Diener, Emmons, Larsen, Griffin(1985)이 개발한 척도를 번역하여 한국 실정에 맞춘 것으로, 전반적인 삶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2. 사회적지지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로 네트워크 사회인 현대에서는 더욱 사회적 관계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는 개인이 외부로부터 받게 되는 유형적 또는 무형적 자원이다. 사회적지지를 일반적으로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서 제공되는 모든 물질적·심리적인 도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넓게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는 모든 형태의 상호작용으로 보았다(Cobb, 1976). 1970년대 후반 Cobb(1976), Hirsh(1980) & House(1981) 등이 가족, 친구, 동료 등에 의해서 제공된 여러 형태의 도움을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s)를 사용하였고, 사회관계망, 사회적 지지체계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장향채, 2017). 사회적 지지를 개인의 기본 욕구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충족되는 정도로 정의하고, 여기서 기본 욕구는 사랑, 인정, 존중, 안정감, 소속감, 정체성 등과 관련되고, 개인이 자신의 대인관계를 통해 취할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고

보았다(Thoit, 1982).

사회적 관계의 의미인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은 사회학에서 Barnes(1954)에 의해 사용되었고, 사회관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여러 학문분야로 연구가 확대되었다. 사회적지지의 개념에는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s),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s),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가 포함된 의미이다(House, et, al, 1985). 사회적지지는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에 속해 있으면서 개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형성된 관계(Hirsh, 1980)로, 정서적 관심, 물건이나 서비스의 제공, 다양한 정보 등이 교환되는 사람들 간의 상호교류(House, 1981)로, 또는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원조기능(Thoits, 1986)으로, 원조가 필요한 개인이나 가족에게 제공되는 정보나 물질과 같은 자원(Dunst, et. al, 1989) 등으로 분야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적 입장에서는 사회적지지는 사회에서 살기 위한 개인의 노력에서 나타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제공되는 공식적 및 비공식적인 활동이나 관계라고 보기도 한다(Barker, 2000).

선행연구에서 노년기의 사회적지지는 노인의 정신건강, 우울감, 행복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전혜정, 2004),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문제 등을 감소 또는 완화시켜 성공적 노화와 심리적 안녕감을 갖게 한다(이신숙, 이경주, 2002). 사회적지지는 노인의 삶에 일관성 있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히고 있으며(손화희, 2004), 사회적 관계망은 노인의 삶의 질에 있어서 노인 자신이 속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교환함으로써 노후적응에 부정적인 요소들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김수현, 강현정, 김윤정, 2008).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지지의 영향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저소득 여성노인이 일반 여성노인 보다 사회적지지가 낮게 나타났고(김정엽, 이재모, 2008), 일반가정이 저소득 가정에 비해 어머니의 우울수준은 낮고, 사회적지지 및 부부관계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임원신, 2011).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노인의 신체적 장애와 삶의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낮은 사회적지지가 삶의 만족도를 줄이고 우울증을 높이는 중요한 이유로 설명하였고(Newsom, J. T., Schulz, R, 1996),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증상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의 영향관계에서 개인적지지(personal support)는 삶의 질에 긍정적인 관련이 있고 증상스트레스에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난 반면, 종교적지지는 증상스트레스를 매개하지 않았으며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Manning Walsh, J. 2005). 자산과 삶의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검증하

는 것은 실증분석의 몫이라 생각한다.

사회적 요인인 사회적지지를 매개변수로 설정한 이유는 자산과 고령자 삶의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사회적 영역(사회적지지)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지지가 심각한 노인빈곤의 현실에서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여하는 영향관계를 확인하고, 사회적 영역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사용한 Cohen & Syme이 1985년에 개발한 척도로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로 구성된 측정 지표가 사용되었다.

3. 자산

가계의 자산 및 부채는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고 삶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소득이 노동을 통해 얻어진 보상으로서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되므로 유동적인 특성을 갖는 반면, 자산은 미래의 특정한 목적이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소비를 줄여 오랜 기간 축적되어 비유동성이 강한 특성을 갖는다(Spicer, 2000). 자산은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소득이다. 즉 자산이 많을수록 소비지출이 늘어나고 자산이 적을수록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소비는 줄어든 것이고 저축을 하려는 성향은 늘어날 것이다(Keynes, 1937). 자산은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얻는 소득의 감소나 직업상실, 이혼 등을 겪게 될 때 감소된 소득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며(McKernan & Sherraden, 2008; Skinner, 1988), 이전에 축적된 자산은 소득이 감소하기 전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Deaton, 1991; Haveman & Wolff, 2005, Lerman & McKernan, 2008 재인용). 또한 자산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을 나타내는 효능감과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절제력, 친화력, 적극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Yadama & Sherraden, 1996), 반면 자산이 없는 가난한 사람의 모습은 무력감, 의존성, 열등감 등으로 나타난다(Lewis, 1998). 심리적 측면에서도 자산은 노인의 우울감에 영향을 주고(김자영, 한창근, 2015),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김동배, 박은영, 김성웅, 2009). 자산의 변화는 총소득, 자산수익률, 소비, 자본이전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관계식(accounting identity)에서 자산분포의 불평등의 결정요인이나 불평등 추이 분석에 있어서 아주 유용한 분석도구가 된다(남상호, 권순현, 2008). 현재의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축적해 놓은 자산이 없으면 소비를 줄이게 되는 반면 현재의 소득이 적더라도 축적해 놓은 자산이 많으면 소비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를 결정짓는 것은 소득이 아니라 축적해 놓은 자산이라 할 수 있다(Danziger, Haveman, & Plotnick, 1981).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은 추가소득 중에서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하는데 (Mankiw, 2009), 자산이 많을수록 한계소비성향은 커지고 자산이 적을수록 한계소비성향은 낮아진다.

구체적 자산유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보면 가계의 자산 항목으로 자가주택소유, 기타주택소유, 사업체소유, 예적금보유, 저축성보험보유, 공적연금보유, 개인연금보유 등과 삶의 만족도 관계 분석에서 자가주택소유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며,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김동배 외, 2009). 또한 자산은 여성의 결혼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자산이 많을수록 여성의 결혼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Dew, 2007). 또한 구조방정식의 총효과 분석결과, 자산 및 소득(거주주택소유,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임금소득, 국민연금소득, 개인연금소득) 영역이 연관강도(magnitude)면에서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강소량, 문상호, 2011).

일반적으로 자산은 부채를 포함한 개념으로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개념으로, 이 순자산에 의해 한계소비성향이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부채는 가구의 소비지출을 제약할 수 있고(심영, 1993; 유경원, 2013), 한계소비성향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자산과 함께 살펴야 할 중요한 항목이다. 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채비율은 부채를 소득으로 나눈 개념으로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채를 줄이거나 소득을 늘려야 한다. 자산은 다짐을 줄여 결혼만족도를 높여주는 반면, 부채는 경제적인 압력을 높이고 다짐을 증가시켜 결혼만족도는 낮아진다(Dew, 2007). 부채는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과 부(-)의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부채를 갚기 위해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고 노동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이며, 돈에 관한 연쟁을 증가시키고(Dew, 2008), 부채는 이혼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Dew, 2011). 일반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은 우울감을 증가시키고, 결혼 만족도를 감소시키고, 부부 갈등을 증가시키고, 이혼할 공산을 높이는 예측자이다(Dew, 2008; Amato & Rogers, 1997; Conger et al., 1990; Gudmunson, Beutler, Israelsen, McCoy, Hill, 2007; Stanley, Markman, & Whitton, 2002). 자산수준이 높아질수록 우울감은 감소되고 부채가 증가할수록 우울감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자영, 한창근, 2015).

이상의 논의와 같이 자산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같은 자산수준에서도 상대적인 요인, 자기효용 등 심리적 측면이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산유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가계총자산과 하위변수로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부채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4. 가설 설정

본 연구는 자산과 고령자 삶의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고,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가계총자산과 하위변수로 자산유형별로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부채를 독립변수로,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요인인 사회적지지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자산유형과 고령자 삶의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자산유형과 고령자 삶의 만족도 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가계총자산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부동산자산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금융자산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기타자산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4: 부채는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가계총자산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는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2-1: 부동산자산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는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2-2: 금융자산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는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2-3: 기타자산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는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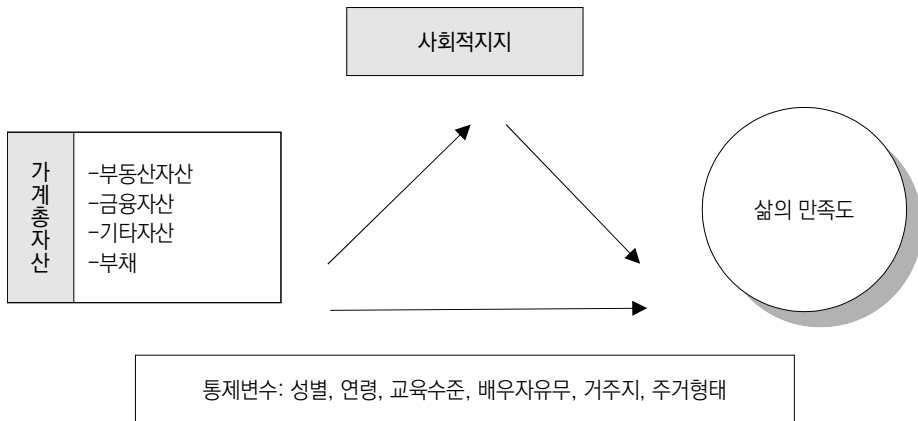
가설2-4: 부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는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Ⅲ. 연구설계

1. 연구 모형

자산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이들 사이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연구모형에 따른 변수 설정은 독립변수로 가계총자산과 종속변수로 삶의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사회적지지를,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거주지, 주거형태를 설정하였다.

〈그림 1〉 사회적지지 매개효과 분석 연구 모형



2. 연구 설계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 본조사 및 부가조사를 통해 조사된 내용 중 독립변수로 가계총자산을, 종속변수로 삶의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사회적지지를 설정하였다. 먼저 자산은 설문항목을 기초로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부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는 조명한과 차경호(1998)의 한국형 삶의 만족도 측정 문항(K-SWLS: Korean version of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을 사용하였다. 이는 Diener, Emmons, Larsen, Griffin(1985)이 개발한 척도를 번역하여 한국 실정에 맞춘 것으로, 전반적인 삶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

발되었다.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전혀 아니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7점 척도로 구성되었다(송현주, 박주완, 임란, 이은영, 2016). 또한 사회적 지지는 Cohen & Syme의 척도로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의 총 1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이루어진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적용된 통계자료의 수집은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실시한 2014년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 본조사 및 부가조사자료를 통해 이루어 졌다.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는 2005년부터 매 짝수 년(본조사) 및 홀수 년(부가조사)에 전국의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패널가구를 추적조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고령자 패널조사이다. 부가조사는 격년마다 실시되는 본조사를 위한 패널의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패널관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본 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매 짝수년마다 실시된다(오승연, 2016). 본 연구에서는 제5차 본조사와 부가조사를 병합(merge)하여, 법정 고령자 연령인 60세를 기준으로 60세 미만과 무응답자를 제외한 5,090명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연구가설을 실증분석하기 위해 SPSS 22.0v를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적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가설1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가설2 검증을 위해 사회적지지의 매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 결과 및 시사점

1. 기술적 통계 분석

연구의 실증분석에 적용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성 2,079명(40.8%), 여성 3,011명(59.2%)이며, 연령은 60대 2,036명(40.0%), 70대 2,216명(43.5%), 80대 이상 808명(16.5%)이다. 학력은 무학 853명(16.8%), 초등학교 1,977명(38.8%), 중학교 939명(18.4%), 고등학교 955명

(18.8%), 대학(4년제미만) 73명(1.4%), 대학교(4년제) 254명(5.0%), 대학원 38명(0.7%)이다. 혼인상태는 배우자 없음 1,679명(33.0%), 배우자 있음 3,411명(67.0%)이며, 거주지역은 서울 513명(16.2%), 광역시 819명(25.8%), 도지역 1,844(58.0%)이다. 거주형태는 자가 2,426명(82.7%), 전세 243명(8.3%), 월세 263명(9.0%)이다.

〈표-1〉기술적 통계 분석

구분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	2,079	40.8
	여	3,011	59.2
연령	60대	2,036	40.0
	70대	2,216	43.5
	80대 이상	838	16.5
학력	무학	853	16.8
	초등학교	1,977	38.8
	중학교	939	18.4
	고등학교	955	18.8
	대학(4년제미만)	73	1.4
	대학교(4년제)	254	5.0
	대학원	38	0.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411	67.0
	배우자 없음	1,679	33.0
거주지역	서울	513	16.2
	광역시	819	25.8
	도	1,844	58.0
거주형태	자가	2,426	82.7
	전세	243	8.3
	월세	263	9.0
전체		5,090	100.0

2. 인과관계 분석

1) 가설1 검정

가계총자산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을 검정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계총자산과 삶의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2>와 같다. 검정결과, 가계총소득에서 t 값은 2.607, $p=.009$ 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즉 가계총자산이 높으면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가계총자산의 공차한계는 .711로 0.1보다 높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고, Durbin-Watson은 1.681로 잔차들 간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2>가계총자산 회귀분석 결과1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차 한계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3.087	.174		17.715	.000		R=.236 R2=.056 F=20.057 P=.000 Durbin-Watson =1.681
성별더미	-.010	.033	-.007	-.290	.772	.748	
연령대별	-.099	.022	-.097	-4.577	.000	.890	
교육수준	.017	.013	.032	1.371	.170	.742	
배우자더미	-.015	.034	-.010	-.428	.669	.711	
주거지역더미	.202	.041	.104	4.959	.000	.901	
주거형태더미	-.264	.044	-.138	-6.043	.000	.760	
가계총자산	.051	.020	.062	2.607	.009	.711	

-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2) 가설1-1~4 검정

하위가설에서 자산유형별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정한 결과는 <표-3>과 같다. 자산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자산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자산유형별로는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가설1-1, 1-2, 1-3은 채택되었다. 반면 부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아 가설1-4는 기각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금융자산에서 β 값이 .133, 부동산자산에서 β 값이 .097, 기타자산에서 β 값이 .079 순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 값이 49.473($p=.000$)을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은 .174로 17.4%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1.620으로 잔차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공차한계는 모든 변수항목에서 0.1보다 높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

〈표-3〉자산별 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차 한계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725	.108		25.116	.000		R=.418 R2=.174 F=49.473 P=.000 Durbin-Watson =1.620
성별더미	-.003	.025	-.002	-.101	.920	.746	
연령대별	-.080	.016	-.099	-4.909	.000	.866	
교육수준	.044	.009	.104	4.762	.000	.739	
배우자더미	.063	.025	.056	2.469	.014	.697	
주거지역더미	.088	.031	.057	2.789	.005	.841	
주거형태더미	-.253	.033	-.168	-7.702	.000	.739	
부동산자산	.051	.012	.097	4.384	.000	.722	
금융자산	.022	.003	.133	6.580	.000	.858	
기타자산	.013	.004	.079	3.765	.000	.804	
부채	-.002	.003	-.012	-.623	.533	.891	

-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이상에서 가계총자산과 자산유형이 고령자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결과로 볼 때 금융자원(financial resources)이 환경적 충격으로부터 삶의 만족을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 Johnson, RF Krueger, 2006)는 선행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유형별로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금융자산에서 β 값이 .133, 부동산자산에서 β 값이 .097, 기타자산에서 β 값이 .079 순으로 나타난 결과는 부동산자산 중심의 자산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자산유형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즉 부동산자산이 전체자산의 80%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고령자의 자산유형은 삶의 만족도를 상대적으로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동산자산에 편중되어 있는 자산구조를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가장 높은 설명인자인 금융자산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거시적인 제도구축이 필요하다. 급속한 고령화 속도와 준비 없는 노후의 혹독한 현실을 생각할 때 실효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즉 부동산자산 중심의 자산구조를 빠른 기간 내에 금융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부동산자산에 대한 유동화 제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부동산자산을 금융회사, 자산관리공사 등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자산에 대해 일정기준가격(공시기준가격 등)의 일정비율을 선택하여 금융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금융자산으로 전환하지 않고도 금융자산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자산은 다 톱을 줄여 결혼만족도를 높여주는 반면, 부채는 경제적인 압력을 높이고 다 톱을 증가시켜 결혼만족도는 낮아진다(Dew, 2007)는 선행연구와 달리 우리나라 고령자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심각한 정도의 부채가 아니라면 부채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선행연구와 달리 우리나라 고령자에서는 유연한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3) 가설2 검증

가계총자산과 삶의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사회적지지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1단계 회귀계수는 .196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서는 .239,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180, 매개변수가 .300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유의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t값과 p값은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2단계 독립변수 베타값도 3단계 독립변수 베타값 보다 크게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값은 1단계에서 3.9%, 2단계에서 5.7%, 3단계에서 14.4%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즉 가계총자산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지지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계총자산과 삶의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사회적지지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2는 채택되었다.

〈표-4〉가계총자산 매개 회귀분석 결과1

독립/매개/종속변수	매개효과 검정단계	표준화된 베타값	t	유의확률	R제곱
가계총자산/사회적지지/ 삶의만족도	단계1	.196	10.197	.000	.039
	단계2	.239	12.550	.000	.057
	단계3(독립변수)	.180	9.732	.000	.144
	단계3(매개변수)	.300	16.183	.000	

4) 가설 2-1~4 검증

하위가설에서 자산유형별과 삶의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자산은 로그 처리하여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부채를 독립변수로 분류하였고, 사회적지지를 매개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5>와 같다. 우선 부동산자산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역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 회귀계수는 .160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서는 .220,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171, 매개변수가 .310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유의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t값과 p값은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2단계 독립변수 베타값도 3단계 독립변수 베타값 보다 크게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1은 채택되었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값은 1단계에서 2.6%, 2단계에서 4.9%, 3단계에서 14.2%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금융자산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 회귀계수는 .171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서는 .254,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202, 매개변수가 .299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유의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t값과 p값은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2단계 독립변수 베타값도 3단계 독립변수 베타값 보다 크게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2는 채택되었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값은 1단계에서 3.1%, 2단계에서 6.5%, 3단계에서 15.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기타자산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 회귀계수는 .175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서는 .244,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192, 매개변수가 .299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유의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t값과 p값은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가설2-3은 채택되었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값은 1단계에서 3.1%, 2단계에서 6.0%, 3단계에서 14.6%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부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 회귀계수는 .100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서는 .059, 3단계에서는 .026, 매개변수가 .331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유의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t값과 p값은 3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않아 매개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2-4는 기각되었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값은 1단계에서 1.0%, 2단계에서 .4%, 3단계에서 11.2%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요약하면 자산유형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에서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채에서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2-1, 2-2, 2-3은 채택되었으나, 가설2-4는 기각되었다.

〈표-5〉자산별 매개 회귀분석 결과

독립/매개/종속변수	매개효과 검정단계	표준화된 베타값	t	유의확률	R제곱
부동산자산/사회적지지/ 삶의만족도	단계1	.160	8.238	.000	.026
	단계2	.220	11.469	.000	.049
	단계3(독립변수)	.171	9.235	.000	.142
	단계3(매개변수)	.310	16.757	.000	
금융자산/사회적지지/ 삶의만족도	단계1	.176	9.097	.000	.031
	단계2	.254	13.372	.000	.065
	단계3(독립변수)	.202	10.957	.000	.151
	단계3(매개변수)	.299	16.220	.000	
기타자산/사회적지지/ 삶의만족도	단계1	.175	9.076	.000	.031
	단계2	.244	12.847	.000	.060
	단계3(독립변수)	.192	10.426	.000	.146
	단계3(매개변수)	.299	16.222	.000	
부채/사회적지지/ 삶의만족도	단계1	.100	5.120	.000	.010
	단계2	.059	3.036	.002	.004
	단계3(독립변수)	.026	1.420	.156	.112
	단계3(매개변수)	.331	17.800	.000	

이러한 분석결과는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과 삶의 만족도의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지지가 관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사회적지지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의 빈곤율과 자살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획일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개선하기보다 사회적지지를 담보하는 생활 공동체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정책적 초점을 두는 것이 보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역별 고령자 생활공동체 설립을 확대해 나가고 공동체를 통한 사회적관계망을 촘촘하게 구축함으로써 사회적지지를 강화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Cohen & Syme의 척도를 기준으로 볼 때 기초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 의료급여제도 등 물질적지지에 치중된 정책은 고령자 삶의 만족도 향상에 제한적이다. 최근

비물질적 사회 서비스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등으로 확장되고는 있지만 물질적지지 외의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 등을 포괄하는 균형 있는 정책 실시로 고령자 삶의 만족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급속한 고령화 및 재원마련의 어려움과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 측면을 고려한다면 경제적 지원과 함께 사회적 관계망 구축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돌봄, 간병 등 서비스와 함께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과 정책 마련이 고령자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년 후견 인제도나 미국 내 주립대학에서 60세 이상 노년층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노인 친화적 커뮤니티 구축은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크다. 또한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의무 보고자 지정제도나 공동체 관계망 강화를 통하여 고령자의 경험과 지식을 지역 공동체 발전에 활용하는 시니어 콥스 봉사제도 등도 사회적지지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연구실’로 잘 알려진 핀란드 북카렐리아 지역의 경우도 75세 이상 고령자의 요양시설 이용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대부분 본인 집에 거주함으로써 고립을 방지하여 고령사회에 대한 새롭고 긍정적인 관점이 생성된 점도 눈여겨 볼 사안이다. 특히 고령자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우리나라의 경우 자택에서 지속적인 생활을 보장하면서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다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고령사회 문제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고령화로 나타나는 지역별 양상과 고령자의 삶의 방식에 차이를 고려하여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또는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고령자의 참여를 통해 해결하려는 자세는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지원 중심의 획일적 복지 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적 생활방식을 고려한 고령자 삶의 만족도 중심의 복지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V. 결론

자산유형별과 사회적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검정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총자산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계총자산 증가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자산유형별로는 금융자산에서 β 값이 .133, 부동산자산에서 β 값이 .097, 기타자산에서 β 값이 .079 순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자산유형별로 고령자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고령자의 부동산자산 중심의 자산유형은 삶의 만족도를 상대적으로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자산에 편중되어 있는 자산구조를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가장 높은 설명인자인 금융자산 중심의 자산유형으로 재편이 필요하다.

둘째, 자산과 삶의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계총자산과 삶의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사회적지지의 매개역할을 확인하였다. 자산유형별로는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채에서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회적지지를 통해 고령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경우 확실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개선하기보다 경제적 지원과 함께 사회적지지를 담보하는 생활 공동체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정책적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자산과 삶의 만족도의 영향관계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자산유형별로 따른 영향관계와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밝히는데 초점을 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2014년 자료에 의한 횡단분석에 머물러 종단분석을 통한 자산유형별 변화추이를 보여주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자산유형별 외에 경제적 영향요인으로 소득, 소비지출에 대한 종합적인 인과관계를 함께 밝히지 못한 점은 한계 및 향후 과제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태훈 역. (2015), 「행복의 역설」, Bruni & Porta의 'Economics and happiness: Framing the analysis'. OUP Oxford.
- 강소랑·문상호. (2011), “중,고령자의 삶의 질에 관한 증험적(Evidence-Based) 정책설계-고령화연구패널(KLoSA)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0(2), 353-381.
- 권미애·김태현. (2008),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자원봉사활동집단과 경제활

- 동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8(4), 1089-1111.
- 김동배·박은영, 김성웅. (2009), “고령자의 자산유형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제 활동의 조절효과 검증.” 「사회복지정책」, 36(3), 471-494.
- 김선영 역. (2016), 『글로벌 고령화 위기인가 기회인가』, Paul Irving, 아날로그
- 김수현·강현정·김윤정. (2004), “농어촌 여성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3), 51-71.
- 김자영·한창근. (2015), “노인가구의 자산수준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복지정책」, 42(1), 55-79.
- 김정엽·이재모. (2008), “저소득 여성노인과 일반재가 여성노인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39), pp. 397~418
- 남상호·권순현. (2008), “우리나라 고령자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과 빈곤분석: 국민노후 보장패널 조사(KReIS)자료를 중심으로.” 국민연금공단 인터넷자료.
- 손화희. (2004), “서울지역 노인의 건강증진행위와 관련된 생태학적 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12), 77-92.
- 심영. (1993), “가계부채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4(2), 29-50.
- 이신숙·이경주. (2002), “노인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22(1), 1-20.
- 이호성. (2005), “도시노인의 사회적 유대와 생활만족도 연구.” 「한국노년학회」, 25(3), 123-138.
- 임원신. (2011), 가정의 소득수준, 어머니의 우울 및 관계적 변인(사회적지지, 부부관계, 정서적 부모자녀관계)이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15(4), 51~71
- 오승연. (2016), 소득계층별 기대수명 격차와 노후소득, KIRI Weekly 주간포커스 4.4
- 유경원. (2013), ‘가계부채의 확대에 따른 리스크 요인 점검’, KIF working paper.
- 전혜정. (2004), “미국노인의 사회적 지원 제공과 정신건강: 자료분석.” 「한국노년학」, 24(1). 89-105.
- 조명한·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서울: 집문당.
- 한경혜·윤성은. (2007), “대중매체에서의 신노년 담론 분석: 신문매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7, 299-322.
- 허준수. (2004), “지역사회거주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4(여름), pp.127-151.

- Amato, P. R., & Rogers, S. J. (1997). "A longitudinal study of marital problems and subsequent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2-624.
- Barnes, J. A. (1954). "Class and committees in a Norwegian island parish." *Human relations*, 7(1), 39-58.
- Barker, R. C. (2000). *Social Work Dictionary*(3rd ed.). Washington D.C: NASW press.
- Bruni, L., & Porta, P. L. (Eds.). (2005). *Economics and happiness: Framing the analysis*. OUP Oxford.
- Clark, A. E., Frijters, P., & Shields, M. A. (2008). "Relative income, happiness, and utility: An explanation for the Easterlin paradox and other puzzl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6(1), 95-144.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ohen, S. E., & Syme, S. L. (1985). *Social support and health*. Academic Press.
- Conger, R. D., Elder Jr, G. H., Lorenz, F. O., Conger, K. J., Simons, R. L., Whitbeck, L. B., ... & Melby, J. N. (1990). "Linking economic hardship to marital quality and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43-656.
- Danziger, Haveman, & Plotnick(1981). "How income transfer programs affect work, savings, and the income distribution: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 Dew, J. (2007). "Two sides of the same coin? The differing roles of assets and consumer debt in marriag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8(1), 89-104.
- _____. (2008). "Debt change and marital satisfaction change in recently married couples." *Family Relations*, 57(1), 60-71.
- Dew, J., & Dakin, J. (2011). "Financial disagreements and marital conflict tactics." *Journal of Financial Therapy*, 2(1),
- Diener, Ed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3): 542-575
-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unst, C. J., Trivette, C. M., Gordon, N. J., & Pletcher, L. L. (1989). Building and mobilizing informal family support networks. Support for caregiving

- families: Enabling positive adaptation to disability, 121-141.
- Easterlin, R. A. (1995). "Will raising the incomes of all increase the happiness of al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27(1), 35-47.
- Gudmunson, C. G., Beutler, I. F., Israelsen, C. L., McCoy, J. K., & Hill, E. J. (2007). "Linking financial strain to marital instability: Examining the roles of emotional distress and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8(3), 357-376.
- Haveman, R., & Wolff, E. N. (2005). Who are the asset poor? Levels, trends, and composition, 1983-1998. Inclusion in the American dream: Assets, poverty, and public policy, 61-86.
- Hirsch, B. J. (1980). "Natural support systems and coping with major life chang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8(2), 159-172.
-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 House, J. S., Kahan, R. N., Mcleod, J. D., & Williams, D. (1985). Measures and concepts social support. *Social Support & Health*, 83-108.
- Johnson, W., & Krueger, R. F. (2006). "How money buys happiness: Genetic and environmental processes linking finances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4), 680-691.
- Kahneman, D., Krueger, A. B., Schkade, D., Schwarz, N., & Stone, A. (2004). "Toward national well-being accounts." *American Economic Review*, 94(2), 429-434.
- Keynes, J. M. (1937).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 Krause, N., & Borawski, C. E. (1995). "Social class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among older adults." *The Gerontologist*, 35(4), 498-508.
- Lerman, R. I., & McKernan, S. M. (2008). Benefits and consequences of holding assets. Asset building and low-income families, 175-206.
- Lewis, D. D. (1998, April). Naive (Bayes) at forty: The independence assumption in information retrieval. In European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Berlin, Heidelberg: Springer.
- Neugarten, B. L., Havighurst, R. J., & Tobin, S.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 Mankiw, N. G(2009). It may be time for the fed to go negative. New York Times.
- McKernan, S. M., & Sherraden, M. W. (Eds.). (2008). Asset building and low-income families. The Urban InSTITUTE.
- Skinner, B. F (1988). "PREFACE TO THE BEHAVIOR OF ORGANISMS." *Journal of the experimental analysis of behavior*.
- Spilerman, S. (2000). Wealth and stratification process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annualreviews.org
- Stanley, S. M., Markman, H. J., & Whitton, S. W. (2002). "Communication, conflict, and commitment: Insights on the foundations of relationship success from a national survey." *Family process*, 41(4), 659-675.
- Thoits, P. A. (1982).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support a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45-159.
- _____. (1986). "Social support as coping assista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4), 416.
- Yadama, G. N. & Sherraden, M (1996). Effects of assets on attitudes and behaviors: Advance test of a social policy proposal. Social Work Research.
- Veenhoven, R.(1993). Studies in socio-cultural transformation, No. 2. Happiness in nations: Subjective appreciation of life in 56 nations 1946-1992. Rotterdam, Netherlands: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장항채(蔣恒埰): 고려대에서 2014년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강원대에서 2017년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국어린이금융대학에서 대표로 재직 중이다. 주 연구 분야는 고령화, 삶의 만족도, 행복경제학이다. 최근 주요 논문들로는 '고령자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7), '소득유형과 고령자 삶의 만족도'(2018) 등이 있다(pg0857@naver.com).

지역사회 치매노인의 치매예방관리에 관한 구조화 분석: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최인규·유근환·박지은·장광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의 중요한 정책가운데 치매관리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치매관리의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효과적 관리를 위한 향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경증치매 관리를 포함한 현장의 복잡한 정책상의 문제에 대한 관련전문가들의 전체 인식구조화를 통해 본질적 문제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그 단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첫째, 치매예방관리의 활성화 요인 도출 및 유형화 하였다. 둘째, DEMATEL을 활용하여 주요 치매관리 활성화요인들 간 인과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제3차 치매예방계획을 대상으로 운영 활성화 요인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향후 치매예방관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13개의 치매예방관리 활성화 요인들의 관리방안 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치매예방관리 활성화 요인으로 최우선적인 5가지는 치매환자 가족 간병부담을 위한 재정, 치매예방 실천 방법, 간병비 사회적 지원, 치매환자 재가 및 시설 돌봄 지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국가치매관리정책에 대한 구체화 및 다부처 통합을 위한 연계 및 조정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치매관리정책,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DEMATEL, 구조모델, 치매환자 돌봄지원]

I. 서론

치매환자의 일반적인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데 주로 인지력과 기억력 상실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수행 할 수 없을 정도의 뇌질환을 겪고 있으며, 중증인 경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이른다. 고령층이 발병률이 높고 최근 고령화 문제와 함께 노인치매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추세이다. 세계알츠하이머협회(ADI)는 65세 이후 치매발병률이 5년 간격으로 두배 이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수는 세계적으로 2010년에 3천 560만명에서 2050년에는 1억 1

천 540만명에 이르게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2015년도에 치매환자 비율이(65세 이상) 9.8%이었지만, 2060년에는 16.7%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

이처럼 65세 이상의 노인치매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과 맞물려 치매관리에 대한 비용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치매관리비용이 2015년에는 13조 2천억에서 이와 같은 추세라면 2050년에는 106조 5천억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치매관리의 재정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치매질환의 특성상 환자개인을 포함한 치매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과 지역사회의 문제로 확대되어 의료 및 부양비용의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인치매는 단편적인 개인질환의 위험성으로 볼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함에 있어 국가관리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중대한 보건의료정책 과제로 실행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는 치매를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2008년에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동시에 2011년에는 ‘치매관리법’을 제정하여 3차례에 걸쳐서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치매를 개인의 질병문제로 국한시키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중요한 정책아젠다로 인식됨에 따라서 국가중심의 다양한 치매관련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노인치매의 심각성이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치매관리에 대한 이해결핍과 해결방안의 우선순위도 충분히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국가주도의 치매관리정책계획과 프로그램의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역사회복지의 효율적인 과제 분석과 집행력의 적실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직접참여하고 느끼고, 문제현안에 대한 의견조정의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치매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의 복잡한 연관성의 인과구조를 파악함에 있어서 계량화 할 수 있도록 하는 DEMATEL분석기법은 매우 유용한 적용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DEMATEL분석기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보건 및 환경문제, 도시재개발문제 등 실제적인 사회현상 등의 인과구조의 연관성을 분석에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사회복지정책 분야에서 DEMATEL분석기법을 활용한 사례가 없기에 이에 적용가능성(유용성)의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치매관리의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효과적 관리를 위한 향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증치매 관리를 포함한 현장의 복잡한 정책상의 문제에 대한 관련전문가들의 전체 인식구조화를 통해 본질적 문제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그 단초를 제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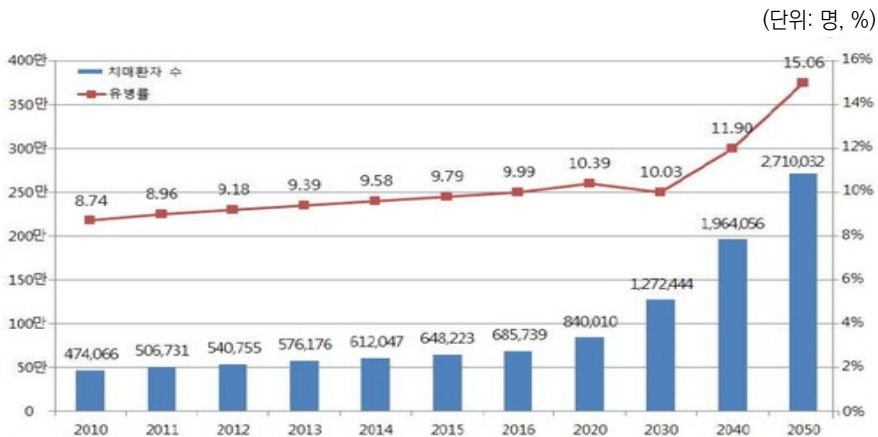
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국내 치매관리의 현황 및 전달체계

치매노인환자는 2015년 기준 보건복지부 ‘치매 유병률’ 조사에 의하면 65만명에 도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향후 치매노인환자의 증가율은 2020년에는 84만명, 2030년에는 127만명, 2050년에 이르면 271만명에 도달하여 현재의 약 4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분당서울대병원, 2016). 즉, 노인인구의 9.8%에서 그 중에 치매노인환자가 2050년에는 15.1%정도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림 1>에서와 같이 국가치매관리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나아진 것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그림 1〉 노인인구의 치매유병률, 치매환자 현황(65세이상)



자료: 보건복지부,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 2012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와 치매환자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국가치매관리를 위한 재정비용이 연간 10조원의 막대한 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재정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있다. 치매환자의 증가와 재정부담을 살펴보면,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에 의하면 2015년에 12조 6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 정도이며, 2050년에는 치매환자가 271만명이 되면 GDP의 1.5%까지 이르면 그에 따

른 재정부담은 48조 6000억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표 1〉 치매환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

년도		2013	2020	2030	2040	2050
실질 GDP		11조3천4백억	14조7천1백억	19조3천8백억	23조8천4백억	27조8천7백억
치매의 회적비용	사회적비용	11조 7천억	15조2천억	23조1천척	34조2천억	43조2천억
	GDP 대비	GDP약1.0%	GDP1.0%	GDP1.2%	GDP1.4%	GDP1.5%

자료: 보건복지부의 「치매노인 실태 조사(2011)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2014)」에 의한 추정을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 산정.

정부는 지난 2008년 치매종합관리대책을 처음으로 발표하며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2012년에는 치매관리법을 제정하고 2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2~2015년)을 수립했다. 정부는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 등을 위한 돌봄 인프라 구축과 요양서비스 공급 측면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겠다는 목표는 달성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만 6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치매 선별검사자 중 치매 확진자는 2.1%에 불과하였다. 같은 기간 치매유병률(어떤 시점에 일정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병자 수와 그 지역 인구 수에 대한 비율)이 9.6%인 점을 감안하면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수준인 셈이다. 그나마도 2013년 치매확진자 2.31%(치매 유병률은 9.39%)보다도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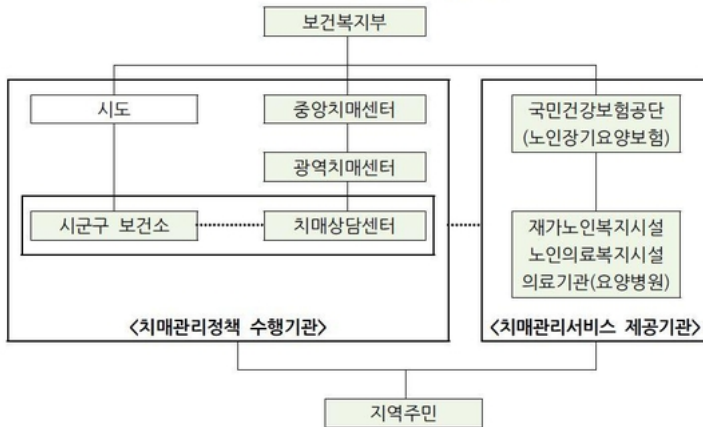
이처럼 치매 조기 확인이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치매 조기 검진 시스템을 노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다. 대한노인회가 2012년 전국 65세 이상 노인 14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7.4%는 '조기 치매 검사가 필요하다'고 대답했지만, '건강보험 노인 치매 검사'와 '보건소 치매 검사'를 모르는 이들이 각각 65.7%, 54.6%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차 치매종합관리대책에 대한 평가에서도 "선별검진자 중 치매 발견률이 치매 유병률에 비해 낮다"며 "7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치매 환자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혜자는 23만 6000명이며, 나머지 37만 6000여명은 가족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는 전체 환자의 60% 이상이 정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상태이다.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중풍 환자 등의 경우 요양시설 이용료를 본인이 20%만 부담하게 하고 보험급여로 80%를 내주는 일종의 사회보험제

도이다. 정부는 의료비와 간병비, 교통비 등 치매 환자 1명을 돌보는데 필요한 비용을 연간 2030만원 정도이지만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수입의 20%를 지원하도록 한 국고 지원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2〉 치매관리사업의 전달체계



자료: 각종 정책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7.

2. 국가치매관리정책의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치매노인에 대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종합적인 정책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일부 치매정책을 수립하였고, 2차와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종전의 치매사업 대부분은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전부 포함되었다.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의 주요정책 방향은 1차 치매계획에서 치매노인에만 국한한 정책수립이었다면, 2차와 3차를 거치는 동안 치매환자를 포함한 돌봄서비스의 제공자와 지역사회까지 모두 포함시켜 정책 대상자를 확대시켰다. 다만, 1차 치매관리계획 사업을 보완하고자 2차 치매관리계획은 추진기간을 3년으로 하였으며, 이는 1, 3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고 큰 틀에서 한단계 발전시킨 형태라고 본다. 3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은 치매환자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라는 측면에서 치매환자 및 부양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연구개발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1, 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과 다소 차별화된 정책이 포함되었다.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살펴보면, 1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국민들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기검진에 대한 인식을 홍보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치매 노인의 건강증진사업과 연계, 치매노인의 유형별 맞춤형 관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치매관리 구축 등의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치매노인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치매환자 부양부담의 경감 및 치매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을 보완하였다. 이는 3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 치매관리법 제정과 치매조기검진 등 사후사업의 기본을 마련하는데 정책적 의의가 크다.

〈표 2〉 연차별 치매관리종합계획

구분	제1차 치매관리 종합계획	제2차 치매관리 종합계획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
추진시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비전	노인의 편안함과 인격적인 생활	-	환자와 가족이 사회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가 수 있는 사회구현
추진방향	건강증진사업과의 연계시킴	치매를 예방하고 발견하고 치료하고보호에 대한 체계적 기반구축	지역사회에서 치매 중증도별 치료와 돌봄이 서비스
	치매 유형별 맞춤관리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노년의 불안감 해소	환자의 권리와 보호와 가족의 부양비 경감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종합적·체계적 치매관리체계구축	치매에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관심 고취	-
추진정책	치매 조기발견, 예방강화	조기발견, 예방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및 관리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치매 치료와 관리	맞춤형 치료와 돌봄 서비스 강화	편안한 환자 진단 및 치료의 돌봄이 서비스 제공
	효과적 치매관리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인프라스트럭처 확충	환자 가족의 부양비 경감
	치매환경 부양비 경감, 부정적 인식 개선	가족지원과 사회적 인식전환확대	연구와 통계, 기술을 활용한인프라스트럭처 확충

2차 국가치매종합계획은 법적 기반을 둔 국가적 차원의 치매관리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특징을 갖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치매노인관리 전달체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치매노인 예방조기발견, 치매환자 돌봄과 가족지원 등 돌봄 요양서비스의 공급 등의 외부적인 요소에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는 치매의 예방과 발견후 치료하고 보호하는 체계화,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 노년의 불안감 해소, 치매의 인식전환 등 사회적 관심사항에 대한 세가지 치매관리 정책방향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보완 차원에서 2차 치매관리중

합계획은 치매조기발견과 예방, 맞춤형 치료와 돌봄, 가족지원과 사회인식 전환 등 치매관리를 위한 전달체계 및 인프라의 확충으로 1차 치매관리종합계획과 다소 개선된 정책내용을 갖고 있다.

3차 국가치매종합계획은 기존 공급자 측면이 아닌 수요자 측면에서 치매노인환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였다는 것이 다른 1, 2차 계획과 차별화 된다. 이는 치매관리 사업이 주로 치매환자에 대한 단편적인 돌봄과 복지서비스 중심에서 벗어나 보건의료분야를 통한 치매노인환자의 맞춤형 치료의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보건 및 복지의 균형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설정과 정책의 성과를 높이려는 설계를 시도하였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에 3차 국가치매종합계획은 지역사회중심의 치매노인 예방관리, 치매돌봄 서비스제공, 안전한 치매환자의 진단, 치매노인환자의 가족부양 경감, 인구통계 및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확충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3. 지역사회 치매예방관리의 구조적 문제

치매노인은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의 가족 또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에 파급되는 구조적 문제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치매예방관리에 있어서 다양한 사업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시스템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치매예방관리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예방관리이다. 치매는 약 70여개의 종류로 다양하며, 조기발견이 이루어지면 그 치료와 관리는 가능하여진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치매에 대해 노화현상의 일환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치료의 적정시기를 놓쳐 치매관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부는 치매환자 및 가족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치매예방에 대한 치료와 관리까지 가능한 종합적인 치매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정책방안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둘째, 치매환자치료·돌봄서비스이다. 특히, 노인의 지역별 총괄 광역치매센터의 부재 및 조직인력 충원부족의 문제이다. 노인의 치매치료를 위한 접근성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으며, 아직 경남과 울산, 광주, 세종 등에는 치매 환자의 치료와 관련 인력의 교육과 훈련을 해당 지역 내에서 총괄하는 '광역치매센터'가 없다. 치매

거점병원도 전국적으로 7곳이며, 서울과 부산,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남에는 치매거점병원이 없다. 치매거점병원이 2012년 7개 지정된 이후 추가되지 않고 있어 지역사회 중심 치매 치료와 관리 체계 확립이 미흡한 실정이다. 치매 관리 전담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다. 전국 227개 지자체 중 155곳이 보건소 자체적으로 치매 관리업무를 담당하는데, 대부분 농촌에 위치한 이들 보건소의 47.7%가 치매 전담부서를 두지 않고 있다. 전국 치매상담센터인원 830명 중 치매사업 담당은 485명이며 58.4%에 불과했다. 41.6%(345명)가 겸임인력으로 나타났다(국회에 산정책처, 2014).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건소 내 치매관리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것부터 진행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의 예산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와 전문 의료기관 및 대학, 종합복지관 등과의 협력해 치매관리서비스의 공공성은 보장하되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장한나, 2016). 또한 치매 관련 데이터베이스(DB)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산발적으로 운영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의미있는 통계를 산출해 분석하고 있지 못하는 점 역시 문제로 꼽힌다. 치매 연구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기관별 연구도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치매환자 가족지원이다. 치매관리의 우선순위 선정, 민관 파트너십 확대, 부양가족들의 부담, 치매관리 예산확보의 어려운 문제 등 다양하게 내재되어 있다.

근본적으로 노인의 치매는 정복할 만큼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치매를 둘러싼 모든 영역에 예산과 인력들을 투입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매관리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택과 집중적인 대처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치매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치료에 초점을 맞춘 사후적 접근방식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고, 정부가 적기에 개입해 질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장한나, 2016).

지역사회의 치매관리체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서비스중 필요한 것은 추가하면서, 불필요한 것은 즉시 삭제하여 재정비를 하여야한다. 또한, 지역사회와 자원을 연계해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매관리 전담기관인 광역치매센터를 주축으로 하는 민관 파트너십 확대가 필요하다(김근혜·윤은기, 2016).

그리고, 치매 환자로 인해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부담은 국가에서 치매환자가 발생때부터 그이후의 단계별로 알아서 처리하는 구조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가 치매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며 어디서, 어떻게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부터 시작해서 금전적인 비용 문제, 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한다(정순돌, 2005).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치매환자를 노령의 배우자 등이 간병하는 '노노케어'(老老care) 구조로 문제점이 많다. 국가는 치매전문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치매교육인프라를 구축하여 어르신 돌보미에 대한 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치매관리의 구조적 문제 중에서 치매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치매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며, 특히 정부는 지방 지역 치매 사업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4. 선행연구 검토

치매관리의 선행연구는 크게 치매예방 및 관리, 치료로 구분된다. 이에 대부분의 연구들은 치매에 대한 치료는 치매재활 등에서 다루고, 복지, 심리분야는 치매예방 및 관리에서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에서와 같이 치매예방 및 관리에 대한 영향력 있는 주요요인들을 확인하고자 기존의 연구들을 찾아보았다.

선행연구검토 결과 치매의 생활습관에 대한 연구로써 김성민 외(2011)의 연구는 치매환자들의 운동량과 낮은 체질량 수 등과 관련된 요인으로 치매가 자주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하은호 외(2011)은 치매 운동과 체중 그리고 음주 등과 같이 평상시 생활습관과 관련된 요인이 인지장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서경현 외(2009)는 치매환자와 가족부양자들의 부양부담과 관련하여 그들의 신체증상, 우울증상에 대해 관련성이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치매환자에 대한 가족부양자의 건강과 생활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안전한 임상적 차원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차원들이 개입되어야 한다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고숙정 외(2013)은 치매지식, 자기효능감과 치매예방과의 상호영향관계에서 치매의 지식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현주 외(2015)는 치매관리에 있어서 개인적 관리보다 사회 및 가족지원이 긍정적으로 부양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치매환자의 인식개선과 지원시스템들을 구축하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하며 치매환자의 장기 입원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기 위해서는 지역환경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근혜·윤은기(2016)의 연구는 지역의 사회의 치매관리의 효율적인 방안을 하기 위해서 치매노인의 예방과 관리의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협력적인 지원인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검토하면 치매관리

에 있어서 우울정도를 포함한 생활습관, 치매지식 향상, 치매환자의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에 대한 감소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체계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Ⅲ. 조사설계

1. DEMATEL 기법을 활용한 치매관리종합계획 평가항목 도출

본 연구에 앞서 선행연구와 설문조사 및 사례분석을 활용하여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분석하였으며, 총 13개의 부족 역량 요인을 도출하였다. 아래 <표 3-1>는 도출된 13개 평가항목과 지표에 대한 정의이다.

<표 3-1> 치매예방관리

영역	평가항목	지표정의
치매 예방 관리	생활 속 치매예방 실천 지원	- 일상 속 습관 실천을 통한 치매발생 위험요인*사전관리 - 치매예방실천지수(Dementia-free Index:Defri) 개발 - 건강한 노인 대상 인지훈련 및 치매예방 콘텐츠 확산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친화적 환경을 조성	- 전국민 대상 치매예방교육과 친화적 인식조성 - 치매 파트너즈 50만명 모집과 확대후 인식개선 - ‘치매안심마을’ 운영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도입 - 지역사회 치매 인식개선 활동 지속 활용 -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하는 법령 및 사회적 용어 정비
	3대 치매 고위험군 예방관리 및 지속적으로 조기발견을 지원	- 치매상담센터 중심으로 3대 고위험군 관리 - 지속적 치매조기발견 지원 -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의 허브(Hub)로써 시군구 치매상담센터 역량 강화
치매 환자 치료·돌봄 서비스	지역 중심의 치매환자 치료 및 전문적관리시스템 구축	- 치매검사항목 급여화를 통한 치매검진 접근성 제고 -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치매가족 상담수가를 신설 - 치매전문병동 운영 및 시범사업 계획·운영 - 치매진료지침 표준화 및 체계적 치매 유형별 진료 가이드라인 제공 - 근거중심의 치매 관련 비약물 치료법 개발 및 실용화 지원
	치매 치료 종사자들의 돌봄이 전문성 검토	- 치매 관련 종사자 전문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치매환자 재가시설 및 돌봄이 지원	- 대상자 선정 절차 합리화, 서비스 질 만족도 제고 - 요양시설·주야간보호센터 내 치매 유닛 설치·운영 - 치매환자 맞춤형 요양서비스 제공 매뉴얼 개발 보급 - 치매환자 맞춤형 재가서비스 다양화 - 치매노인 낙상방지 및 주거환경 지킴개발 - 유관기관 및 지역 파출소 노인복지관 등 협조체계 강화

영역	평가항목	지표정의
	중증에서 생애말기 치매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확대방지하는 체계 마련	- 저소득 독거 치매환자대상 공공후견제도 도입 검토 - 부적절한 조치 등 사례방지 - 포괄적 지원체계의 구축에 대한 사회적 저변을 확대
치매환자 가족 지원	치매환자 가족에게 상담과 교육후 자조모임을 지원	- 온·오프라인 치매환자가족 치매교육 실시 - 온 오프라인 치매환자가족 자조모임 활성화 - 24시간 치매환자 가족상담 및 지원역량 강화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 확대	- 치매가족 온라인 자가 심리검사 및 상담지원 - 치매가족 여행 및 여가생활 지원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	- 연말정산 인적 소득공제 - 치매환자 가족의 취업지원
연구통계 및 기술지원	연구 통계 통합관리 역량강화	- 치매관련 연구와 통계 및 관리역량 강화 - 치매진단과 치료를 위한 임상연구 확대
	치매관리정책 수립	- 근거 기반 치매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연구 확대
	치매환자 질환관리 및 돌봄지원 기술 개발 및 상용화	- 편리한 기술 개발을 통한 치매환자가족 지원

2. 자료수집과 분석

1) 자료 수집

이론적 논의와 실증적 논의를 통해 도출된 주요 요인을 활용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요인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표본추출 및 정확성을 고려 표본 크기를 확보하여, 다음 <표 3-2>와 같이 치매예방관리 요인들 간의 관계 설문 예시를 제시하였다.

〈표 3-2〉 치매예방관리 요인들 간의 관계 설문 예시

결과(~가 된다) 치매노인의 치매예방관리 결과	1	2	3	4	5	6
원인(~때문에) 치매노인의 치매예방관리 결과	요인A	요인B	요인C	요인D	요인E	요인F
요인A						
요인B						
요인C						
요인D						
요인E						
요인F						
평가기준(영향력:관계성)	0점 : 영향력이 전혀 없음 1점 : 영향력이 다소 있으나 약함(크지 않음) 2점 : 영향력이 다소 존재(보통) 3점 : 영향력이 높음 4점 : 영향력이 매우 높음					

2)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DEMATEL 조사는 2017년 10월 3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되었다. DEMATEL기법은 1:1의 비교조사의 방식으로 응답자의 경험 및 직관에 근거로 한 판단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문제와 밀접한 관련종사자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문조사와는 다소 다른 점이 있다(신순호 외 2인, 2013). 따라서 치매관리 관련 담당 공무원 등 경력 5년 이상의 전문가 15인, 교수 및 연구원 15인, 치매관련 종사자 15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DEMATEL기법은 일반적으로 1:1면접방식을 통해 설문의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조사방법에 대한 개요, 기입하는 방식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통해 조사표를 기입하고 회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표 3-3〉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 분		빈 도	비 율(%)
성 별	남 자	27	60.0
	여 자	18	40.0
	합 계	45	100.0
학 력	대학졸업	35	77.8
	대학원이상 졸업	10	22.2
	합 계	45	100.0
연 령	30대	7	15.6
	40대	15	33.3
	50대	21	46.7
	60대	2	4.4
	합계	45	100.0
근무경력	10년미만	5	11.1
	10년이상~15년 미만	18	40.0
	15년 이상~20년 미만	17	37.8
	20년 이상	5	11.1
	합계	45	100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60%, 여자가 40%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대학 졸업이 77.8%, 대학원 졸업이 22.2%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대는 30대 15.6%, 40대 33.3%, 50대 46.7%, 60대 4.4%로 50대가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근무경력으로는

10년 미만이 11.1%,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40%,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37.8%, 20년 이상은 11.1%이다.

2) 주요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DEMATEL이다. DEMATEL기법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실무자 또는 전문가 집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데이터화 시켜 분석한 결과를 통회 사회문제의 구조화와 문제복합체의 본질을 도출하고, 일반화된 공통점 들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3) 분석 절차

제1단계 분석은 직접인과행렬 작성 일반화 하는 단계이며

$$A = \begin{bmatrix} a_{11} & a_{12} & \cdots & a_{1n} \\ a_{21} & a_{22} & \cdots & a_{2n}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a_{n1} & a_{n2} & \cdots & a_{nn} \end{bmatrix} \text{-----}(1)$$

A_{ij} 는 요소 i 가 요소 j 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제2단계 분석은 직접인과행렬의 규준화 하는 단계이며

$$k = \frac{1}{\max \sum_{j=1}^n a_{ij}}, \quad i, j=1, 2, \dots, n. \text{---}(2)$$

$$X = k \times A \text{-----}(3)$$

제3단계 분석은 종합인과행렬의 산출하는 단계이며

$$T = X + X^2 + X^3 + \cdots X^m = X(I - X)^{-1} \text{-----}(4)$$

$$T = [t_{ij}]_{n \times n}, \quad i, j = 1, 2, \dots, n \text{-----}(5)$$

〈표 3-4〉 종합인과행렬(T) 예시

	R1	R2	R3	R4	R5	R6	R7	R8	R9
C1									
C2									
C3									
C4									
C5									
주:		매우강함			강함			있음	

제4단계 분석은 평가지표 산정 및 분석하고, 유향그래프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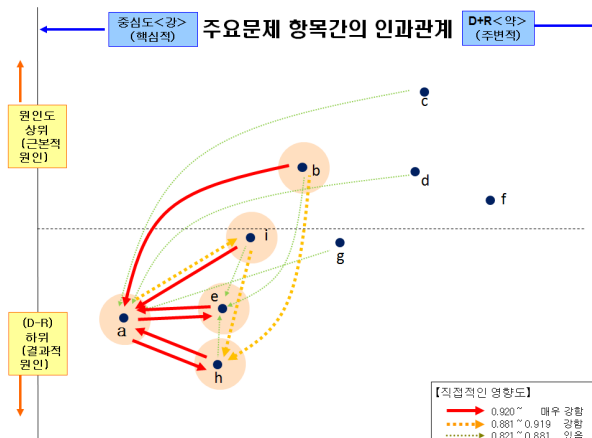
〈표 3-5〉 중심도(D+R)와 원인도(D-R)

활성화 요인	행합(D)	열합(R)	중심도(D+R)	원인도(D-R)
①				
②				
③				
④				
⑤				

$$D = \left[\sum_{i=1}^n t_{ij} \right]_{n \times 1} = [t_i]_{n \times 1} \text{-----}(6)$$

$$R = \left[\sum_{j=1}^n t_{ij} \right]_{1 \times n} = [t_j]_{n \times 1} \text{-----}(7)$$

〈그림 3-2〉 치매예방관리 운영 활성화 요인의 구조 모델 예시



IV. 분석결과

1. 치매예방관리 활성화 요인의 인과성 분석 과정

DEMATEL 조사 분석에 있어, 첫 번째 단계는 직접인과행렬을 작성하여 일반화하는 과정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N \times N$ 행렬 형태인 자료가 수집되었으며(〈표 4-3〉참고), 각 항목별로 평균을 구하여 직접인과행렬을 일반화 하였다. 예를 보면, D1이 D2에 영향에 대해 45명 응답자의 값을 평균한 값과 각각 적용해 행렬을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45명의 의견을 반영해보니 각각의 의견이 다양하여 모든 요인 상호간에 영향관계가 거의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45명 중 요인과 요인간의 영향관계가 거의 없다고 판단한 경우(0으로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60%를 상회하는 경우 해당 요인간의 영향관계는 없는 것으로 기입하였다. 다음 〈표 4-3〉는 45명을 대상으로 13개의 치매예방관리 활성화 요인들에 대한 직접인과행렬의 결과이다.

〈표 4-3〉 일반화된 직접인과행렬

결과(~가 된다) 치매노인의 치매예방관리 결과		치매예방관리			치매환자 치료·돌봄서비스				치매환자 가족지원			연구통계 및 기술지원		
원인(~때문에) 치매노인의 치매예방관리 원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치매 예방 관리	A 생활 속 치매예방 실천 지원	0.000	1.136	1.814	1.203	1.407	1.542	1.305	1.661	2.712	2.695	1.356	1.508	1.407
	B 치매환자의 부정적 인식, 치매 환자 친화적 환경 조성	3.169	0.000	1.593	1.085	1.136	2.271	1.322	1.881	2.644	2.508	1.119	1.864	1.220
	C 3대 고위험군 관리, 치매조기발견 지원	2.746	1.271	0.000	1.153	1.153	2.169	1.000	1.492	2.831	2.864	1.424	1.610	1.458
치매 환자 치료·돌봄 서비스	D 지역 중심의 관리체계 수립 전문성을 제고	3.017	1.305	1.492	0.000	1.102	2.034	1.271	1.610	2.847	2.746	1.305	1.475	1.288
	E 치매 환자관련 종사자들의 치료 돌봄 전문성 제고	2.831	1.508	1.559	1.288	0.000	1.949	1.136	1.593	2.831	2.729	1.237	1.763	1.458
	F 치매환자 재가와 시설 돌봄 지원	2.814	1.559	2.085	1.492	1.424	0.000	1.508	1.661	2.627	2.729	1.237	1.712	1.576
	G 중증에서 생애말기 환자의 권리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한 등 지원체제 마련	2.915	1.712	1.864	1.847	1.356	1.966	0.000	1.678	2.593	2.593	1.271	1.780	1.407

결과(~가 된다) 치매노인의 치매예방관리 결과		치매예방관리			치매환자 치료·돌봄서비스				치매환자 가족지원			연구통계 및 기술지원		
원인(~때문에) 치매노인의 치매예방관리 원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치매 환자 가족 지원	H 치매환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과 교육후 자조모임을 지원	2.729	1.814	1.915	1.610	1.576	2.203	1.373	0.000	2.593	2.814	1.390	1.678	1.288
	I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지원 확대	2.729	1.475	1.729	1.576	1.729	2.407	1.780	1.678	0.000	2.525	1.169	1.525	1.458
	J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	2.864	1.475	2.034	1.356	1.898	2.169	2.034	1.915	2.729	0.000	1.186	1.542	1.237
연구 통계 및 기술 지원	K 연구 통계 통합관리 역량강화	2.746	1.034	1.797	1.627	1.644	2.542	1.763	1.864	2.814	2.847	0.000	1.729	1.288
	L 치매관리정책 수립	3.119	1.407	1.898	1.678	1.661	2.508	1.864	2.119	3.000	2.881	1.627	0.000	1.288
	M 치매질환관리 및 돌봄지원 기술개발 및 상용화	2.831	1.424	1.847	1.441	1.356	1.847	1.542	1.898	2.729	2.695	2.017	1.695	0.000
평가기준:영향력(관계성)		0점 : 영향력이 전혀 없음 1점 : 영향력이 다소 있으나 약함(크지 않음) 2점 : 영향력이 다소 존재(보통) 3점 : 영향력이 높음 4점 : 영향력이 매우 높음												

두 번째 단계는 직접인과행렬의 표준화과정이다. 각 행렬에 row의 합을 구한 후, 그 중 가장 큰 값으로 행합들을 나눠 표준화 한다. 여기서 가장 큰 행합은 1을 초과하지 않는다. 표준화된 직접인과행렬은 다음 <표 4-4>과 같다.

〈표 4-4〉 표준화된 직접인과행렬

결과(~가 된다) 치매노인의 치매예방관리 결과		치매예방관리			치매환자 치료·돌봄서비스				치매환자 가족지원			연구통계 및 기술지원		
원인(~때문에) 치매노인의 치매예방관리 원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치매 예방 관리	A 생활 속 치매예방 실천 지원	0.000	0.049	0.077	0.051	0.060	0.066	0.056	0.071	0.116	0.115	0.058	0.064	0.060
	B 치매환자의 부정적 인식, 치매 환자 친화적 환경 조성	0.135	0.000	0.068	0.046	0.049	0.097	0.056	0.080	0.113	0.107	0.048	0.080	0.052
	C 3대 고위험군 관리, 치매조기발견 지원	0.117	0.054	0.000	0.049	0.049	0.093	0.043	0.064	0.121	0.122	0.061	0.069	0.062
치매 환자 치료·돌봄	D 지역 중심의 관리체계 수립 전문성을 제고	0.129	0.056	0.064	0.000	0.047	0.087	0.054	0.069	0.122	0.117	0.056	0.063	0.055

결과(∼가 된다) 치매노인의 치매예방관리 결과			치매예방관리			치매환자 치료·돌봄서비스				치매환자 가족지원			연구통계 및 기술지원		
원인(∼때문에) 치매노인의 치매예방관리 원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서비스	E	치매 환자관련 종사자들의 치료 돌봄이 전문성 제고	0.121	0.064	0.067	0.055	0.000	0.083	0.049	0.068	0.121	0.117	0.053	0.075	0.062
	F	치매환자 재가와 시설 돌봄이 지원	0.120	0.067	0.089	0.064	0.061	0.000	0.064	0.071	0.112	0.117	0.053	0.073	0.067
	G	중증에서 생애말기 환자의 권리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한 등 지원체제 마련	0.125	0.073	0.080	0.079	0.058	0.084	0.000	0.072	0.111	0.111	0.054	0.076	0.060
치매환자 가족지원	H	치매환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과 교육후 자조모임을 지원	0.117	0.077	0.082	0.069	0.067	0.094	0.059	0.000	0.111	0.120	0.059	0.072	0.055
	I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지원 확대	0.117	0.063	0.074	0.067	0.074	0.103	0.076	0.072	0.000	0.108	0.050	0.065	0.062
	J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	0.122	0.063	0.087	0.058	0.081	0.093	0.087	0.082	0.117	0.000	0.051	0.066	0.053
연구통계 및 기술지원	K	연구 통계 통합관리 역량강화	0.117	0.044	0.077	0.070	0.070	0.109	0.075	0.080	0.120	0.122	0.000	0.074	0.055
	L	치매관리정책 수립	0.133	0.060	0.081	0.072	0.071	0.107	0.080	0.091	0.128	0.123	0.070	0.000	0.055
	M	치매질환관리 및 돌봄지원 기술개발 및 상용화	0.121	0.061	0.079	0.062	0.058	0.079	0.066	0.081	0.117	0.115	0.086	0.072	0.000
평가기준:영향력(관계성)			0점 : 영향력이 전혀 없음 1점 : 영향력이 다소 있으나 약함(크지 않음) 2점 : 영향력이 다소 존재(보통) 3점 : 영향력이 높음 4점 : 영향력이 매우 높음												

세 번째 단계는 종합인과행렬(Total-relation matrix)의 산출이다. 종합인과행렬 T는 사이클을 고려한 전체의 영향을 의미한다. 즉, 직접적 인과와 간접적 인과를 고려한 종합인과행렬 T의 형태로 산출된다. 여기서 X는 규준화된 직접인과행렬이며, I는 단위행렬을 의미한다. 종합인과행렬(T) 값은 다음 <표 4-5>과 같다.

〈표 4-5〉 종합인과행렬(T)

결과(~가 된다) 치매노인의 치매예방관리 결과			치매예방관리			치매환자 치료·돌봄서비스				치매환자 가족지원			연구통계 및 기술지원		
원인(~때문에) 치매노인의 치매예방관리 원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치매 예방 관리	A	생활 속 치매예방 실천 지원	1.817	1.003	1.275	1.013	1.052	1.447	1.068	1.225	1.851	1.834	0.958	1.150	0.979
	B	치매환자의 부정적 인식, 치매 환자 친화적 환경 조성	2.104	1.044	1.378	1.096	1.133	1.599	1.161	1.339	2.009	1.986	1.031	1.263	1.057
	C	3대 고위험군 관리, 치매조기발견 지원	2.036	1.067	1.279	1.071	1.105	1.555	1.120	1.291	1.965	1.948	1.017	1.222	1.039
치매 환자 치료·돌봄 서비스	D	지역 중심의 관리체계 수립 전문성을 제고	2.068	1.080	1.354	1.036	1.115	1.567	1.142	1.310	1.987	1.965	1.023	1.230	1.044
	E	치매 환자관련 종사자들의 치료 돌보미 전문성 제고	2.099	1.108	1.381	1.107	1.090	1.593	1.158	1.333	2.022	2.000	1.039	1.263	1.069
	F	치매환자 재가와 시설 돌보미 지원	2.143	1.133	1.430	1.139	1.171	1.550	1.197	1.364	2.058	2.043	1.062	1.289	1.097
	G	중증에서 생애말기 환자의 권리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한 등 지원체제 마련	2.194	1.164	1.453	1.178	1.194	1.663	1.162	1.395	2.102	2.083	1.086	1.319	1.114
치매 환자 가족 지원	H	치매환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과 교육후 자조모임을 지원	2.188	1.168	1.455	1.169	1.203	1.673	1.218	1.328	2.103	2.091	1.091	1.316	1.110
	I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지원 확대	2.087	1.102	1.382	1.114	1.153	1.603	1.176	1.331	1.906	1.985	1.033	1.250	1.065
	J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	2.144	1.130	1.428	1.134	1.188	1.634	1.215	1.372	2.061	1.938	1.059	1.282	1.084
연구 통계 및 기술 지원	K	연구 통계 통합관리 역량강화	2.253	1.173	1.494	1.205	1.242	1.735	1.269	1.443	2.173	2.155	1.067	1.357	1.143
	L	치매관리정책 수립	2.377	1.245	1.571	1.265	1.303	1.818	1.335	1.523	2.286	2.261	1.187	1.354	1.200
	M	치매질환관리 및 돌봄지원 기술개발 및 상용화	2.226	1.171	1.476	1.181	1.214	1.686	1.244	1.425	2.141	2.121	1.132	1.337	1.075
평가기준:영향력(관계성)			0점 : 영향력이 전혀 없음 1점 : 영향력이 다소 있으나 약함(크지 않음) 2점 : 영향력이 다소 존재(보통) 3점 : 영향력이 높음 4점 : 영향력이 매우 높음												

네번째 단계는 평가지표의 분석과정이다. 종합인과행렬(T)는 행(row)의 합(D)은 영향도로 각 치매관리 활성화 요인이 원인으로 갖는 인과점수를 합한 것이고,

column의 합(R)은 피영향도이며 각 치매관리 활성화요인이 결과로써 가지는 인과 점수를 모두 합한 것이다. <표 4-5>의 결과를 정리하여 영향도(D), 피영향도(R), D+R(중심도), D-R(원인자)의 결과는 다음 <표 4-6>과 같다.

〈표 4-6〉 치매예방관리 활성화 요인 중심도(D+R)와 원인도(D-R)

구분			D (영향도)	R (피영향도)	D+R (종합강도)	D-R (원인자)
치매예방 관리	A	생활 속 치매예방 실천 지원	16.672	27.735	44.407	-11.063
	B	치매환자의 부정적 인식, 치매 환자 친화적 환경 조성	18.200	14.587	32.787	3.613
	C	3대 고위험군 관리, 치매조기발견 지원	17.714	18.355	36.069	-0.641
치매환자 치료·돌 봄서비스	D	지역 중심의 관리체계 수립 전문성을 제고	17.922	14.707	32.629	3.215
	E	치매 환자관련 종사자들의 치료 돌봄 전문성 제고	18.262	15.163	33.425	3.099
	F	치매환자 재가와 시설 돌봄 지원	18.677	21.123	39.800	-2.446
	G	중증에서 생애말기 환자의 권리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한 등 지원체제 마련	19.109	15.465	34.574	3.644
치매환자 가족지원	H	치매환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과 교육후 자조모임을 지원	19.111	17.679	36.790	1.432
	I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지원 확대	18.188	26.663	44.851	-8.475
	J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	18.671	26.413	45.084	-7.742
연구통계 및 기술지원	K	연구 통계 통합관리 역량강화	19.707	13.786	33.493	5.921
	L	치매관리정책 수립	20.725	16.633	37.358	4.092
	M	치매질환관리 및 돌봄지원 기술개발 및 상용화	19.431	14.079	33.510	5.352

2. 치매예방관리 활성화 요인의 인과구조 분석 결과

1) 영향도(D)의 분석결과

〈표 4-6〉의 분석결과를 보면, 행(row)의 합은 영향도로 치매예방관리 활성화 요인 전체에 대해 각 요인이 차지하는 원인 정도를 의미한다. 원인의 정도인 행합(D)에 대해 보면, 치매관리정책 수립(20,725), 연구 통계 통합관리 역량강화(19,707), 치매질환관리 및 돌봄지원 기술개발 및 상용화(19,431),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상

담·교육·자조모임 등 지원(19.111), 중증증에서 생애말기 환자의 권리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한 등 지원체제 마련(19.109), 치매환자 재가와 시설 돌보미 지원(18.677), 치치매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18.671), 치매 환자관련 종사자들의 치료 돌보미 전문성 제고 (18.262), 치치매환자의 부정적 인식, 치매 환자 친화적 환경 조성(18.200),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지원 확대(18.188), 지역 중심의 관리체계 수립 전문성을 제고(17.922), 3대 고위험군 관리, 치매조기발견 지원(17.714), 생활 속 치매예방 실천 지원(16.672) 순으로 나타났다. 치매예방관리 활성화 요인으로써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는 요인은 치매관리정책 수립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생활 속 치매예방 실천 지원 등의 인과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원인의 정도가 낮은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2) 피영향도(R)의 분석결과

다음으로 <표 4-6>의 열(column)의 합은 피영향도로 결과의 정도를 나타낸다. 즉 다른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결과적 성격이 큰 치매예방관리 활성화 요인들을 의미한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생활 속 치매예방 실천 지원(27.735),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지원 확대(26.663),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26.413), 치매환자 재가와 시설 돌보미 지원(21.123), 3대 고위험군 관리,

치매조기발견 지원(18.355), 치매환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과 교육후 자조모임을 지원(17.679), 치매관리정책 수립(16.633), 중증에서 생애말기 환자의 권리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한 등 지원체제 마련(15.465), 치매 환자관련 종사자들의 치료

돌보미 전문성 제고(15.163), 지역 중심의 관리체계 수립 전문성을 제고(14.707), 치매환자의 부정적 인식, 치매 환자 친화적 환경 조성(14.587), 치매질환관리 및 돌봄지원 기술개발 및 상용화(14.079), 연구 통계 통합관리 역량강화(13.786), 등의 인과점수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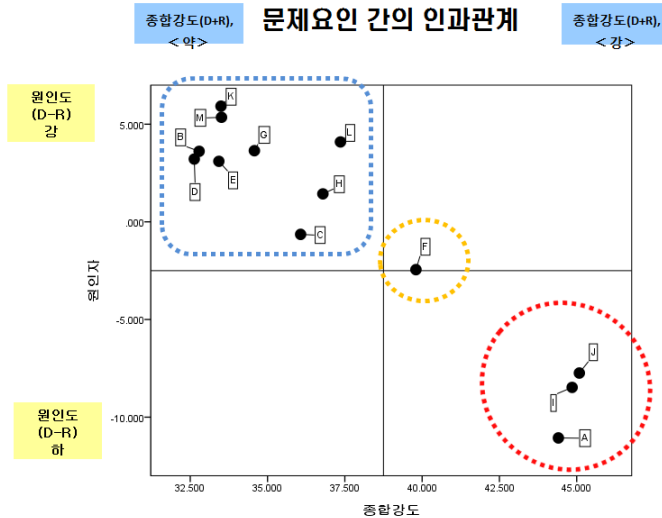
이를 인과점수를 크기 순서로 살펴보면, 생활 속 치매예방 실천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연구 통계 통합관리 역량강화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종합강도와 원인자의 분석결과

다음 <그림 4-1>은 종합강도(D+R)와 원인자(D-R)를 각각 X축, Y축으로 하는

X-Y좌표계에 각 치매예방관리 활성화 요인 항목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그림 4-1] 종합강도와 원인자의 분석결과



분석결과, 먼저 영향도와 피영향도의 합을 나타내는 종합강도(D+R)를 살펴보면, 치매예방관리 활성화 요인들을 의미한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45.084),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지원 확대(44.851), 생활 속 치매예방 실천 지원(44.407), 치매환자 재가와 시설 돌보미 지원(39.800), 치매관리정책 수립(37.358), 치매환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과 교육후 자조모임을 지원(36.790), 3대 고위험군 관리, 치매조기발견 지원(36.069), 중증에서 생애말기 환자의 권리보호와확대방지를 위한 등 지원체제 마련(34.574), 치매질환관리 및 돌봄지원 기술개발 및 상용화(33.510), 연구통계 통합관리 역량강화(33.493), 치매 환자관련 종사자들의 치료 돌보미 전문성 제고(33.425), 치매환자의 부정적 인식, 치매 환자 친화적 환경 조성(32.787), 지역 중심의 관리체제 수립 전문성을 제고(32.629), 로 나타났다. 종합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운영 활성화 요인으로서는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지원 확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치매환자의 부정적 인식, 치매 환자 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 중심의 관리체제 수립 전문성을 제고 인과점수가 다른 요인들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치매는 인지적,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환자 본인도 불편함을 주는 질병이며 부양하는 가족들도 어려움이 크다고도

할 수 있다. 치매환자는 장기적으로 돌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치매환자 간병 시간은 38%이상이 10시간 이상으로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이나 간병인이 10시간 이상을 계속 돌봐드려야 한다. 또한,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직접의료비 1,095만원, 간병비 671만원, 장기요양비용 266만원, 간접비 20만원으로 총 2,054만원정도 든다(중앙치매센터, 2016). 이런 사유로 치매로 인한 가족의 갈등이 생기거나 노인학대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문제의 전반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치매관리에 나서야 하며 지역사회내에 치매환자의 적절한 보호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치매환자의 부양에 대한 감소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에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것이 치매환자의 치료관리에 효율적이며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치매관리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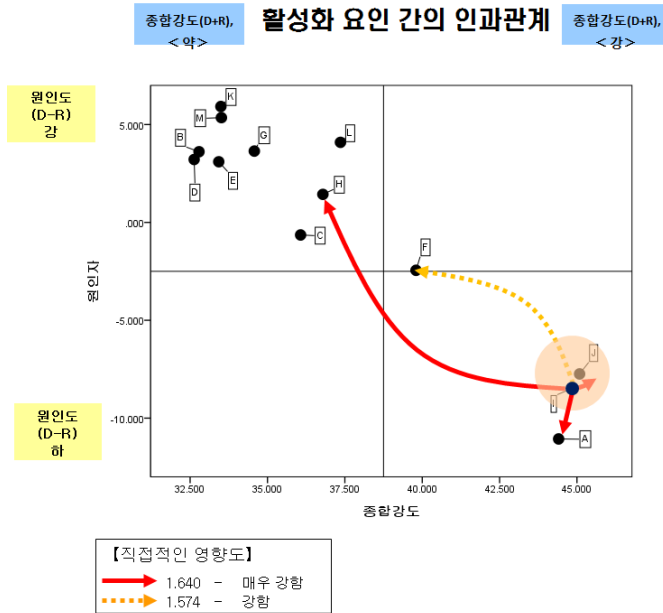
3. 치매예방관리 활성화 요인의 인과구조 유형그래프 분석 결과

설문단계에서 13개의 치매예방관리 활성화 요인들 인과성을 유형그래프화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 <그림 4-2>와 같다. 살펴보면,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 요인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본 연구는 치매예방관리를 대상으로 실제로 정책의 활성화 요인들을 도출하고, 요인들 가운데 정책 활성화에 큰 튜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그 인과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은 첫째, 치매예방관리의 활성화 요인 도출 및 유형화를 하였다. 둘째, DEMATEL을 활용한 주요 치매관리 활성화요인들 간 인과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제3차 치매예방계획을 대상으로 운영 활성화 요인 도출하였다.

[그림 4-2]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 요인의 영향관계



치매예방관리 운영의 활성화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보았다. 분석결과 향후 치매예방관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13개의 치매예방관리 활성화 요인들을 해결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치매예방관리 활성화 요인으로 최우선적인 5가지는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지원 확대, 생활 속 치매예방 실천 지원, 치매환자 재가와 시설 돌보미 지원인것으로 분석되었다. 5가지 치매예방관리 활성화 요인들 간 종합적인 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기 주요원인들의 해결 및 관리,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이에 자세한 치매관리방안들은 첫째,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 나타난 건강보험 수가의 신설로 인해 재정적인 불안감들을 감소시켰을지는 모르나, 치매관리에 대한 비용적 측면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이에 치매관리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치매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증가되는 금액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비용부담의 경감시키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러한 치매관리비용 및 관리들에 대한 보편적인 정부지원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면, 정말 필요한 치매환자에 도움이 되는 치매전문병동의 운영을 최상으로 서비스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시설의 개·보수 등의 기본적인

투자기 있어야 한다. 치매관련병원들의 자체적인 경비를 투여하여 병원환경조성을 하면 좋겠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기대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이에 치매전문병동의 확대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차원에서의 환경조성지원을 하고 우수한 병원들에게 성과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동기부여 등의 보상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민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혹은 노인돌봄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의 향상이 필요하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민간기관의 참여유도를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마련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치매예방관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기 5가지 활성화 요인들에 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관리방안 등 개선점들이 필요한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치매예방관리 가운데 치매케어지원 프로그램으로 추진되는 사업만을 고려하였다. 둘째, 실제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지만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치매관리 활성화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2014). 「2013~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 김태현·박수현. (2016). “가족보호자의 간병 부담감, 우울 및 신체증상에 치매환자의 내현화 문제행동이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1): 65-89.
- 박정미·박성현·유동철. (2012). “지역사회복지의 문제점에 관한 구조화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4(1): 199-223.
- 박성현·소다오사무·최승영. (2011). “DEMATEL법을 활용한 도시쇠퇴 문제의 구조화 분석.” 「부동산학보」, 46(1): 321-337.
- 배승중. (2010). “DEMATEL 및 내용분석기법을 활용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정량적 분석.” 「농촌계획」, 16(3): 173-184.
- 장한나·이명석. (2016). “치매관리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 분석.” 「한국행정논집」, 28(3): 491-515.
- 정순돌. (2005). “경기도의 장기요양 보호체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시설보호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9: 7-40.
- 보건복지가족부. (2008).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2008~2012)」.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2). 「제2차(2013~2015)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5).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6-’20)」.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2).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
- 보건복지부. 「치매노인 실태 조사」.
- ADI. (2009). World Alzheimer Report 2009. London: 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 ADI. (2016). World Alzheimer Report 2016. London: 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 Fontela, E., and Gabus, A. (1976). "The DEMATEL observer", DEMATEL 1976 report. Geneva, Switzerland: Battelle Geneva Research Center.
- Gabus, A., and Fontela, E. (1973). "Perceptions of the world problematique: Communication procedure, communicating with those bearing collective responsibility", DEMATEL Report No.1. Geneva, Switzerland: Battelle Geneva Research Centre.
- Ming-Lang Tseng and Yuan Hsu Lin. (2009). "Application of Fuzzy DEMATEL to develop a cause and effect model of municipal solid waste management in Metro Manila",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Assessment 158, pp. 519-533.
- WHO. (2012). Dementia: a public health priority.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Press.
- WHO. (2015). First WHO ministerial conference on global action against dementia. Meeting report. March 16-17. Geneva, Switzerland

최인규(崔仁圭): 제1저자. 영남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2011), 현재 대구과학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과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관심분야는 정책분석, 조사방법론, 노인 복지행정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치매관리정책의 언론보도 경향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치매예방을 중심으로”(2018), “경증치매노인 노인복지시설의 이용행태에 관한 융합연구: 기억학교 이용자만족행태 중심으로”(2017), “고령친화 요양산업 활성화 정책의 인과구조 분석”(2017), “지역사회 노인보호체계의 연계모형에 관한 연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2016), 등이 있다(inkyu8008@daum.net).

유근환(劉根煥): 공동저자. 상지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2002), 현재 대구과학대학교 국방기술행정과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관심분야는 일반행정, 정책학, 조직관리, 정책분석, 정보체계론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성범죄예방정책의 형성과정에서 행위자의 상호작용 패턴분석: 유형분류 및 사례분석을 중심으로”(2018), “사춘기청소년의 관계문화 형성 및 갈등해결전략에 관한 연구”(2018), “복권산업의 건전화를 위한 대응사례 및 실태분석- 제도적 접근방법의 적용”(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례 분석 중심으로”(2016), “Defining Community Welfare Problems with DEMATEL method”(2015) 등이 있다(khyoo@tsu.ac.kr).

박지은(朴志恩): 공동저자. 연세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2006), 현재 대구과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관심분야는 교육학, 교육행정, 경영학, 교육경제학 등이며, 최근논문으로는 “영유아 공교육의 정책변동에 대한 ACF 분석: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일원화를 중심으로”(2018), “로깅분석을 이용한 유아교사의 직무성과 요인분석-사회자본을 중심으로”(2017), 주요저서로는 「최신실기교육방법론」(2017), 「(대학생을 위한) 인성의 이해 : 나, 너, 우리」(2017), 「교육사회학」(2016), 「한·중·일 공용한자 이해」(2016), 등이 있다(jipark@tsu.ac.kr).

장광현(張光鉉): 교신저자. 2018년 아주대학교 NCW 정책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대한지방자치학회 부회장과 군인공제회 관리부분이사에 재직중이며 관심분야는 한미동맹, 유엔사, 동북아 정세, 국방정책, 조직론, 인사행정 등이며, 최근에 논문으로 “현대전쟁을 통해 본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UNC)의 전력 창출 전망”(2017) 등이 있다(yurjkh2500@gmail.com).

한국 고령층의 경제적 복지수요에 관한 연구: 복지의존 선호도와 유관요인에 관한 분석

이왕원·김문조

이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2013) 조사 자료에 의거해 한국 고령층의 경제적 복지 수요와 그 유관요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적·사적복지 유형 중 어떤 방식의 경제적 지원을 선호하는지를 알아본 후, 그것이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가족관계 및 사회경제적 변인들과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분석 과정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도출한 복지수요의 유형별 차이를 주시하고자 한다. 한국사회에서는 가족구조의 변화, 만성적 경기침체,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 등으로 공적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고령층의 문화적·의식적 성향으로 사적 복지가 사회적 미덕이나 관습으로 온존해 왔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더구나 공적 지원의 대상자가 되려면 자신의 경제력이나 가족 부양능력의 결여를 입증해야 하므로, 공적 복지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엄존해 왔으리라 본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해 노년층의 경제적 복지수요를 공적 복지, 사적 복지 및 경제적 자립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한 후 분산분석을 통해 복지수요 유형의 분포와 양상을 살폈으며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경제적·가족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 복지 수요요인을 검토하였다.

[주제어 : 노인, 고령, 복지, 건강, 가족, 경제, 한국]

1. 문제제기

노인 인구의 증가에 비례해 노년층 복지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른 나라인 만큼 노인 복지에 대한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양적 추세뿐 아니라 복지의 내용이나 행위주체와 직결된 질적 변화마저 예상되어 심층적 논의의 필요성을 더해주고 있다. 우리 노인복지정책의

화두는 “가족중심적 사적복지에서의 복지제도 중심의 공적 복지로의 전환”으로 표현되곤 한다. 이는 부모에 대한 효도나 부양 의무를 강조해온 전통적 유교문화에 근거한 사적 복지체제가 가족구조의 변화, 장기적 경기침체,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 등으로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에서 출원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노령층을 위한 공적 복지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날로 강화되어 왔는데, 2008년 초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이나 고령층에 대한 복지예산 증가는 그러한 시대적 요청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김진욱, 2010; 송현주, 2013; 김희삼, 2014).

노인 복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이 같은 정황을 공적 복지가 사적 복지를 구축하거나 대체하는 것으로 풀이해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통설을 실제 복지수요자인 노인의 입장에서 재고해보고자 한다. 공적 복지의 확장 현상은 의심 할 바 없는 사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확장의 속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진단이나 해석이 필요하다. 속도란 상대적 개념이므로, 준거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리 인식되거나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노년층의 경제적 복지수요가 공적 유형으로 전환되어간다는 사실 자체에 천착하는 대신, 전환에 대한 노인 당사자들의 인식적 차이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요컨대, 공적 복지를 받아들이는 경우라도 가급적 공적 복지로의 전환을 미룬 채 사적 복지를 선호하는 경우나 공적·사적 복지 모두를 외면한 채 경제적 자립을 선호하는 경우를 고려한 “전환 속도의 차등화”라는 관점에서 논의에 착수해 보고자 한다.

공적 복지체제의 전환 추세를 주로 제도적 차원에서 바라보고자 한 기존 연구들은 전환 현상 자체에만 주시함으로써 제도 변화에 대한 노령층 당사자들의 반응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본다. 공적 복지로의 전환 양상을 속도의 관점에서 바라 보게 되면, “공적 복지의 확장”이라는 현상을 “자발적 의사에 의한 공적 복지의 흔쾌한 수용”이나 “사적 복지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선호에도 불구하고 공적 복지의 불가피한 수용”등 다양한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의 과거를 되돌아 볼 때, 현실적 적응력이 퇴화하는 노년층에게는 ‘외적 변화에 대한 내적 부적응’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제도와 의식 간의 불일치 현상이 생성될 소지가 농후했다고 본다. 전통적 가치관 하에서 성장한 그들은 효도나 노부모 봉양을 바람직한 덕목으로 내화함으로써 중장년기에 이르기까지 부모님의 생계나 복지에 대한 높은 책무 의식을 견지했을 것인 까닭이다. 더구나 지난날의 공적 복지정책은 객관적 생활 여건에 대한 자격심사를 통해 복지수급대상자를 선정했기에, 심사 과정에서 ‘경제력 결핍’과 더불어 지원을 받을 만한 부양책무자가 없다는 ‘사적영역의 결손’을 입증해야 했다(김기태·박봉길, 1998; 김희삼, 2014). 따라서 사적 복지에 친숙한

노령층에게는 공적 복지에 대한 거부감이 없지 않았으리라 여겨진다.

이 때문에 공적 복지의 확장과 사적 복지의 축소가 일률적으로 작동하는 대신 차등적으로 발현할 것이라는 새로운 가설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자녀의 성공을 부모의 성공과 동일시하려는 가족주의적 성향이 이례적으로 높은 한국사회에서는 ‘자격미달자’의 입장에서 지급받는 어쩔 수 없는 공적 복지보다 자녀로부터 제공받는 당당한 사적 복지가 보다 선호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가족원들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는 사적 복지 혹은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끼치지 않는 경제적 자립이 공적 복지로의 이행을 지연시킬 소지가 적지 않다고 본다. 이때 노령층에 관한 공적 지원의 확장은 그에 관한 노인들의 높은 수요를 직설적으로 반영하는 현상이라기보다 그들의 소득이나 자산, 혹은 부양가족 여부에 관한 ‘요건 채우기’라는 요식행위로 전락할 여지가 많다. 이따금 불공정 사례의 일환으로 거론되어 왔듯, 기초생활조차 불가능한 열악한 생활여건에 놓은 노인들이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면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노년층에 대한 공적 복지체계에 허점이 적지 않았다. 또 예산이나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적 복지체제의 한계나 부작용도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공적 복지체제의 확립이 긴요한 현실시점에서는 공적 노인복지의 확장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어떤 노령자가 어떠한 방식의 지원을 공여받기를 원하는지를 적시하는 일이 공적 복지제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년층의 어떠한 복지를 원하는가라는 ‘복지 수요’를 종속변인으로 삼아 그 내용을 유형별로 상론해보고자 한다. 동시에 노년층의 사적 복지를 뒷받침할 자원을 주요 독립변수로 고려하고자 하는데, 이 때 자원을 ‘가족적 자원’과 노년층이 직접 축적해온 자산과 소득이라는 ‘경제적 자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사적 이전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으로 지칭되어온 이들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는데, 후자는 공적 복지의 수급을 결정짓는 일차적 요건으로 꼽혀왔다는 점에서 사적 복지수요와 공적 복지수요를 구분 짓는 결정적 변인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년층의 복지수요가 범주화 되어 있다는 대안적 견해를 제시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입증해 보고자 한다. 요컨대, 노년층의 복지수요가 경제적 독립, 사적 복지요구, 공적 복지요구의 유형 순으로 위계화 되어 있다고 가정한 후, 기술통계 및 ANOVA를 통해 복지수요 인식 유형과 위계의 구도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또 유관 변인들의 공변량을 통제하기 위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유형별 영향요인들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II. 논점 정리 및 선행연구 검토

1. 복지수요에 관한 논점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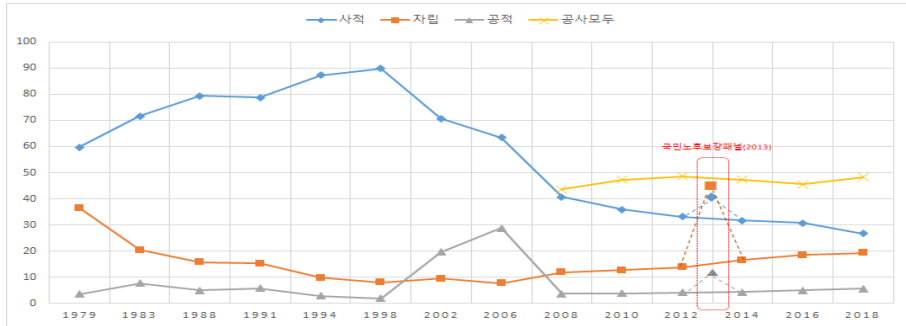
본 연구는 가시적 변인에 초점을 맞추어온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복지체제의 변화를 직접 대면하고 있는 노인들의 의식에 그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는 최근의 복잡한 노인복지체제의 변화들이 '공적 복지체제의 전면적 확장과 제도화'라는 일관적 명제로 단순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컨대 공적 복지의 확장이라는 시각이 단순 견지된다면, 복지의 실제적 수요자인 노령층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복지수요들이 섬세히 다뤄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의 노인 복지체제가 최근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령층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노령층의 의식이 급격한 제도에 완벽히 동조되지 못하고 있는 일종의 '지체'의 관점에서 살피고자 한다.

한마디로 국내 복지체제의 전환에 대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공적 복지체제가 점진적으로 확장되면서 사적 복지체제를 밀어낸다고 단정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도주의 연구가들이 강조해 왔듯, 주어진 제도나 그에 맞물려 있는 통념이나 문화는 새로운 제도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관성적 저항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관점이 함축하는 바는 우리의 복지체제 전환이 균등하게 진행되어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으로, 그러한 인식은 노년층의 의식세계에 모종의 심리적 거부기제가 작동해 공적 복지체제의 이행을 늦추고 있을지 모른다는 가설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추정은 공적 복지제도가 크게 확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금 시점에서도 노령층의 만족스러운 생활유지에는 태부족하다는 현황에 기초한 것이다.

한국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복지 개선을 위한 경제적 자원은 꾸준히 진전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불과 20년 전까지 한국의 효사상과 가부장제, 남성부양의식이 미덕으로서 강조되었음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전통적 질서, 특히 가부장적 유교문화와 남성의 부양의무 혹은 가계중심적 상속과 증여와 같은 측면에서 제도와 의식 간의 지체 현상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노령층은 자녀의 부양을 받는 것이 좋은 평판과 안정된 생활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높다. 또 전통적 가부장제와 축을 같이하는 발전주의적 국가 형태, 통치제도 및 이데올로기적 장치들도 보편적인 공적 복지체제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장애요소였다는 주장들도 중요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카우프만, 2005; 김원섭, 2007). 더구나 노령

층에 대한 한국의 복지체제가 2008년 기초노령연금 등 보편적 확대를 시도하기 전까지는 생활보호노인대상자 등 소득보장선과 부양의무자의 부재 등 경제적·가족적 자원의 '절대적' 결여에 대한 증명이 필수 요건이었다는 사실까지 감안한다면(김기태·박봉길, 1998; 이광석·김동룡, 2013), 사적 복지에 대한 의존과 공적 복지에 대한 의식은 모종의 위계성을 견지할 공산이 크다.

부양의식의 변화와 공적 이전소득 비중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강석호(2008)의 연구에 의하면,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견해 중 국가나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1998년 2%, 2002년 19.7%, 2006년 28.8%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복지에 대한 주체가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주류적 견해와 일치하는 것으로, 1979년 30.6%에서 2006년 12.4%로 약화되어가는 노부모 부양에 대한 장남의 책임의식에 관한 <표 1>의 결과와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표에서는 2006년경 사적복지에 대한 의존도 63%에 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가 장남 부양의 책임에서 능력 있는 자녀나 혹은 아들과 딸이 모두가 분담해야 한다는 쪽으로 전가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가족과 정부·사회 모두의 책임을 측정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부터는 사적복지의 비중이 20%대에 접어들어 급격히 축소한다고 볼 수 있으나, 공적복지에 대한 전적인 부양책임은 5%대로 40년간 큰 변동 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노령세대에 대한 부양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등장하면서 가족과 정부·사회 모두에게 부양책임이 있다는 의식은 절반에 달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은 공적복지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사적복지에 대한 책임이나 혹은 요구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표 1〉 노부모 부양책임 견해의 추세변화 (단위 %)¹⁾

연도	가족(사적복지)							경제적 자립	사회·정부 (공적복지)	가족과 정부·사회 (공사모두)
	가족소계 (사적복지)	장남	아들 모두	딸	자녀	능력있는 자녀	아들딸 모두			
1979	59.8	30.6	22.2	0.6	6.4	-	-	36.6	3.6	-
1983	71.7	22.1	21.7	0.8	27.1	-	-	20.5	7.8	-
1988	79.3	25.2	17.8	0.5	35.8	-	-	15.8	5.0	-
1991	78.7	18.3	13.8	0.4	46.2	-	-	15.4	5.9	-
1994	87.3	19.6	11.4	-	56.3	27.2	29.1	9.9	2.9	-
1998	89.9	22.4	7.0	0.5	60.0	45.5	14.5	8.1	2.0	-
2002	70.7	15.1	13.9	1.0	40.7	21.2	19.5	9.6	19.7	-
2006	63.4	12.4	5.1	0.6	45.3	14.1	31.2	7.8	28.8	-
2008	40.7	17.3	6.7	0.9	58.6	16.4	-	11.9	3.8	43.6
2010	36.0	13.8	7.7	1.8	62.4	14.3	-	12.7	3.9	47.4
2012	33.2	7.0	3.9	0.8	74.5	13.9	-	13.9	4.2	48.7
2014	31.7	6.2	3.5	0.7	75.4	14.2	-	16.6	4.4	47.3
2016	30.8	5.6	4.5	1.0	71.1	17.7	-	18.6	5.1	45.5
2018	26.7	5.0	3.7	1.0	72.0	18.3	-	19.4	5.7	48.3

* 국민노후보장패널(2013) 노인이 원하는 복지형태

연도	가족소계 (사적복지)	장남	아들 모두	딸	자녀	능력있는 자녀	아들딸 모두	경제적 자립	사회·정부 (공적복지)	가족과 정부·사회 (공사모두)
2013	41.5	15.4	-	-	21.2	-	-	45.8	12.7	-

자료출처: 〈경제기획원(1996)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1998, 2002)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7), 각 국 노인의 장기부양현황과 과제〉, 〈통계청(2007), 2007 고령자 통계〉,
 〈통계청(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사회조사〉, 〈국민연금연구원(2013),
 노후보장패널(2013)〉

- 1) 〈표1〉은 강성호(2008). “부양의식변화에 따른 공적이전소득 비중의 변화분석”의 결과를 인용 및 저자가 통계청의 2008-2018년간 사회조사와 국민노후보장패널 2013년 통계치를 삽입·편집한 것이다. 다만 조사에 따라 측정이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기존의 조사들은 전 세대를 중심으로 노부모 부양 태도를 측정했지만, 노후보장패널을 활용하여 삽입한 2013년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자립되어 있지 않은 노인이 선호하는 복지형태를 측정한 것이다.

요컨대 상기 내용들은 노인복지에 대한 접근이 단순히 ‘사적 복지에 대한 공적복지의 대체’로 일면적으로 해석되기 보다는 한국사회의 독특한 역사적·제도적·문화적 요인들로 인해 ‘사적 복지와 공적 복지의 병존’, ‘사적 복지의 잔존이나 여망’ 등의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장남 부양에서 가족 부양이라는 변화와 같이 사적 복지 내에서도 복잡한 분화양상, 또한 상속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 변화나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한 부유한 노령세대의 등장으로 인해 경제적 자립, 생필적·기초적 차원으로서의 공적 복지와 여가적·충족적 차원으로서의 사적 복지 등 다양한 결과들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견해나 관찰들은 사적 복지가 공적 복지로 일률적으로 이행되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보다 정밀한 분석을 통해 규명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사회는 복지체제의 전환 과정에서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등 공적 복지제도가 확충되어가고 있건만 경제 여건이 유사한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그 정도나 효과가 지체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노령층의 의식세계에는 공적 복지보다는 사적 복지, 나아가 사적 복지보다 경제적 독립 상태에 대한 높은 선호성이 내재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더불어 그러한 선호도 위계는 개인적 특성에 의한 결과라기 보다 그들의 경제력이나 가족관계와 같은 객관적 여건의 함수로 간주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노령층의 복지선호를 부가적 차원으로만 다루어온 경향이 보이는 바, 이는 ‘선호도=물질(공적*사적자원)’이라는 함수 중 우변의 물질적 차원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풀이될 수 있다. 노인복지의 직접적 당사자인 노령층의 선호와 입장을 측정하는 문항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노인복지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요소로 작동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노령자들의 경제적 독립성 여부, 또 독립상태가 아니라면 “누구한테 경제적 도움을 청하고 싶은지”를 가족이나 친척이라는 사적 영역 및 정부나 사회단체라는 공적 영역으로 구분해 총 세 집단유형들의 특성과 선호도 결정요인을 경험적으로 비교해보고자 한다.

2. 복지의존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한국사회의 최근 10년은 복지체제의 혁신을 위해 복지정책이 본격화된 의미 있는 시기로 평가된다. 특히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의 도입을 전후해 노령자 복지가 국가정책의 핵심 의제로 등장하여 노령층에 대한 복지체제와 예산이 급성장했다.

하지만 그에 상응한 노령층 생활의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공적 지원의 확장과 더불어 노령자의 복지를 주도해 왔던 사적 지원이 감축되었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목도되는 노령자 복지체계의 핵심 행위자는 공적 이전소득으로 대표되는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사적 이전소득으로 대표될 수 있는 가족이다. 생애 주기 관점에서 볼 때, 노년층은 정년퇴직으로 근로소득이 격감하면서 불안정한 경제 여건에 놓이게 된다(Modigliani and Miller, 1958; Rein and Turner, 1999). 따라서 한국 노년층은 자신의 노후를 위한 새로운 행위주체를 필요로 한다. 과거에는 그것이 장남으로 대표되는 가족원이었다(최순남, 1995; 김희삼, 2014). 그러나 산업화나 도시화로 핵가족화가 보편화되고, 효로 대표되는 전통적 가치관이 쇠퇴하는 최근일수록, 노인복지는 가족으로부터 국가나 사회로 이양되고 있음이 주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Cowgill, 1974).

양적 자료에 기반한 최근의 실증 연구들은 그러한 변화를 익히 포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차원에서 가족영역의 복지를 의미하는 사적 이전소득과 정부·사회영역의 복지를 의미하는 공적 이전소득을 측정·비교한 연구, 혹은 사적 이전소득에 대한 공적 이전소득의 대체 효과를 밝히거나, 노년층 빈곤에 대한 각 이전소득의 효과들을 추정한 최근 연구물들에서 공적 복지의 확장을 실증하는 결과들을 널리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복지로의 전환을 확인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된다. 국내의 연구들 중에는 노령층의 소득구성에서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증가하되 주 소득원이 여전히 자녀나 친지 등으로부터의 사적 이전임을 밝힌 연구들이 많다(손병돈, 1998; 1999; 석재은, 2000; 홍경준, 2002; 강성진, 2005; 김희삼, 2008; 김수영·이강훈, 2009; 김진욱, 2011, 전승훈·박승준, 2012). OECD 선진 10개국과의 비교 연구를 시도한 장지연(2007)도 대부분 OECD 선진국들의 사적 이전 소득 0~2% 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한국은 사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28.6%에 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4~6% 내에 그치는 타국의 노인층 근로소득에 비해 한국의 그것은 22.2%에 달하며, 공적 이전 소득도 54~84%의 범위에 있는 타국의 평균치가 70% 정도에 달하는 반면, 한국의 그것은 14.1%에 그치고 있음을 밝혔다.

빈곤효과 감소를 실증한 일련의 연구들도 공적 이전소득이 저소득가구나, 단독가구, 무배우자, 비경활자, 비-건강 노년층에게 효과가 컸다고 주장한다(김경아, 2008; 김정희, 2009; 석재은, 2010; 김진욱, 2010; 송현주, 2013). 금현섭과 백승주(2014)는 노년층의 후생과 만족도와 소득불안정에 대해 공적 이전 소득보다는 사적

이전 소득의 효과가 결정적이었으며, 공적이전 소득은 공적 연금을 수급 받는 가구에만 유효했음을 검증한 바 있다. 이는 공적 복지의 효과가 노년층 전반에 보편적으로 나타난다기보다 빈곤층이나 약자층에 국한된 부분적 현상임을 뜻한다. 사적이전 소득이 노년층의 핵심적 자원임은 강성호와 윤형호(2013)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그들은 한국 노년층의 이상적 소득구성원의 기준으로 간주되는 일반가구 중 위소득 50-150% 사이에 위치한 중산층 노인가구들을 추출해 그들 소득 구성의 평균치를 OECD 10개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중산층 노인가구의 평균 소득구성원이 OECD 국가군의 그것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내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재산소득, 자산환산액이 적정수준의 20-30 % 수준을 오르내리는 반면, 고소득층은 적정소득 대비 재산소득이 537%, 자산환산액은 322%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상기 연구물들에서 판독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노령층의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수의 차이가 드러난다는 점이다. 저소득층의 직계 자녀수는 1.6명, 중산층은 2.4명, 고소득층은 2.9명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곧 자녀수라는 가족적 변인이 변인이 노인들의 경제적 복지와 모종의 연관성을 지닐 것임을 함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적 복지의존의 핵심자원인 가족을 경제적 복지수요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변인으로 포함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치는 사적 이전소득 주도자로서의 가족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위함이다. 과거 연구들은 사적 이전을 제외한 가족 변수들을 통제변수 정도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사적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 변수는 고령층의 삶에 정서적 혹은 도구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자원이자 소속감·안정감·만족감을 제공하는 요인인 동시에(Mancini, 1979), 이전소득의 종류나 양태 등 노령층 복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핵심적 관심사는 공적 복지나 사적 복지 의존성, 혹은 경제적 자립이라는 복지의존 유형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자는 것이므로, 복지수요에 대한 사회문화적 변인들을 유관요인으로 적극 고려하되 초점은 어디까지나 경제적 복지의존성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및 대상

본 연구가 사용한 자료는 국민연금연구원이 2005년부터 격년으로 조사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이하 노후보장패널)의 2013년(5차) 분이다. 노후보장패널은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 노후소득보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를 구축하고자 실시된 종단조사로서, 만 50세 이상 가구원을 가진 전국 5,000여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하는 만 50세 이상 개인 8,600명을 조사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패널 조사는 최근 한국 사회의 복지제도 변동과 관련된 노령자들의 인적, 건강, 경제, 가족차원을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 특히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복지의존인식, 즉 경제적인 도움 여부 및 도움의 주체를 직접 묻고 있다. 따라서 노후보장패널은 노령자들의 복지필요 의식을 직접적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여러 사회경제적 배경과의 관련성을 살펴 보려는 본 연구에 매우 적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활용된 5차(2013년) 조사에서는 2005년도 원패널 가구 5,109가구(신규 60가구 추가) 중, 유지패널 3,749가구와 더불어,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령공백을 막기 위해 추가된 13년도 추가패널 1,201가구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되는 50세 이상 총 가구원수는 8,411명으로 분석에 따라 활용되는 사례는 가변적이지만, 복지의존 유형의 결정요인을 찾는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경우에는 유관변수들의 완전대체 결측법으로 인해 7,362사례가 활용되었음을 밝힌다.

2. 변수 설정 및 연구모형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노령층의 복지의존 필요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변수로 노령자들의 경제적인 도움의 필요 여부 및 도움의 주체에 대한 문항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개념상으로는 노령자들의 복지의존성으로 한정되어질 수 있으며, 세부 측정에서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집단(경제적 독립)’, 그리고 경제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집단 중에서 ‘경제적 도움의 주체는 우선적으로 가족이나, 자녀, 친척이 되어야한다고 인식

하는 집단'과 '경제적 도움의 주체는 정부나 사회단체가 주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집단'의 세 집단이 종속변수로 고려된다. 향후 분석에서는 복지의존 및 사적/공적 필요인식 유형에 따른 세 집단을 기준으로 삼아, 해당 집단들의 특성을 규명하거나 혹은 집단의 소속을 결정짓는 예측요인들을 살펴본다(〈표 2〉 참조).

〈표 2〉 조사응답자의 “복지의존 필요인식 유형”

복지의존 차원	변수 명(범주)	변수 설명
복지 비의존 (경제적 독립)	경제적 독립 집단	조사응답자가 타인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경제력을 가졌는지 여부
복지 의존 (사적·공적 복지선호 인식)	사적_경제적 도움필요 집단	경제적 독립상태가 아니라고 대답한 노령자 중, 노후 경제적 도움을 “자녀/가족/친척”에 받고 싶다고 대답하는 경우
	공적_경제적 도움필요 집단	경제적 독립상태가 아니라고 대답한 노령자 중, 노후 경제적 도움을 “정부/사회단체”에 받고 싶다고 대답하는 경우

2) 독립변수

독립변수로는 조사대상자의 기본적인 인적 차원으로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를 포함하였으며, 더불어 노령층 생활 및 복지필요의 가장 큰 요건으로 고려될 수 있는 건강 차원은 장애여부, 만성질환, 신체적 건강인지, 정신적 건강인지를 고려하였다. 노령층의 건강은 생활전반, 사회관계, 의료비뿐만 아니라, 경제적 생활을 결정짓는 제약변수로서 복지의 필요를 야기하는 핵심적 변인이 될 수 있다(최순남, 1995; 공선희, 2013).

특히 이 연구에서는 노령층의 복지의존 기반이 되는 다음 양대 영역에 주시해, 이를 연구모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우선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기타 친척과 같은 가족 전반의 복지를 사적(민간) 복지로 고려한다. 세부적으로 사적 복지는 노령자의 혼인상태와 세대구성 변수, 가구원 수, 가구원 노령자의 비중, 자녀 수, 자녀 중 아들의 비중으로 측정한다. 그에 대응되는 공적 복지는 노령층의 소득 및 자산과 같은 경제 여건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현재 한국의 공적 복지제도에서는 노령층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보다는 노령층의 소득 및 자산, 나아가 가족구성까지 고려한 선별적 복지의 경향이 높은 바, 노령층 경제력의 여부는 몇몇 연금제도를 제외하고는 여타 공적 복지와 대체적 관계로 정의될 여지가 높다. 즉 자산이나 경제력이 있는 노인에게는 소액의 공적 이전에 대한 기대가 낮을 뿐만 아니라 지급 대상으로 고려될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노인의 경제력은 공적 복지의 필요 및 선정

대상을 측정하는 핵심 변인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노령층의 복지의존인식이라는 주관적 차원을 다루기 때문에 노령층의 객관적 요건들과 더불어, 그들이 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핵심적 설명변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후보장패널이 제공하는 10개 영역에 대한 삶의 만족도 변수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삶에 대한 만족도 요인과 가족 및 사회관계에 대한 만족도 요인으로 분류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연구모형에서는 경제적 만족도와 관계적 만족도가 변수로 투입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변수들과 그 세부 내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조사응답자의 인구사회, 가구, 건강차원 변수 설명

차원	변수 명	변수 설명
인구 사회 차원	성별	조사응답자의 성별 (0=여성, 1=남성)
	연령	조사응답자의 연령
	학력	조사응답자의 학력 (1)무학, 2)초등학교, 3)중학교, 4)고등학교, 5)전문대, 6)4년제, 7)대학원)
	거주지(범주)	조사응답자의 거주지역 (1=서울, 2=광역시, 3=도)
	장애여부	조사응답자의 장애진단 여부 (0=없음, 1=있음)
	만성질환	조사응답자의 만성질환 여부 (0=없음, 1=있음)
	신체건강인지	조사응답자의 자기보고식 신체건강상태 (1)매우 좋지 않다, 2)좋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좋은 편이다, 5)매우 좋다)
	정신건강인지	조사응답자의 자기보고식 정신건강상태 (1)매우 좋지 않다, 2)좋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좋은 편이다, 5)매우 좋다)
가족 차원	혼인 및 세대특성(범주)	조사응답자의 가구세대 및 혼인지위(복합구성변수) 1) 1인 가구+(미혼/이혼/사별), 2) 1세대 가구+(기혼) 3) 2세대 가구+(기혼), 4) 2세대 가구+(미혼/이혼/사별) 5) 3세대 이상 가구+(기혼), 6) 3세대 이상 가구+(미혼/이혼/사별))
	가구원 수	조사응답자 가구의 (사망/분가를 제외한) 현 가구원 수
	가구원 노령자 비중	조사응답자 가구원 중, 65세 이상 노령자의 비중 = (65세 이상 노령 가구원 수) / (전체 가구원 수)
	자녀 수	조사응답자의 총 자녀 수(연속형)
	자녀 아들비중	조사응답자의 자녀 중, 아들의 비중 = (아들 자녀의 수) / (총 자녀 수)
경제 차원	근로여부/형태(범 주)	조사응답자의 근로여부와 직업형태(복합구성변수) = 0)비취업자, 1)임금근로자+정규직, 2)임금근로자+비정규직 3)근로고용주, 4)비근로가족사업, 5)자영업, 6)가족무보수노동
	가구 총소득*	가구의 총 소득
	가구 총지출*	가구의 총 지출
	근로소득*	근로소득 (급여소득(세전), 사업소득, 농림어업소득, 부업소득의 총합)

차원	변수 명	변수 설명
경제 차원	금융소득*	금융소득 (예적금/국공채권 이자, 주식등의 배당금, 주식매매 차익, 빌려준 돈 이자 등)
	부동산소득*	부동산소득 (집세(월세), 각종임대료, 부동산매매차익, 권리금 차액, 기타)
	공적이전소득*	사회보장급여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호연금, 제수당, 기타)
	사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가구원 가족, 비가구원가족, 기타 친인척, 단체 등에서 준 현금과 현물의 가치)
	연금형태수입*	연금형태수입 (개인연금, 저축, 종업원퇴직보험 등으로부터의 정기적 수입)
	기타소득*	기타소득 (가족 · 친척의 1회성 현물현금가치, 퇴직금, 증여상속물, 경조금, 기타 일시적 소득)
	총자산**	가구의 총 자산액
	자가유무	현 거주주택의 소유 여부
만족도 차원	경제적만족도 요인 [Cronbach alpha : .867]	조사 응답자의 경제/물리적 삶 만족도 요인 = 집(주거), 경제적 상태, 직업(일), 건강, 생활전반, 여가만족도의 평균
	관계적만족도 요인 [Cronbach alpha : .893]	조사 응답자의 관계/적 삶 만족도 요인 = 이웃관계, 친구관계, 가족관계, 부부생활, 자녀관계, 형제관계의 평균

* 소득/지출/자산 관련의 원 변수들의 경우 다항로짓분석에서는 자연대수를 취하여 활용한다.

** 총자산 변수의 경우 다항로짓분석에서 원변수가 투입된다. 이는 부채를 포함하는 총자산 변수의 경우 음수값이 상당수 존재하여 자연대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자산변수의 경우 음수 값으로 인해 왜도가 약 8 정도로 보고되어 편포도가 심하지 않으며, 자산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모형과 투입한 모형에서 여타 변수들의 결과가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3) 연구모형

본 연구는 노년층의 복지수요 유형을 ‘경제적 독립’, ‘사적 복지의존’ 및 ‘공적 복지의존’의 세 유형으로 구분 한 후, 각 유형 집단들의 인구, 건강, 가족, 경제, 만족도 차원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 모형과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해 분석에 임하고자 한다.

$$[\text{연구모형}] \text{ 노년층 복지선호 인식} = \sum_{k=1}^n (\text{경제}k) + \sum_{k=1}^n (\text{가족}k) + \sum_{k=1}^n (\text{통제}) + e$$

[연구문제1] 노년층의 복지요구 인식 유형과 사회경제적 자원 분포

가설1: 노년층의 사회경제적 자원과 가족적 안정은 '경제적 독립>사적 복지>공적 복지' 순으로 나타날 것이다.

[연구문제2] 노년층 복지요구 인식의 유형별 영향요인

가설2: 노년층 복지의존 인식은 유형별로 결정요인이 상이할 것이다.

가설2-1: 경제적 독립 유형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가족적 자원을 모두를 갖췄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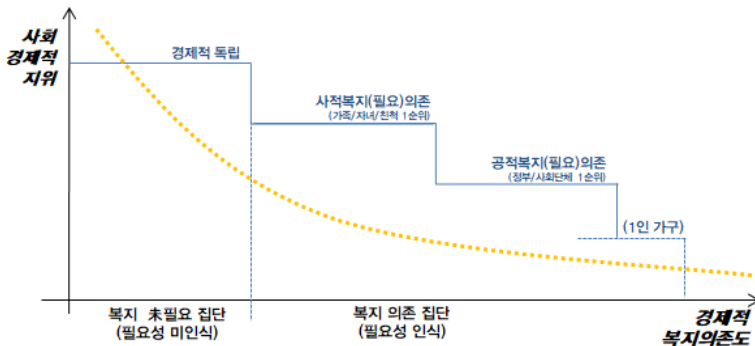
가설2-2: 사적 복지의존 유형과 공적 복지의존 유형 간에는 가족적 요소가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연구문제3] 노년층 복지요구 인식 유형의 최저유형 확인

가설3: 공적 복지의존 유형 중에서도 가족적 자원이 전무한 1인가구의 삶이 가장 열악할 것이다.

상기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한 구체적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령층의 인구/건강특성, 가족, 경제, 만족도 차원의 주요 변수들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한 기술통계 결과를 제시한다. 둘째, 복지의존 유형에 따라 변수의 분포차이나, 직접적으로는 노령층의 사회경제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다. 이는 <연구문제1>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노령층의 '주관적' 복지인식 유형과 '객관적' 경제력, 혹은 가족자원의 분포가 얼마나 위계적으로 상응하고 있음을 밝히려는 것이다. 셋째,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노령층 복지인식의 영향요인을 탐색한다. 이는 다양한 객관적 조건들의 공변량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복지의존 인식에 미칠 수 있는 각 차원들의 효과를 대비적으로 추정하고자 함이다. 넷째로 공적 복지의존 유형을 1인가구와 비 1인가구로 분류해 해당 집단들의 특성을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해 살펴본다. 이는 경제적 위계구조의 최하단에 속하는 공적 복지유형 내에서 가족적 자원마저 열악한 저소득 1인 가구의 상황을 확인하여, 노령층 복지의 최저 유형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상의 논의를 간략히 종합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노령층 복지 선호와 사회경제적 지위의 위계



IV. 분석 결과

1.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3〉에는 본 연구에서 고려된 변수들의 기술통계가 요약되어 있다. 우선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복지의존(필요인식) 유형의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2013년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인식한 노인은 46%, 사적 복지를 선호하는 노인은 42%, 공적 복지를 선호하는 노인은 13%로 확인되었다. 공적 복지 선호 노인 중, 1인 가구를 제외한 공적 복지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9%, 1인가구이면서 공적 복지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비중은 총 4%였다. 이는 1인 노년층 가구의 약 1/3 정도가 공적복지가 필요한 상태임을 알려준다.

한편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연령은 64세, 학력수준은 중학교(3.05)로 확인되고 있다. 거주지는 서울 거주 노령층이 17%, 광역시 26%, 도 57%로 분포되어 있었다. 건강차원에서는 8%가 장애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노령층 절반이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지는 신체의 경우는 보통(3.11), 정신적 건강의 경우는 보통보다는 다소 좋다고(3.44) 인지하고 있었다. 가족, 경제, 만족도 차원은 이하 〈표 4〉를 통해 복지의존 유형 별로 보다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표 4〉 주요 변수 기술통계

차원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인구 사회	남성(%)	42	.49	0	1
	연령(avg.)	64.10	11.02	18	108
	학력(avg.)	3.05	1.30	1.00	6.00
	거주지_서울(%)	17	.38	0	1
	거주지_광역시(%)	26	.44	0	1
	거주지_도(%)	57	.50	0	1
	장애여부(%)	8	.27	0	1
	만성질환여부(%)	50	.50	0	1
	신체건강인지(avg.)	3.11	.97	1	5
	정신건강인지(avg.)	3.44	.81	1	5

차원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가족	혼인/세대_1인, 비혼(%)	14	.35	0	1
	혼인/세대_1세대, 기혼(%)	37	.48	0	1
	혼인/세대_2세대, 기혼(%)	31	.46	0	1
	혼인/세대_2세대, 비혼(%)	07	.25	0	1
	혼인/세대_3세대, 기혼(%)	07	.25	0	1
	혼인/세대_3세대, 비혼(%)	05	.21	0	1
	가구원 수(avg.)	2.69	1.27	1	9
	가구원_노령자 비중(%)	42	.42	.00	1.00
	자녀 수(avg.)	2.83	1.47	0	10
	자녀 중, 아들비중(%)	55	.31	.00	1.00
경제	근로지위_비경황(%)	52	.50	0	1
	근로지위_임금정규직(%)	11	.31	0	1
	근로지위_임금비정규직(%)	12	.33	0	1
	근로지위_근로고용주(%)	02	.15	0	1
	근로지위_비근로가족사업(%)	07	.25	0	1
	근로지위_자영업(%)	09	.29	0	1
	근로지위_무보수가족노동(%)	07	.25	0	1
	*가구 총소득(천원)	34,198.8	30317.3	0	378,600
	*가구 총지출(천원)	27,817.9	23916.3	0	327,756
	근로소득(천원)	9,612.3	17956.0	1	360,000
	금융소득(천원)	244.8	1375.1	1	62,000
	부동산소득(천원)	683.5	4476.6	1	204,000
	공적이전소득(천원)	1,697.3	4716.2	1	100,000
	사적이전소득(천원)	1,014.3	2781.4	1	100,000
	연금형태수입(천원)	27.7	1006.0	1	80,000
	기타소득(천원)	306.9	3382.6	1	150,000
	총자산(천원)	99,599.9	230946.4	-935,000	6,060,000
	자가유무(%)	54	.50	0	1
삶의 만족도	경제적 만족도 요인(avg.)	3.21	.62	1.00	5.00
	관계적 만족도 요인(avg.)	3.62	.59	1.00	5.00
(종속변수) 복지의존 선호	경제적 독립(%)	46	.498	0	1
	경제적 의존_사적영역(%)	42	.493	0	1
	경제적 의존_공적영역(%)	13	.333	0	1
	_공적의존 1인 가구(%)	09	.282	0	1

2. 복지의존인식, 집단별 비교검증

〈표 5〉에서는 일원배치 분산분석으로 복지의존인식의 유형 간 특성을 비교·확인한다. 분석 결과, 경제적 독립유형에서는 남성의 비중이 61%로 높았으며, 여성 노인일수록 가족의 복지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에서는 경제적 독립유형의 평균연령이 약 61세였으며, 사적 복지의존 유형은 약 66세, 공적 복지의존은 68세로 나타나 노령층의 복지의존이 연령과 이에 따른 경제참여율과 밀접히 연동됨을 짐작할 수 있다. 학력은 경제적 독립(3.51), 사적복지(2.73), 공적복지(2.54) 순의 위계를 보이고 있었다. 건강자원에서는 공적 복지의존 유형의 15%가 장애판단을 받은 경험이 있으나, 경제적 독립 유형의 경우는 5%정도로 확인되었으며, 만성질환과 자기보고건강문항들 역시 경제적 독립>사적 복지>공적 복지로 확인되었다.

다음은 사적 복지의 주요한 자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족 차원을 살펴본 결과이다. 응답자의 혼인여부와 세대거주를 조합한 혼인·세대 변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1인가구이면서 혼인상태가 아닌 노령층은 경제적 독립유형에서는 약 10%, 사적 복지의존 유형에서는 13%로 나타났다. 반면 공적 복지의존 유형에서는 그 비중이 31%에 달했다. 1세대로 살면서 기혼상태인 노령층은 모든 유형에서 약 30% 중반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자녀와의 동거비중이 높은 2세대가구 중, 기혼상태인 노령층은 경제적 독립유형 40%, 사적 복지의존 28%, 공적 복지의존 15%로 큰 격차가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노령층이 자녀세대와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려준다. 반면 3세대 이상 집단의 경우에는 사적 복지에 대한 선호가 타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노령층의 가구형태·혼인상태가 복지의존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임을 함의한다. 또한 자녀수는 많을수록 사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아들의 비중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흥미롭다.

노령층 복지의존에는 경제적 차원이 직접적 요인 될 것으로 여겨져 복지의존 유형에 따른 근로지위 분포를 살펴보았는데, 우선 비경제활동인구는 경제적 독립유형 24%, 사적 복지의존 유형 76%, 공적 복지의존 유형 70%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은퇴 이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노령층의 현실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임금 근로자 중 정규직 분포를 확인한 결과, 경제적 독립유형이 21%로 타집단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비임금 근로자 중에서도 타인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도 경제적 독립유형은 5%로 확인되어 타 집단보다 극명하게 높은 분포를 보여준다. 비정규직은 경제적 독립유형에서 18%로 가장 높긴 하지만, 공적 복지의존 유형도 비정규직

비중은 12%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한국 노령층의 경제적 자립이 단순히 근로여부가 아닌 근로의 질로 결정됨을 함의한다..

한편 노령층의 소득과 복지의존 인식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연간)가구총 소득의 경우 경제적 독립유형의 경우 연 약 4,200만원, 사적 복지의존 유형은 약 3,000만원, 공적 복지의존 유형은 약 2,000만원으로 보고되었으며, 가구 총지출 또한 약 3,300만원, 2,500만원, 1,70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인 소득구분 근로소득의 경우, 경제적 독립유형의 근로소득은 1,800만원에 달하는 것에 비해 사적 복지의존 유형은 약 200만원, 공적 복지의존 유형은 약 500만원의 큰 차이를 보였다. 주목할 점으로는 전체적인 소득이나 소비규모를 고려할 때, 사적 복지의존 유형은 근로소득의 비중이 매우 낮았던 반면, 공적 복지의존 유형은 그 비중이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복지에 의존하는 경제적 자원이 결여된 노령층 내에서도 가족의 지원을 받는 노령층과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노령층으로 이질화되어 있음을 함의한다.

금융소득이나 부동산소득도 역시 경제적 독립유형이 가장 높았는데, 두 소득 모두 경제적 독립유형이 복지의존 집단보다 약 4~5배 정도 높았다. 반면 공적 이전소득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즉 경제적 독립유형의 공적 이전소득은 약 240만원, 공적 복지의존 유형은 약 160만원으로 드러나 그 차이가 적었다. 사적 이전소득의 경우에는 경제적 독립유형의 약 61만원보다, 사적 복지의존 유형이 약 140만원, 공적 복지의존유형이 약 130만원으로 복지의존 유형 집단들은 자립집단보다 두배 정도 많았다. 총 자산의 경우, 경제적 독립유형은 약 1억 6천만원의 총 자산으로 확인되었으나, 사적·공적 복지 의존유형은 약 5천만원에 불과해, 그 차이가 세 배에 달했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분석결과, 주거, 경제, 직업, 여가, 생활, 건강 등 경제적 만족도와 가족, 자녀, 친구, 친척 등과의 관계를 측정하는 관계적 만족도가 경제적 독립, 공적복지의존, 사적복지의존 유형의 순으로 배치되고 있었다.

〈표 5〉 복지의존 유형별, 주요 변수 집단별 차이검증

차원 / 변수		경제적 독립	사적복지	공적복지	F-value(sig)
인구 사회	성별	.61	.21	.41	675.504***
	연령	60.71	66.37	67.95	350.257***
	학력	3.51	2.73	2.54	467.242***
	거주지_서울	.18	.17	.15	2.305
	거주지_광역시	.23	.28	.29	12.424***
	거주지_도	.59	.55	.56	5.241**
	장애여부	.05	.08	.15	57.206***
	만성질환	.39	.56	.62	148.332***
	신체건강인지	3.46	2.88	2.64	511.575***
	정신건강인지	3.68	3.29	3.16	317.827***
가족	혼인/세대_1인, 비혼	.10	.13	.31	158.408***
	혼인/세대_1세대,기혼	.36	.39	.32	10.538***
	혼인/세대_2세대,기혼	.40	.28	.15	141.008***
	혼인/세대_2세대,비혼	.06	.06	.12	32.217***
	혼인/세대_3세대,기혼	.07	.07	.05	3.318*
	혼인/세대_3세대,비혼	.02	.07	.05	62.624***
가족	가구원 수	2.80	2.73	2.18	102.579***
	가구원_노령자 비중	.31	.49	.57	258.386***
	자녀 수	2.55	3.13	2.77	148.032***
	자녀 중, 아들비중	.55	.55	.53	2.249
경제	근로지위_비경황	.24	.76	.70	1397.472***
	근로지위_임금정규직	.21	.02	.04	374.665***
	근로지위_임금비정규직	.18	.06	.12	126.144***
	근로지위_근로고용주	.05	.00	.01	94.246***
	근로지위_비근로가족사업	.12	.02	.04	138.422***
	근로지위_자영업	.16	.03	.06	180.734***
	근로지위_무보수가족노동	.05	.10	.02	66.927***
	가구 총소득(raw)	42056.53	30098.69	19660.10	291.769***
	가구 총지출(raw)	33194.27	25197.24	16957.45	225.552***
	근로소득(raw)	18016.06	1996.48	4863.81	922.648***
	금융소득(raw)	429.98	101.78	71.94	60.744***
	부동산소득(raw)	1208.16	223.29	356.22	46.688***
	공적이전소득(raw)	2429.11	914.71	1664.63	93.617***
	사적이전소득(raw)	611.25	1387.96	1263.78	75.800***
	연금형태수입(raw)	52.83	8.91	2.43	2.071

차원 / 변수		경제적 독립	사적복지	공적복지	F-value(sig)
경제	기타소득(raw)	410.28	247.78	151.68	3.332*
	총자산(raw)	162638.73	46935.70	53835.31	522.908***
	자가유무	.70	.35	.63	259.192***
삶의 만족도	경제적 만족도 요인	3.41	3.12	2.77	565.866***
	관계적 만족도 요인	3.73	3.59	3.30	230.392***
		3783	3433	1046	

*=p<0.05, **=p<0.01, ***=p<0.001

3. 고령층의 복지의존 유형 결정요인

〈표 6〉에서는 복지의존 각 유형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²⁾가 제시된다. 먼저 모형1중 [M-1]의 결과를 살펴보면, 사적 복지의존 대비 경제적 독립 소속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로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소속확률이 약 두 배 정도 높았으며, 학력과 신체적·정신적 건강도 역시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가족차원에서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자녀중 남성의 비중이 높을수록 사적복지 유형으로의 소속이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남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전통적 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노령자의 혼인 및 세대차원의 경우, 경제적 차원을 고려하지 않은 [M-2]모형에서 1인비혼 가구에 비해 유배우자 가구의 사적 복지의존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게 확인되었다. 특히 세대보다는 배우자 존재가 경제적 자립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기혼자 가구의 경우, 생활비·여가비 등이 독신가구에 비해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녀에게 지원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구체적인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적 복지의존 유형[집단2]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한 후, 경제적 독립유형[집단1]에 대한 변수들의 소속확률을 예측하는 〈모형1〉을 탐색한다. 다음 〈모형2〉에서는 공적 복지의존 유형[집단3]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한 후, 경제적 독립유형 유형[집단1]에 대한 각 변수들의 소속확률을 확인하고, 〈모형3〉에서는 공적 복지의존 유형[집단3]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한 후, 사적 복지의존 유형[집단2]에 대한 변수들의 소속 확률을 확인한다. 이 때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변수들의 계수를 상대적위험비(RRR, relative risk ratio)로 제시한다. 더불어 가족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의 효과를 보다 엄밀히 추정하기 위해 모든 변수가 투입된 모형과 경제차원의 변수가 제외된 모형이 각기 제시된다.

〈표 6〉 복지의존 유형별,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차원 /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경제독립 vs 사적복지의존[=0]		경제독립 vs 공적복지의존[=0]		사적복지의존vs공적복 지의존[=0]	
		M-1	M-2	M-3	M-4	M-5	M-6
인구 사회	constant	0.07***	0.05***	0.02*	0.012**	0.32	0.26
	성별	2.19***	7.83***	0.95	1.73	0.43***	0.22***
	연령	1.00	1.07*	0.97	1.02	0.97	0.95
	연령sq	1.00	1.00***	1.00	1.00	1.00	1.00
	학력	1.14***	1.12***	1.28***	1.27***	1.12***	1.13**
	거주지_서울	-			-		-
	거주지_광역시	0.87*	0.76**	0.81	0.71**	0.93	0.92
	거주지_도	1.09	1.15	0.83	0.92	0.76**	0.81
	장애여부	1.04	0.82	0.83	0.66**	0.79	0.81
	만성질환	0.98	0.96	0.98	0.98	1.00	1.01
	신체건강인지	1.18***	1.26***	1.14*	1.22***	0.97	0.97
	정신건강인지	1.11**	1.24***	0.89	0.96	0.80***	0.77***
가족	혼인/세대_1인, 비혼	-	-	-	-	-	-
	혼인/세대_1세대,기혼	0.84	0.42***	1.34	1.05	1.59***	2.51***
	혼인/세대_2세대,기혼	0.79	0.45***	1.16	0.97	1.46	2.12**
	혼인/세대_2세대,비혼	1.29	1.34	0.65	0.68	0.51***	0.51***
	혼인/세대_3세대,기혼	0.87	0.49***	0.55	0.46	0.64	0.93
	혼인/세대_3세대,비혼	0.92	0.72	0.54	0.46*	0.58	0.63
	가구원 수	0.87*	0.85**	1.20	1.19	1.37***	1.40***
	가구원_노령자 비중	1.11	1.19	0.77	0.80	0.70*	0.67*
	자녀 수	0.98	1.00	1.06	1.09*	1.08***	1.10**
	자녀 중, 아들비중	0.73***	0.84*	1.08	1.25	1.48***	1.49**
경제	근로지위_비경활	-		-		-	
	근로지위_임금정규직	6.47***		4.67***		0.72	
	근로지위_임금비정규직	3.94***		3.19***		0.81	
	근로지위_근로고용주	24.36***		10.49***		0.43	
	근로지위_비근로가족사업	3.43***		3.67***		1.07	
	근로지위_자영업	4.64***		5.30***		1.14	
	근로지위_무보수가족노동	2.21***		4.97***		2.25	
	근로소득(log)	1.10***		1.03		0.94***	
	금융소득(log)	1.10***		1.12***		1.02	
	부동산소득(log)	1.10***		1.12***		1.02	

차원 /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경제독립 vs 사적복지의존[=0]		경제독립 vs 공적복지의존[=0]		사적복지의존vs공적복 지의존[=0]	
		M-1	M-2	M-3	M-4	M-5	M-6
경제	공적이전소득(log)	1.08***		1.01		0.94***	
	사적이전소득(log)	0.95***		0.98		1.04***	
	연금형태수입(log)	1.16**		9.54		8.21	
	기타소득(log)	1.01		1.00		0.99	
	총자산(raw)	1.00***		1.00***		1.00	
	자가유무	1.20*		0.84		0.70***	
삶의 만족 도	경제적 만족도 요인	1.62***	1.74***	3.21***	3.65***	1.98***	2.09***
	관계적 만족도 요인	0.88*	0.86*	1.13	1.14	1.29***	1.32
MiltiNominal Logit R sq		.298	.200	.306	.200	.306	.200
BinaryNominal Logit R_sq		.560	.369	.465	.279	.264	.159
$\Delta R\text{-sq}=(\text{경제}+\text{가족})-(\text{가족})$		.191		.186		.105	

*=p<0.05, **=p<0.01, ***=p<0.001

경제적 변수들을 포함한 [M-1] 모형 결과를 살펴보면, 노령자의 근로활동이 경제적 자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주·정규직 순으로 경제적 자립에 소속 확률이 높아져 단순 고용여부가 아닌 고용의 질이 경제적 자립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음을 판독할 수 있었다. 소득과 자산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근로·금융·부동산·공적이전·연금소득은 경제적 자립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사적 이전소득은 경제적 자립과는 부적인 관계를 지님을 확인할 수 있어 흥미롭다. 이는 노령층이 경제적으로 자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녀로부터의 부양을 비선호한다는 결과이다. 총자산은 원변수로 투입되어 수치의 해석이 용이치 않지만 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고, 또한 노령자의 자가 소유는 경제적 자립인식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끝으로 삶의 만족도 차원에서는 경제적 만족도는 경제적 자립유형의 소속확률을, 관계적 만족도는 사적 복지 의존 유형으로의 소속확률을 높이고 있어 흥미롭다.

다음으로 공적 복지의존 유형 대비 경제적 독립유형에 대한 소속효과를 살핀 <모형2>의 결과로, 우선 학력과 신체적 건강도가 경제적 자립유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가족차원의 경우, 두 유형 소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특이하다. 반면 경제적 차원은 근로지위가 안정적인수록 경제적 독립 유형의 소속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소득유형 중에서는 자산성 소득인 금융·부

동산 소득만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만족도 차원에서는 경제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제적 자립유형으로의 소속확률을 크게 높이고 있었다. 그러나 가족차원을 포함한 [M-4]모형에서 가족차원의 변수들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독립유형의 경우에는 경제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가족 변인의 영향력이 약하고, 공적 복지의존 유형의 경우에는 가족적 자원이 부재하기 때문에 가족 변인의 영향력이 미약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효과 양상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 모형으로 공적 복지의존 유형과 사적 복지의존 유형간 소속 효과를 살펴본 <모형3>의 분석결과를 확인해보자. [M-6]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남성일수록 공적 복지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학력이 높을수록 사적 복지의존 유형에 소속될 확률이 증가하였다. 또 거주지 효과의 경우, 서울보다는 지방에 사는 노인의 경우 공적복지에 의존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족 차원에서는 1인비혼 가구에 비해 1세대기혼, 즉 노인 부부가 같이 사는 경우에는 사적 복지의존 유형으로 소속될 확률이 높았다. 반면 사별이후 자녀와 같이 살 것으로 추정된 2세대 비혼자의 경우에는 공적 복지를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녀에 대한 부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차원을 포함할 경우, 노인의 근로지위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의 설명력을 하단에 기재함과 더불어, 각각의 유형들을 직접 비교한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설명력도 제시했다. 특히 복지의존 유형의 주요 설명차원이 되는 가족차원과 경제차원의 효과를 집중적으로 살피기 위해, 모든 변수를 포함한 분석모형과 경제차원을 제외한 분석모형을 각기 기재한 후, 가족과 경제차원을 포함한 모형의 설명력과 가족차원만을 포함한 모형의 설명력을 차감해 보았다. 그 결과, 경제적 독립유형과 사적 복지의존 모형에서 가족차원을 포함한 변수의 설명력은 약 37%에 달했으며, 경제적 차원을 추가하면 약 19%가 증가한 56%에 달했다. 경제적 독립유형과 공적 복지의존 모형에서는 경제차원을 제외했을 때 약 28%, 경제차원을 포함했을 때 약 19% 증가한 46.5%의 설명력을 보였다. 해당 두 모형에서 경제적 차원의 설명력이 약 20%에 달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차원의 중요성을 입증할 수 있다. 한편, 공적 복지의존 유형과 사적 복지의존 유형 모형의 설명력은 경제차원이 제외되었을 때는 약 16%, 경제차원이 포함되었을 때는 약 26% 정도여서, 경제차원의 순수 설명력이 약 10% 정도로 추산된다. 따라서 경제적 독립유형과 비교해볼 때, 공적 복지와 사적 복지의존의 경우 경제적 차원보다 노령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가족적 자원이 두 집단으로의

귀속을 결정짓는 것으로 보인다.

4. 공적 복지의존 유형 내 1인 가구의 특징

본 연구는 추가 분석에서 경제적 자원이나 가족관계적 자원에서 가장 열악한 유형이 공적 복지의존 유형임을 확인하였다. 또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사적 복지와 공적 복지의존 사이를 결정짓는 핵심차원이 가족임을 확인하였다. 공적 복지의존 유형은 사적 복지의존 유형에 비해 소득이나 소비의 차이는 근소하나, 자가 유무 및 총자산의 경우에서 사적 복지의존 유형보다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 노령층의 혼인/세대 상태, 자녀 수, 자녀 중 아들비중이 두 집단을 결정짓는데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는 경제적 비독립 유형 중, 공적/사적 복지의존을 결정짓는 핵심변인은 노령층의 경제적 자원보다 가족과 친척과 같은 가족적 자원이 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이는 곧 공적 복지의존 유형이 경제적 자원과 더불어 특히 가족적 자원 모두가 결여된 상태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가족적 자원 모두를 결여한 공적 복지의존 유형집단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낮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공적 복지의존 유형에서도 가족적 자원이 매우 열악한 1인 가구집단과 비1인 가구 집단의 특성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경제와 가족 양 영역이 박탈된 노령층을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로써 한국사회의 복지위계 구조의 최하단을 점하는 범주를 밝혀냄과 동시에 본 연구에서 제시된 복지인식 함수의 초기 값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표 7〉에서는 공적 복지의존 유형의 평균값과 이를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분류한 집단들의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데, 공적 복지의존 유형 총 1,046명 중 비 1인가구는 719명, 1인가구는 327명이다. 유의미한 변수들을 간략히 비교해보면, 우선 성의 경우 공적 복지의존 1인 가구의 81%가 여성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령도 평균 약 73세로, 앞서 타 유형들이 60세 초반-중반이 평균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초고령층 여성이 집중되어 있었다. 학력수준도 평균 초졸 학력으로 보고되었다. 만성질환도 72%로 매우 높았으며, 신체/정신적 건강도 보통보다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족차원에서는 1인 가구 그 자체가 하나의 표본이 된다는 점에서 혼인/세대 변수의 효과를 산정하기 어렵다. 또 평균연령의 결과와 유사하게도 가구원 중 노령자 비중이 80%에 달하고 있었다. 경제차원에서의 근로지위도 1인가구의 82%가 비경제활동자였으며, 근로 당사자인 경우에도 비정규직이나, 소규모 자영업이 대부분이

었다. 가구총소득은 평균 연 900만원, 소비는 약 700만원으로 한 달 평균 약 50~60만원의 극빈적 소비를 영위하고 있어 절대적 빈곤자일 가능성이 높다. 흥미로운 점은 삶의 만족도에서 경제적 만족도는 가장 낮으나, 관계적 만족도는 비(非)1인 가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공적 복지 의존 유형에서는 가족이 있는 것이 보탬을 주는 자원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어 관계적 만족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 마디로, 공적 복지 의존 유형 중에서도 1인가구는 한국사회에서 최취약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7〉 공적 복지 의존 집단 내, 비1인가구와 1인 가구 차이 비교 (t-검증)

차원 / 변수		공적복지의존 (전체)	공적복지의존 _비1인가구	공적복지의존 _1인가구	T-값
인적/건강	성별	.41	.51	.19	11.258***
	연령	67.95	65.95	72.36	-10.032***
	학력	2.54	2.78	2.01	10.261***
	거주지_서울	.15	.16	.14	.874
	거주지_광역시	.29	.29	.28	.070
	거주지_도	.56	.55	.58	-.696
	장애여부	.15	.14	.17	-1.310
	만성질환	.62	.58	.72	-4.784***
	신체건강인지	2.64	2.76	2.36	6.359***
	정신건강인지	3.16	3.28	2.91	6.541***
가족	혼인/세대_1인, 비혼	.31	.00	1.00	-
	혼인/세대_1세대, 기혼	.32	.46	.00	-
	혼인/세대_2세대, 기혼	.15	.22	.00	-
	혼인/세대_2세대, 비혼	.12	.18	.00	-
	혼인/세대_3세대, 기혼	.05	.07	.00	-
	혼인/세대_3세대, 비혼	.05	.07	.00	-
	가구원 수	2.18	2.71	1.00	43.386***
	가구원_노령자 비중	.57	.47	.80	-12.676***
	자녀 수	2.77	2.83	2.65	1.397
	자녀 중, 아들비중	.53	.54	.50	1.929
경제	근로지위_비경활	.70	.65	.82	-6.030***
	근로지위_임금정규직	.04	.06	.01	5.359***
	근로지위_임금비정규직	.12	.14	.09	2.008*

차원 / 변수		공적복지의존 (전체)	공적복지의존 _非1인가구	공적복지의존 _1인가구	T-값
삶의 만족도	근로지위_근로고용주	.01	.01	.00	.895
	근로지위_비근로가족사업	.04	.06	.01	5.359***
	근로지위_자영업	.06	.06	.07	-.554
	근로지위_무보수가족노동	.02	.03	.00	3.742***
	가구 총소득(raw)	19660.10	24180.31	9610.45	13.975***
	가구 총지출(raw)	16957.45	21533.58	7128.84	18.230***
	근로소득(raw)	4863.81	6354.37	1590.98	8.451***
	금융소득(raw)	71.94	77.93	58.57	.948
	부동산소득(raw)	356.22	409.38	239.31	.966
	공적이전소득(raw)	1664.63	1710.22	1643.87	-.327
	사적이전소득(raw)	1263.78	1425.84	1189.76	-1.260
	연금형태수입(raw)	2.43	1.00	3.08	.674
	기타소득(raw)	151.68	116.37	167.74	.899
	총자산(raw)	53835.31	.36811.64	61590.80	3.237***
	자가유무	.63	.79	.55	-8.230***
	경제적 만족도 요인	2.77	2.62	2.84	5.463***
	관계적 만족도 요인	3.30	3.14	3.38	5.670***
표본수		1046	719	327	

*=p<0.05, **=p<0.01, ***=p<0.001

V. 결론: 요약과 함의

이 논문에서 밝혀보고자 한 주요 관심사와 분석 결과를 총괄적으로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편적 공적복지제도로의 이행은 주로 최근 10년 간 진행된 과정으로, 전통적 효 사상과 자녀부양의무가 미덕으로 강조되었던 과거를 살아온 노인들에게는 경제적 자립이나 성공한 자녀들에게 복지를 제공받는 것을 가장 선호할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및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복지가 경제적 박탈과 자녀의 부양의무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하는 선별적 복지성향이 강한 현 상황에서는, 공적 복지에 의존하는 노인들은 사적 복지에 의존하는 노인보다 경제력이나 가족적 지원이 낮은 처지에 놓여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1〉에서 노년층의 ‘경제적 독립’ > 사적 복지의존 > 공적 복지의존’이라는 위계적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확인함을 기본 목표로 삼았다.

구체적 분석과정의 일환으로 먼저 분산분석을 통해 노년층의 복지의존 인식 별 노년층의 특성과 가족차원, 경제차원, 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비교 검증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독립유형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포함한 인적 측면에서 비교적 양호한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통상적 가족형태를 영위하면서 높은 경제력을 지닌 집단으로 파악되었다. 또 삶의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집단이었다. 그 다음 위계서열을 차지하는 것이 사적 복지의존 유형이었다. 공적 복지의존 유형과 비교해보았을 때, 그들은 경제력으로는 총소득과 소비는 높았으나 근로소득이나 공적 이전소득, 총 자산이 낮아 경제력으로는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노년층의 학력, 장애나 만성질환, 건강이 공적 복지의존 유형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가족형태에서도 혼인상태의 비중이 높고, 가구원 수도 많았다. 삶의 만족도는 경제적 독립 유형보다는 낮았으나, 경제적 만족도나 관계적 만족도가 공적 복지의존 유형보다 높게 확인되었다. 따라서 사적 복지의존 유형은 경제적 독립 유형 다음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공적 복지의존 유형에 속하는 노년층의 경우, 그들은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평균 학력, 건강상태, 가계 총소득/소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가족형태에서도 1인 가구가 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1인가구가 아니더라도 비혼자(이혼/사별/미혼)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삶의 만족도 차원에서도 가장 낮은 경제적 만족도와 관계적 만족도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공적 복지의 공급이 경제력과 가족적 자원이 전무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증거로서, 그것이 스스로 원하는 것이 아닌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라는 점을 함의한다. 따라서 <연구문제1>이 경험적으로 확증된 셈이다. 이처럼 복지에 대한 노령층의 인식이나 요구가 그들의 실질적 요구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보장선이나 부양의무자의 존재와 같은 객관적 조건 외에 노년층의 주관적 의식이 정책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야함을 인지할 수 있다.

<연구문제2>에서는 <연구문제1>에서 확인된 해당 복지의존 유형들에 대한 결정요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구문제1>의 결과를 토대로 경제적 독립과 복지의존 유형 사이에서는 경제력과 가족적 자원의 모든 격차가 있을 것으로 가정했다. 분석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우선 사적 의존모형에서는 남성일수록,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양호할수록 경제적 독립유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되고 있었다. 경제차원에서는 비경제활동자보다는 일하는 노령층이 경제적 독립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고용주나 정규직과 같은 직업적 위세효과가 반영되고 있었다. 사적

이전소득을 제외하고는 가구총소득, 소비, 자산과 같은 대부분의 소득과 삶의 만족도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렇다면 복지 의존 유형 내에서 사적 복지 의존 유형과 공적 복지 의존 유형을 가르는 결정적 변인은 무엇일까? 이 점은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모형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수 전부를 투입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일수록, 정신건강이 나쁘다고 인지할수록 공적 복지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다. 또 가족차원에서는 기혼자에 비해 1인가구나 비혼인 상태, 그리고 자녀의 수가 적거나, 아들 비중이 낮을 때 공적 복지에 의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공적 복지와 사적 복지를 결정짓는 핵심 변인이 가족적 자원임을 강력히 시사한다. 요컨대 복지의 의존성을 높이는 필수조건은 경제적 요건이 되, 가족적 요건마저 부재한 노년층이 최종적으로 공적 복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함축한다. 경제차원에서는 전반적인 소득/소비 혹은 사적 이전소득이 높을수록 사적 복지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근로소득이나 공적 이전소득, 자가소유는 공적 복지 의존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 복지에 의존하는 노인은 자녀(혹은 여타 가족)의 집에서 머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자가유무의 부정적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공적 복지 의존에 대해서는 고령 여성, 1인가구, 낮은 근로소득이 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또 이 연구에서는 노년층의 복지위계체계의 저변에 위치한 공적 복지 의존 유형의 1/3이 1인가구라는 점에 착안해, 공적 복지 의존 유형을 1인가구 여부를 기준으로 분해해 보았다. 이는 경제적 자원 및 가족적 자원이 전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저적 유형을 찾아보자는 작업의 일환이었다. 예상대로 공적 복지 의존 유형이라는 동질적인 집단 내에서도 1인가구 노년층은 비1인가구 노년층에 비하여 학력이나 건강 상태가 낮아, 공적 복지 의존 유형 중에서도 1인 가구 노년층이 복지 의존 체계의 기층을 점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들은 비경제활동자가 82%에 달했고, 평균연령도 72세였다. 가구총소득은 연 960만원, 총지출은 연 710만원으로 한 달에 60만원 정도를 쓰는 경제적 빈곤층이었다. 그러나 삶의 만족도 중 저열한 관계적 만족도와는 달리 경제적 만족도는 비1인가구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1인가구의 경우 어려운 가족들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앞가름만 하면 된다는 인식의 소치라고 해석된다.

상기 분석결과들을 통해 복지 의존 인식의 유형별 특성을 총 정리한다면, 경제적·가족적 자원 모두가 유리한 경제적 독립 유형이 46%로 확인되었다. 42%는 사적 복지 의존 유형으로, 이들은 가족적 자원은 갖추어졌으나 경제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3%가 공적 복지 의존 유형으로서, 이들은 경제적 자원 및 가족적 자원 모두 부족한 상황이며, 그 중 1인가구인 4%가 빈곤 상황에 처

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 노년층의 복지선호 인식이 그들의 경제·가족적 자원의 함수에 따라 위계적으로 분포하고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한 2013년은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제도적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적 복지는 사적 복지의 차선'이라는 본 분석결과는 한국사회에서 노인복지의 보편화가 제도적 측면에서나 문화의식적 측면 모두에서 미흡하다는 점을 부분적으로 입증한 것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노인복지비 지출이나 제도를 통해 확인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노년층의 복지의존성에 관한 주관적 인식범주를 통해 그 사회경제적 연관성을 밝혀보고자 한 것으로 경제적 독립, 사적 복지 및 공적 복지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사회경제적 생활상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경험적 분석을 통해 다각도로 확증할 수 있었다. 여기서 드러난 노년층의 기대, 특히 경제력뿐 아니라 가 가족관계의 중요성은 향후 노인 복지정책을 계획, 집행, 평가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작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제도적 효율성을 넘어 의식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복지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까닭이다.

이 연구가 2013년도 자료를 활용한 것은 5년 전 상황과의 비교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 선정은 연구진이 애초부터 의도한 것으로서, 해당 시기는 한국사회에서 노인복지가 주된 사회적 화두로 등장한 기점인 까닭이다. 즉, 2013년은 노인 기초연금제의 확산을 한 해 앞둔 시기로서, 노인복지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촉발된 시점이었다.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자 반응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희소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존 인식과 그 영향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 이번 연구는 노인복지에 관한 종단 연구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 최근 공개된 6차년도 패널자료를 활용한 보다 체계적이고 정치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강성진·전형준. (2005). 사적이전소득의 동기와 공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에 대한 연구. 『공공경제』, 10(1): 23-46.
- 강성호. (2008). 부양의식변화에 따른 공적이전소득 비중의 변화분석. 『보건복지포럼』, 144(0): 65-76.

- 강성호·윤형호. (2013). 가구소득원 구성과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소득원 확보방안. 제4회 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자료집. 국민연금연구원.
- 금현섭·백승주. (2014). 공적연금, 사적이전, 그리고 주관적 후생: 소득안정화 역할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2(1): 145-175.
- 공선희. (2013). 노인들의 가족돌봄에 대한 기대변화와 정책욕구. 『한국사회학』, 47(1): 277-312.
- 김기태·박봉길. (1998). 생활보호대상노과 일반노인의 생활만족도. 『노인복지연구』, 1(1): 57-83.
- 김수영·이강훈. (2009). 이전소득의 독거노인가구 빈곤경감 효과 비교. 『한국노년학』, 29(4): 1559-1575.
- 김원섭. (2007).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시민권 이론의 관점에서. 『사회보장연구』, 23(4): 139-166.
- 김진욱. (2010). 한부모 가구의 빈곤과 소득이전, 양부모 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6(1): 101-125.
- _____. (2011). 노후소득의 혼합구성과 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노년학』, 31(1): 111-127.
- 김희삼. (2008). 사적이전과 노후소득보장. 『한국개발연구』, 30(1): 71-130.
- _____. (2014).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족과 정부의 역할.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 시리즈 2014-02.
- 석재은. (2000). 노인의 소득원 구성과 공사역할분담 분석. 『사회보장연구』, 16(1): 51-78.
- 석재은·김태완. (2000). 노인의 소득실태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손병돈. (1998). 가족간 소득이전의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9). 사적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39: 157-179.
- 손정연·한경혜. (2012). 결혼상태의 지속 및 변화가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경제자원 및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35: 5-40.
- 송현주. (2013). 중고령자의 공적·사적이전소득분석. 제4회 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자료집. 국민연금연구원.
- 이광석·김동룡. (2013). 복지모순으로서의 소득역전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5(2): 401-428.
- 이윤석. (2011).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관련 태도 연구: 자녀, 어머니, 아

- 버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4(3): 1-30.
- 에스핑-안데르센, 요스타/박형신 외 역. 1990/2006. 『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일신사.
- 장지연. (2007). 중고령자 가구의 소득수준과 소득구성의 특징. 『노동리뷰』, 36: 3-13.
- 전승훈·박승준. (2012).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에 대한 비교 분석. 『한국경제통상학회』, 30(2): 63-93.
- 정의신. (2008). 계층별 사적이전에 대한 분석. 『사회경제평론』, 30: 191-223.
- 최순남. (1995).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한신논문집』, 12: 497-534.
- 홍경준. (2002).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 분석: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0: 61-85.
- Cowgill, D. O. (1974). "Aging and Modernization: A Revision of the Theory." in J. F. Gubrium(ed), *Late Life: Communities and Environmental Policy*. Charles C. Thomas: 123-146.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박형신 외 역. 『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일신사. 2006.
- Kaufmann, Franz-Xaver. (2002). *Sozialpolitik und Sozialstaat: Soziologische Analysen*. Opladen: Leske + Budrich. 정연택 역. 『사회정책과 사회국가』. 21세기사. 2005
- Mancini, J. A. (1979). "Family Relations and Morale among People 65 Years of Age and Older."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9(2): 292-300.
- Modigliani, F. and Miller, M. (1958). "The Cost of Capital, Corporation Finance and The Theory of Invest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48(3): 261-297.
- Rein, M. and Turner, J. (1999). "Work, Family, State and Market: Income Packaging for Older Households."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52(3): 93-106.

이왕원(李王元): 주저자. 고려대 응용문화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이며, 관심 분야는 사회불평등론, 교육사회학, 노동사회학, 사회통계학 등이다(sanha22@naver.com).

김문조(金文朝):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역임한 후 강원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임 중이며, 관심분야는 현대사회사상, 사회불평등론, 미래연구 등이다(muncho@korea.ac.kr).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정책공감성에 관한 연구: 균형인사정책의 수용성 및 성과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김선아·박성민

본 연구의 목적은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 및 성과 인식을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정책공감성 정도를 진단하고 제도별 수용성 확보가 균형인사정책의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과 2차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는 것이다. 특히 균형인사정책의 수혜 여부에 따라 정책공감성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분석 대상을 균형인사정책의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현재 공직사회 내부에 균형인사정책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공감성 수준은 어떠한가?”, “균형인사정책의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 간 수용성 및 성과 인식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가?”, “균형인사정책의 수용성은 균형인사정책의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을 매개로 2차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등의 세 가지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정책공감성을 바탕으로 균형인사정책의 성과 향상 방안에 대한 실무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균형인사정책, 공감성, 수용성, 소극적 대표성, 적극적 대표성]

1. 서론

1996년 도입된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를 시작으로 균형인사정책이 시행된 지 약 2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이념을 바탕으로 제도화된 균형인사정책은 이와 유사한 미국의 고용기회 균등정책(EEO: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및 소수집단 우대정책(AA: Affirmative Action)과 비교

* 본 논문은 2017년 인사혁신처가 발주하고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정책연구용역(공직 내 균형인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연구)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 및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연구 논문 형태로 발전시킨 것이다.

논문접수일: 2018.11.28, 심사기간(1차): 2018.12.05~12.17, 게재확정일: 2018.12.17

할 때 우리나라의 공공 인적자원관리에서 적용된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하지만 발전적 균형인사정책의 구현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전개되었던 노무현 정부의 이니셔티브가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면서 공직 소수 집단을 우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여성·장애인·지역 인재 공무원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인사혁신처, 2018a). 특히 균형인사정책의 세부 제도를 설계하는데 있어 정책의 적용 대상이라 할 수 있는 ‘공직 소수 집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인사정책의 기존 대상 집단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새로운 대상 집단의 발굴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현재는 균형인사정책이 여성 및 남성, 장애인, 이공계 인재, 지역인재, 저소득층 인재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고 향후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도 균형인사정책의 대상 집단으로 포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인사혁신처, 2018b).

다만 인적자원관리 제도의 성과 향상에 있어 제도를 적용받는 대상이 해당 제도의 필요성 및 중요성, 성과에 얼마만큼 공감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미래학자 Rifkin(2009)은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규정할 수 있는 기본 특성으로 공감(Empathy) 및 공감적 감수성을 논의하면서 공감성은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는데 있어 핵심 요소라고 설명하였고, 신정아(2015)는 공감성이 공동의 현실을 구축하는 강력한 기제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균형인사정책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공직 사회 내부의 정책공감성이 외부로 확장될 때 균형인사정책이 추구하는 형평성, 공정성, 사회통합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공직 사회 내부의 정책공감성 수준 진단을 통해 제도별 수용성 확보를 토대로 균형인사정책의 성과 향상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균형인사정책의 수용성 및 성과인식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공직 사회 내부에 균형인사정책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특히 문미경·최무현(2007)의 연구를 통해 균형인사정책의 수혜 집단인지 비수혜 집단인지에 따라 수용성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시행함에 있어 분석 대상을 균형인사정책의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서일준 외(2014)의 연구를 통해 균형인사정책의 성과 인식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정책 담당자의 수용성이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균형인사정책의 제도별 수용성과 성과 인식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현재 공직사회 내부에 균형인사정책의 필요성 및 중

요성에 대한 공감성 수준은 어떠한가?”, “균형인사정책의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 간 수용성 및 성과 인식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가?”, “균형인사정책의 수용성은 균형인사정책의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을 매개로 2차 성과인 적극적인 대표성 확보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등의 세 가지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제2장에서는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3장에서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제도별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균형인사정책의 성과 향상 방안에 대한 실무적 함의를 제시한 후 본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검토

1. 균형인사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

균형인사정책의 이론적 토대는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이다. 대표관료제는 공직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일반 사회의 구성론적 특성인 성별, 지역, 인종, 계층 등의 비율과 유사하게 공직을 구성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유민봉·박성민, 2014: 30-31; 박성민·김선아, 2015: 44-45). 다만 대표관료제에서 말하는 대표성은 단순히 인적구성의 대표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공직 내부에서 자신이 속한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행정의 대표성 향상에 기여할 것을 강조한다(Kingsley, 1944). 즉 일반 사회 구성원의 인적 특성과 유사하게 공직을 구성하게 되면 공무원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이들의 입장을 행정 및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투영하면서 궁극적으로 행정의 책임성과 사회적 형평성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탄생하게 된 제도가 대표관료제이다.

대표관료제의 개념 정의를 통해 알 수 있듯 대표관료제의 성과는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의 확보와 2차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의 확보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Mosher, 1982; Selden, 1997).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Passive Representation)은 성별, 지역, 인종, 계층 등의 측면에서 일반 사회의 인적 구성과 유사하게 공무원을 구성하는 ‘구성론적 대표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극적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무

원 채용에서의 차별 철폐 및 공정한 채용 기회의 보장 등 모집·선발 과정에서의 인사관리 도구를 활용하게 된다. 이와 달리 2차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Active Representation)은 구성론적 대표성을 확보한 공직 구성원들이 행정 활동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론적 대표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극적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직으로의 입직 이후,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직급으로의 승진 등 유지·활용 과정에서의 인사관리 도구를 활용하게 된다.

이러한 대표관료제 이념은 각 국가마다 서로 다른 형태로 제도화되어 구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직의 소수집단이라 평가되었던 여성, 장애인, 이공계(과학기술인력) 인재 포용의 관점에서 균형인사정책이 구현되었고 미국의 경우 인종 및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의 관점에서 고용기회 균등정책(EEO: Equal Employment Opportunity)과 소수집단 우대정책(AA: Affirmative Action)이 구현되었다. 우리나라의 균형인사정책은 1996년에 도입된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를 시작으로 정책 대상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현재는 여성, 장애인, 이공계, 지역인재, 저소득층 인재 등 5개 정책 부문으로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인사혁신처, 2018b).

현대 인사행정이 실적주의를 토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표관료제는 대표성 확보 과정에서 더 나은 역량을 갖춘 인재가 선발이나 승진에서 배제되는 역차별(Reverser Discrimination) 문제를 야기하여 실적주의 인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유민봉·박성민, 2014: 31). 하지만 행정의 궁극적 목적인 공익의 수호 및 공공가치 실현의 맥락에서, 대표관료제를 통해 인사행정에 있어 다양한 인적구성을 공직에 포용하고 이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가치들을 행정 활동 및 정책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우리나라 인사행정에서도 균형인사정책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면서 정책 대상 범위의 확대 및 정책 도구의 다양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2. 균형인사정책 관련 선행 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미국은 다인종 국가라는 특성으로 인해 인종 차별 이슈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루어져왔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고용기회 균등정책과 소수집단 우대정책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법적 관점에서 고용기회 균등정책과 소수집단 우대정책 간의 차이를 논의한 연구, 제도적 관점에서 노동시

장에서 해당 제도들이 실제 여성 혹은 흑인 고용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 관리적 관점에서 인사 및 조직 관리 부분에서의 다양성 관리 정책의 효과성을 논의한 연구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Hellriegel & Short, 1972; Hall & Saltzstein; 1977; Chacko, 1982; DiPrete & Soule, 1986; Leonard, 1990; Coate & Loury, 1993; Konrad & Linnehan, 1995; Agocs & Burr, 1996).

이와 달리 국내에서는 균형인사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균형인사정책과 관련된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되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균형인사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는 균형인사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한 연구와 균형인사정책의 수용성 진단 및 성과 향상 방안을 논의한 연구(김동원, 2007; 문미경·최무현, 2007; 박홍엽, 2008; 2009a; 2009b; 오시영, 2009; 진종순, 2009; 서일준 외, 2014)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다만 서일준 외(2014)의 연구에서 수동적 대표성 및 적극적 대표성 등 균형인사정책의 성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정책 담당자의 수용성이 제시된 것처럼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 및 성과 달성에 있어 해당 정책의 담당자 및 대상자의 수용성 확보가 선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문미경·최무현(2007)의 연구와 서일준 외(2014)의 연구 외에는 균형인사정책의 수용성을 논의한 연구가 다소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균형인사정책의 적용 대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균형인사정책의 수용성 및 성과 인식 수준을 진단하고, 각 제도별 수용성이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특히 문미경·최무현(2007)의 연구를 통해 균형인사정책 중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의 수혜 집단인 여성과 비수혜 집단인 남성의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균형인사정책의 수용성 및 성과 인식 수준을 분석하는데 있어 분석 대상을 균형인사정책의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가 처음 도입된 1996년 이후, 우리나라 인사행정에 균형인사정책이 도입된 지 약 20여년이 흐른 현시점에서 공직 사회 내부에 균형인사정책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를 진단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표 1〉 우리나라 균형인사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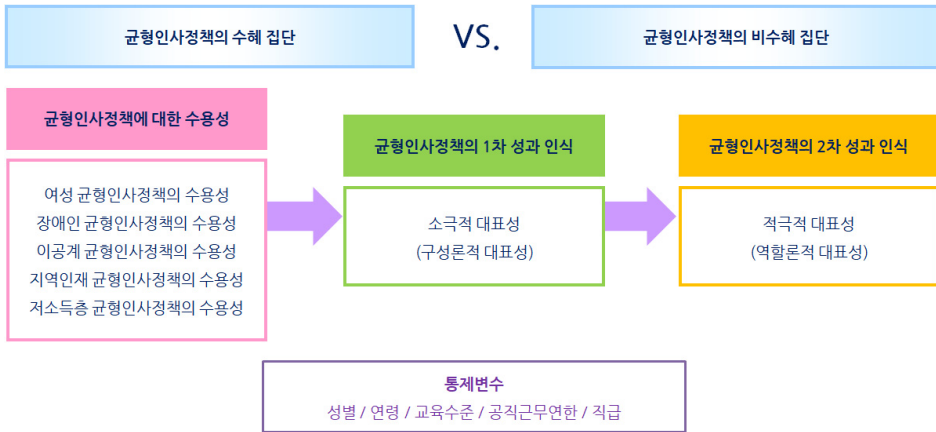
유형	연구자	연구내용
균형인사정책의 문제점 진단 및 발전방향 논의	김동원 (2007)	정책결정자, 법원, 조직 관리자의 관점에서 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향 제시
	박홍엽 (2008)	현황 분석 및 이공계(과학기술인력) 특채자와 특채자 주변인(특채자의 상급자, 동료, 하급자), 인사담당자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이공계 균형인사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향 제시
	박홍엽 (2009a)	문헌검토 및 현황분석과 공무원 인사담당자 대상 인터뷰, 학계·인사 담당 공무원·일반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양성평등 균형인사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향 제시
	박홍엽 (2009b)	현황분석과 학계·인사 담당 공무원·일반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장애인 균형인사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향 제시
	오시영 (2009)	문헌검토 및 현황분석과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양성평등 균형인사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향 제시
균형인사정책의 수용성 진단 및 성과 향상방안 논의	문미경 최무현 (2007)	현황 분석 및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의 수용성 및 인식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에 있어 성별 차이에 주목
	진종순 (2009)	문헌 검토 및 현황 분석, 균형인사정책 적용 공무원과 이들의 주변인(상급자·동료·하급자)·공무원 인사 담당자·인사행정 전문가·일반국민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균형인사정책의 4개 세부 제도별(양성평등 균형인사정책, 장애인 균형인사정책, 이공계 균형인사정책, 지역인재 균형인사정책) 효과성(수동적 대표성 및 적극적 대표성) 평가
	서일준 외 (2014)	과학기술 분야 구성원·지방대학생·여성 및 장애인 단체 회원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균형인사정책의 성과(소극적 대표성 및 적극적 대표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규명

III. 연구 설계

1.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균형인사정책의 수용성 및 성과 인식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공감성 수준을 진단하고, 제도별 수용성 확보를 토대로 균형인사정책의 성과 향상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균형인사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토대로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먼저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정책공감성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균형인사정책의 5개 세부 제도별 수용성과, 균형인사정책의 성과 인식 수준을 핵심 변수로 설정하였다. 수용성(Acceptance)은 순응(Compliance), 동조(Confirmity)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제도나 정책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외적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 태도와 가치체계를 변화시켜 제도와 정책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기재로 작동한다(Duncan, 1981: 192; 이정철·이정옥, 2017: 37-38). 이에 균형인사정책을 비롯하여 성과평가 제도 등 인적자원관리제도의 수용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선행연구를 통해 정책의 수혜 집단인지, 비수혜 집단인지에 따라 수용성 수준에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문미경·최무현, 2007)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을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집단 간 차이검증을 시행하였다.

가설 1.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정책공감성 수준은 균형인사정책의 수혜 집단이 비수혜 집단 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1-1: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제도별 수용성 수준은 균형인사정책의 수혜 집단이 비수혜 집단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1-1a: 여성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 수준은 균형인사정책의 수혜 집단이 비수혜 집단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1-1b: 장애인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 수준은 균형인사정책의 수혜 집단이 비수혜 집단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1-1c: 이공계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 수준은 균형인사정책의 수혜 집단이 비수혜 집단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1-1d: 지역인재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 수준은 균형인사정책의 수혜 집단이 비수혜 집단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1-1e: 저소득층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 수준은 균형인사정책의 수혜 집단이 비수혜 집단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1-2: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성과 인식 수준은 균형인사정책의 수혜 집단이 비수혜 집단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1-2a: 균형인사정책의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은 균형인사정책의 수혜 집단이 비수혜 집단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1-2b: 균형인사정책의 2차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은 균형인사정책의 수혜 집단이 비수혜 집단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균형인사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균형인사정책의 성과 인식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수용성이 핵심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서일준 외, 2014), 성과평가제도 등 인적자원관리제도의 성과를 논의한 많은 연구에서 새로운 인적자원관리제도의 도입 및 실행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이를 적용하는 대상의 수용성이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이석환·조주연, 2010; 최관섭·박천오, 2014; 이정철·이정욱, 2017). 이에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과 성과 인식 간의 인과성 검증을 시도하고자 수용성을 선행요인으로, 성과 인식을 결과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균형인사정책의 이론적 토대인 대표관료제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바탕으로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은 2차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의 선결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소극적 대표성은 매개 변수로, 적극적 대표성은 종속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에 최종 연구 모형은 독립변수인 균형인사정책의 수용성, 결과요인인 성과 인식 중 소극적 대표성은 매개변수, 적극적 대표성은 종속변수,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 4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독립변수인 균형인사정책의 수용성은 여성 균형인사정책의 수용성, 장애인 균형인사정책의 수용성, 이공계 인재 균형인사정책의 수용성, 지역인재 균형인사정책의 수용성, 저소득층 인재 균형인사정책의 수용성 등 5개 하위 요소로 구성하였으며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공직근무연한, 직급 등 5개

하위 요소로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인과관계 검증을 시행하였다.

가설 2. 균형인사정책의 5개 제도별 수용성은 균형인사정책의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여성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소극적 대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장애인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소극적 대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이공계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소극적 대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지역인재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소극적 대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5: 저소득층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소극적 대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균형인사정책의 5개 제도별 수용성은 균형인사정책의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을 매개로 2차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여성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균형인사정책의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을 매개로 2차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장애인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균형인사정책의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을 매개로 2차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이공계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균형인사정책의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을 매개로 2차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4: 지역인재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균형인사정책의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을 매개로 2차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5: 저소득층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균형인사정책의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을 매개로 2차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정책공감성 수준을 진단하고 균형 인사정책의 수용성 인식 수준이 성과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처 규모 및 직급별 분포를 고려한 층화 무작위 표본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활용하여 수집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 10일부터 약 20일간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설문을 배부한 800명의 표본 중 총 447명의 응답이 회수되어 전체 회수율은 55.8%로 나타났다. 다만 이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25명의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실제 유효 회수율은 52.7%(422명의 응답)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의 응답자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조사의 응답자 특성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	여성	226명(53.6%)	공직 근무 연한	5년 미만	139명(32.9%)
	남성	196명(46.4%)		5년 이상-10년 미만	116명(27.5%)
연령	20대	74명		10년 이상-15년 미만	94명(22.3%)
	30대	218명(17.5%)		15년 이상-20년 미만	33명(7.8%)
	40대	117명(51.7%)		20년 이상-25년 미만	24명(5.7%)
	50대	13명 (27.7%)		25년 이상-30년 미만	9명(2.1%)
	60세 이상	0명(3.1%)		30년 이상	7명(1.7%)
교육 수준	무학	1명(0.2%)	직급	고위공무원단	-
	초등학교	1명(0.2%)		3급	1명(0.2%)
	중학교	-		4급	6명(1.4%)
	고등학교	18명(4.3%)		5급	35명(8.3%)
	전문대학교	19명(4.5%)		6급	152명(36.0%)
	대학교	332명(78.7%)		7급	159명(37.7%)
	대학원(석사)	46명(10.9%)		8급	47명(11.1%)
	대학원(박사)	5명(1.2%)		9급	22명(5.2%)
총합			422명(100.0%) 수혜 집단: 76명(18.0%) 비수혜 집단: 346명(82.0%)		

설문문항은 관련 선행연구(한국행정연구원, 2006; 박홍업, 2009a; 2009b; 진종순, 2009; 서일준 외, 2014)를 참고하여 독립변수인 균형인사정책의 수용성, 매개변수 및 종속변수인 균형인사정책의 성과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표 3〉 참고). 구체적으로 독립변수인 균형인사정책의 수용성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여성 균형인사제도 수용성 3개 문항, 장애인 균형인사제도 수용성 3개 문항, 이공계 인재 균형인사제도 수용성 3개 문항, 지역인재 균형인사제도 수용성 3개 문항, 저소득층 인재 균형인사제도 수용성 3개 문항 등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매개변수인 균형인사 정책의 1차 성과로서 소극적 대표성(구성론적 대표성) 3개 문항, 종속변수인 균형인사정책의 2차 성과로서 적극적 대표성(역할론적 대표성) 3개 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해당문항은 모두 리커트 7점 척도(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보통이다, ⑤ 약간 그렇다. ⑥ 그렇다. ⑦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한편 통제요인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공직 근무 연한, 직급 등 총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3〉 측정 항목 및 척도

구분		측정 항목	척도	출처
선행 요인 (균형 인사 정책의 수용성)	여성 균형인사제도의 수용성	① 공직 내 여성공무원 비율의 확대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② 정부 내에 여성의 대표성을 높일 경우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③ 공직 내 여성 진출 확대가 사회 각 분야에 여성의 진출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리커트 척도 (7점)	한국행정연구 구원(2006), 박홍업 (2009a)
	장애인 균형인사제도의 수용성	① 공직 내 장애인 공무원 비율의 확대로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② 공직 내 장애인진출 확대가 장애인에게 소득보장의 기회를확대하고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③ 공직에 장애인의 대표성을 높일 경우 분배 정의 및 사회 통합이 강화될 수 있다.	리커트 척도 (7점)	한국행정연구 구원(2006), 박홍업 (2009b)
	이공계 균형인사제도의 수용성	① 이공계 인재 확대는 행정의 전문성과 정부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② 이공계 인재의 확대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시 도움이 될 것이다. ③ 이공계 인재의 확대는 미래 성장 동력과 기술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리커트 척도 (7점)	한국행정연구 구원(2006)
	지역인재 균형인사제도의 수용성	① 지방인재 균형인사정책이 인재의 수도권집중현상을 막고, 서울소재 대학과 지방대학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지방인재 균형인사정책을 통해 국가경쟁력이 강화	리커트 척도 (7점)	한국행정연구 구원(2006)

구분		측정 항목	척도	출처
		될 수 있다. ③ 지방우수인재 확보로 지방 산업·지방 문화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저소득층 균형인사제도의 수용성	① 저소득층 인재 채용은 소득 수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의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 ② 저소득층 인재 채용은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③ 저소득층 인재 채용은 사회통합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리커트 척도 (7점)	진중순 (2009)
결과 요인 (균형 인사 정책의 성과)	소극적 대표성 (구성론적 대표성)	① 균형인사정책은 여성, 장애인, 이공계 인재, 지방인재, 저소득층 인재 등 소수집단의 공직 진출 확대에 기여하였다. ② 균형인사정책은 여성, 장애인, 이공계 인재, 지방인재, 저소득층 인재 등 다양한 인재의 균형적 활용에 도움이 되었다. ③ 균형인사정책은 여성, 장애인, 이공계 인재, 지방인재, 저소득층 인재 등 소수집단의 대표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리커트 척도 (7점)	진중순 (2009), 서일준 외(2014),
	적극적 대표성 (역할론적 대표성)	① 균형인사정책을 통해 소수집단이 공직에 많이 진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소수집단의 의견을 대변하는데 기여하였다. ② 균형인사정책을 통해 소수집단이 공직에 많이 진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소수 집단의 다양한 가치가 반영되었다. ③ 균형인사정책을 통해 국가 정책 과정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창의성을 높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리커트 척도 (7점)	진중순 (2009), 서일준 외(2014),

※ 통제요인(인구사회학적특성)

- 성별: 남성 / 여성(분석 시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활용: 남성=0, 여성=1)
- 연령: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세 이상
- 교육수준: 무학 / 초등학교 졸업 / 중학교 졸업 / 고등학교 졸업 / 전문대학교 졸업 / 대학교 졸업 / 대학원 석사 졸업 / 대학원 박사 졸업
- 공직근무연한: 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15년 미만 / 15년 이상-20년 미만 / 20년 이상-25년 미만 / 25년 이상-30년 미만 / 30년 이상
- 직급: 고위공무원단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2)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균형인사정책 수용성과 성과 인식 수준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3단계 자료 분석 방법을 거쳤다. 첫째, 설문문항에 대한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균형인사정책

수용도 및 인식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기초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균형인사정책 대상 수혜 집단과 비 수혜 집단의 균형인사정책 수용도 및 인식수준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집단 간 차이 검증(독립 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독립변수인 균형인사정책의 수용성과 매개변수인 소극적 대표성 성과 인식, 종속변수인 적극적 대표성 성과 인식 간의 인과관계 검증을 위해 Baron & Kenny(1986)의 분석 절차에 따라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¹⁾

IV. 실증 분석

1. 측정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균형인사정책의 수용도(여성 균형인사정책 수용도, 장애인 균형인사정책 수용도, 이공계 균형인사정책 수용도, 지역인재 균형인사정책 수용도, 저소득층 인재 균형인사정책 수용도)와 매개변수인 소극적 대표성, 종속변수인 적극적 대표성에 대한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신뢰도 검증을 위한 내적 일관성 분석 결과 모든 구성 개념의 Cronbach's α 값이 0.8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타당도 분석을 위해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적용하고 유의미한 요인 추출을 위해 배리맥스(Varimax) 회전법을 적용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모형에서 선행요인으로 설정한 균형인사정책의 수용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KMO 측도: 0.87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 $p<0.001$) 각 측정 항목의 공통성이 모두 0.7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고유값(Eigenvalue)이 1 이상인 요인이 총 5개 추출되었다. 추출된 5개 요인들이 전체 입력 변수들이 가지는 총 분산을 약 79.2%설명하

1) Baron & Kenny(1986)은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총 3단계의 분석 과정을 제시하였다.

- 1단계: 선행요인을 독립변수, 결과요인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 시행
 - 2단계: 선행요인을 독립변수, 결과요인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 시행
 - 3단계: 선행요인을 독립변수·매개변수, 결과요인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 시행
- 이후 3단계에서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 모두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β)이 2단계가 3단계보다 클 경우 매개변수가 부분매개효과를 갖는다고 해석하며, 3단계에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매개변수만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경우 매개변수가 완전매개효과를 갖는다고 해석한다.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구 모형에서 결과요인으로 설정한 균형인사정책의 성과 인식의 경우 1차 결과요인인 소극적 대표성(매개변수)과 2차 결과요인인 적극적인 대표성(종속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KMO 측도 : 0.871/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 $p < 0.001$) 각 측정 항목의 공통성이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고유값(Eigenvalue)이 1 이상인 요인이 총 2개 추출되었다. 추출된 2개 요인들이 전체 입력 변수들이 가지는 총 분산을 약 61.7%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연구 모형에서 설정한 변수에 대한 측정 도구가 통계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구분		신뢰도 검증	타당도 검증				
		Cronbach's α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선행 요인	A1	0.882	0.160	0.081	0.038	0.891	0.125
	A2		0.138	0.155	0.157	0.886	0.152
	A3		0.183	0.204	0.052	0.778	0.238
	B1	0.870	0.169	0.190	0.277	0.225	0.788
	B2		0.080	0.201	0.363	0.162	0.784
	B3		0.198	0.201	0.261	0.229	0.752
	C1	0.948	0.103	0.898	0.225	0.154	0.174
	C2		0.113	0.877	0.254	0.140	0.187
	C3		0.142	0.867	0.235	0.179	0.184
	D1	0.945	0.923	0.102	0.100	0.168	0.119
	D2		0.921	0.110	0.109	0.140	0.153
	D3		0.894	0.113	0.147	0.169	0.101
	E1	0.922	0.096	0.225	0.867	0.069	0.288
	E2		0.115	0.304	0.930	0.119	0.295
	E3		0.218	0.255	0.786	0.089	0.278
아이겐값			9.420	2.674	1.691	1.531	1.299
분산비율			44.859	12.735	8.8082	7.433	6.184
누적분산비율			44.859	57.594	65.676	73.109	79.293
구분		신뢰도 검증	타당도 검증				
		Cronbach's α	요인 1			요인 2	
결과 요인	PR1	0.880	0.230			0.905	
	PR2		0.466			0.781	
	PR3		0.548			0.696	
	AR1	0.905	0.850			0.358	
	AR2		0.847			0.309	
	AR3		0.846			0.352	
아이겐값			7.098			2.162	
분산비율			47.318			14.416	
누적분산비율			47.318			61.733	

2. 균형인사정책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 간의 인식 차이 검증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균형인사정책의 수용도와 결과요인인 균형인사정책 성과 인식 수준은 <표 5>와 같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공직 입직 시 균형인사정책 수혜 여부에 따라 균형인사정책의 수용성 및 성과 인식 수준에 차이가 예상되어 균형인사정책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 간의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요인인 균형인사정책의 수용도와 결과요인인 균형인사정책의 성과 인식 수준 모두 균형인사정책 수혜 집단의 인식 수준이 균형인사정책 비수혜 집단의 인식 수준 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 간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요인인 균형인사정책의 수용도의 경우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 모두 이공계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인재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과요인인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성과 인식 수준은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중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정책공감성 수준이 비수혜 집단보다 수혜 집단에서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1>에서 가설 1-1e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설은 채택되었다.²⁾

2)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1>에 대한 검증 결과

구분	내용	결과
가설 1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정책공감성 수준은 균형인사정책의 수혜 집단이 비수혜 집단 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부분 채택
가설 1-1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제도별 수용성 수준은 균형인사정책의 수혜 집단이 비수혜 집단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채택
가설 1-1a	여성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 수준은 균형인사정책의 수혜 집단이 비수혜 집단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채택
가설 1-1b	장애인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 수준은 균형인사정책의 수혜 집단이 비수혜 집단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채택
가설 1-1c	이공계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 수준은 균형인사정책의 수혜 집단이 비수혜 집단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채택
가설 1-1d	지역인재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 수준은 균형인사정책의 수혜 집단이 비수혜 집단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채택
가설 1-1e	저소득층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 수준은 균형인사정책의 수혜 집단이 비수혜 집단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기각
가설 1-2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성과 인식 수준은 균형인사정책의 수혜 집단이 비수혜 집단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채택
가설 1-2a	균형인사정책의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은 균형인사정책의 수혜 집단이 비수혜 집단 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채택
가설 1-2b	균형인사정책의 2차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은 균형인사정책의 수혜 집단이 비수혜 집단 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채택

〈표 5〉 균형인사정책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 간의 인식 차이 검증

구분		균형인사정책 수혜 집단		균형인사정책 비수혜 집단		T-Test	
		Mean	Std.D.	Mean	Std.D.	t	Sig.
독립 변수	여성 균형인사정책 수용도	5.17	1.1267	4.72	1.1869	3.076**	0.003
	장애인 균형인사정책 수용도	5.14	0.9542	4.83	1.0312	2.533*	0.013
	이공계 균형인사정책 수용도	5.44	1.1134	5.04	1.0459	2.850**	0.005
	지역인재 균형인사정책 수용도	4.89	1.3393	4.04	1.4226	4.945***	0.000
	저소득층 균형인사정책 수용도	5.17	1.0879	4.99	1.0740	1.332	0.186
매개 변수	소극적 대표성 (구성론적 대표성)	5.43	1.0738	4.79	1.0302	4.762***	0.000
종속 변수	적극적 대표성 (역할론적 대표성)	4.93	1.2543	4.26	1.1370	4.263***	0.000

+p < 0.1, *p < 0.05, **p < 0.01, ***p < 0.001

3. 균형인사정책 수용도와 성과 인식 간의 인과 관계 검증

본 연구에서는 균형인사정책의 수용도와 소극적 대표성 및 적극적 대표성 간의 관계 검증을 위해 분석 대상을 균형인사정책의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으로 구분하여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분석 절차에 따라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1단계 분석에서는 독립변수(X)인 균형인사정책 수용성을 선행요인으로, 매개변수(M)인 소극적 대표성 성과 인식을 결과요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2단계 분석에서는 독립변수(X)인 균형인사정책 수용성을 선행요인으로, 종속변수(Y)인 적극적 대표성 성과 인식을 결과요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후 3단계 분석에서는 독립변수(X)인 균형인사정책 수용성과 매개변수(M)인 소극적 대표성 성과 인식을 선행 요인으로, 종속변수(Y)인 적극적 대표성 성과 인식을 결과요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1) 수혜 집단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 균형인사정책 수혜 집단을 대상으로 균형인사정책의 수

용도와 균형인사정책의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 간의 관계, 그리고 균형인사정책의 수용도와 균형인사정책의 2차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 간의 관계에 있어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시행한 인과관계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수혜 집단의 균형인사정책 수용도와 소극적 대표성 및 적극적 대표성 간의 관계

구분		1단계 분석: X→M (결과변수: 소극적 대표성)		2단계 분석: X→Y (결과변수: 적극적 대표성)		3단계 분석: X, M→Y (결과변수: 적극적 대표성)	
		β	T	β	T	β	T
통제 변수	성별	-0.054	-0.644	-0.057	-0.596	-0.022	-0.276
	연령	-0.077	-0.589	-0.040	-0.264	0.011	0.085
	교육수준	-0.073	-0.776	-0.055	-0.520	-0.008	-0.095
	공직근무연한	0.065	0.591	-0.032	-0.254	-0.074	-0.709
	직급	-0.149	-1.383	-0.061	-0.498	0.035	0.342
독립 변수	여성 균형인사정책 수용도	0.149	1.712+	0.085	0.853	-0.012	-0.141
	장애인 균형인사정책 수용도	0.202	1.844+	0.307	2.454**	0.176	1.653
	이공계 균형인사정책 수용도	0.353	3.141**	0.076	0.591	-0.153	-1.341
	지역인재 균형인사정책 수용도	0.309	3.699***	0.419	4.400***	0.219	2.519*
	저소득층 균형인사정책 수용도	0.166	1.127	0.170	1.016	0.063	0.449
매개 변수	소극적 대표성	-		-		0.647	5.522***
통계량		$R^2=0.669$ $\text{adj}R^2=0.618$ $F=13.118^{***}$		$R^2=0.570$ $\text{adj}R^2=0.504$ $F=8.610^{***}$		$R^2=0.709$ $\text{adj}R^2=0.659$ $F=14.150^{***}$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먼저 독립변수(X)인 균형인사정책의 수용성과 매개변수(M)인 소극적 대표성 성과 인식 간의 관계를 규명한 1단계 분석 모형은 약 61.8%($\text{adj } R^2=0.618$)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여성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도($\beta=0.149$, $p<0.1$), 장애인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도($\beta=0.202$, $p<0.1$), 이공계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도($\beta=0.353$, $p<0.01$), 지역인재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도($\beta=0.309$, $p<0.001$)가 균형인사정책의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X)인 균형인사정책 수용성과 종속변수(Y)인 적극적 대표성 성

과 인식 간의 관계를 규명한 2단계 분석 모형은 약 50.4%(adj $R^2=0.504$)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장애인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도 $\beta=0.307$, $p<0.01$), 지역인재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도($\beta=0.419$, $p<0.001$)가 균형인사정책의 2차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X)인 균형인사정책 수용성과 매개변수(M)인 소극적 대표성 성과 인식을 선행 요인으로 종속변수(Y)인 적극적 대표성 성과 인식을 결과요인으로 이들간의 관계를 규명한 3단계 분석 모형은 약 65.9%(adj $R^2=0.659$)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독립변수 중 장애인재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도($\beta=0.219$, $p<0.05$)와 매개변수인 소극적 대표성($\beta=0.647$, $p<0.001$)이 균형인사정책의 2차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균형인사정책의 수혜 집단에서는 여성 균형인사정책 수용도, 장애인 균형인사정책 수용도, 이공계 균형인사정책 수용도, 지역인재 균형인사정책 수용도 인식이 수준이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은 균형인사정책의 수용도와 2차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 간의 관계에 있어 일부 제도에서만 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 균형인사정책 수용도, 이공계 균형인사정책 수용도와 적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 간의 관계에서는 소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장애인 균형인사정책의 수용도와 적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 간의 관계에서는 소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이 완전 매개효과를, 지역인재 균형인사정책 수용도와 적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간의 관계에서는 소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이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혜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분석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중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와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을 매개로 2차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 중 일부 가설만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³⁾

3) 수혜 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2>와 <가설 3>에 대한 검증 결과

2) 비수혜 집단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 균형인사정책 비수혜 집단을 대상으로 균형인사정책의 수용도와 균형인사정책의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 간의 관계, 그리고 균형인사정책의 수용도와 균형인사정책의 2차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 간의 관계에 있어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시행한 인과관계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독립변수(X)인 균형인사정책의 수용성과 매개변수(M)인 소극적 대표성 성과 인식 간의 관계를 규명한 1단계 분석 모형은 약 33.4%(adj $R^2=0.334$)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여성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도($\beta=0.171$, $p<0.05$), 장애인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도($\beta=0.257$, $p<0.001$), 지역인재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도($\beta=0.211$, $p<0.001$)가 균형인사정책의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X)인 균형인사정책 수용성과 종속변수(Y)인 적극적 대표성 성과 인식 간의 관계를 규명한 2단계 분석 모형은 약 28.4%(adj $R^2=0.284$)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여성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도($\beta=0.210$, $p<0.001$), 장애인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도($\beta=0.212$, $p<0.05$), 지역인재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구분	내용	결과
가설 2	균형인사정책의 5개 제도별 수용성은 균형인사정책의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가설 2-1	여성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소극적 대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2	장애인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소극적 대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3	이공계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소극적 대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4	지역인재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소극적 대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5	저소득층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소극적 대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3	균형인사정책의 5개 제도별 수용성은 균형인사정책의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을 매개로 2차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가설 3-1	여성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균형인사정책의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을 매개로 2차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3-2	장애인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균형인사정책의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을 매개로 2차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3	이공계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균형인사정책의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을 매개로 2차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3-4	지역인재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균형인사정책의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을 매개로 2차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5	저소득층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균형인사정책의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을 매개로 2차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수용도($\beta=0.312$, $p<0.001$)가 균형인사정책의 2차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 비수혜 집단의 균형인사정책 수용도와 소극적 대표성 및 적극적 대표성 간의 관계

구분		1단계 분석: X→M (결과변수: 소극적 대표성)		2단계 분석: X→Y (결과변수: 적극적 대표성)		3단계 분석: X, M→Y (결과변수: 적극적 대표성)	
		β	T	β	T	β	T
통제 변수	성별	-0.040	-0.824	0.010	0.190	0.035	0.875
	연령	-0.006	-0.081	-0.014	-0.184	-0.011	-0.185
	교육수준	-0.017	-0.365	-0.034	-0.698	-0.024	-0.631
	공직근무연한	-0.037	-0.512	-0.024	-0.327	-0.001	-0.025
	직급	-0.037	-0.732	-0.041	-0.795	-0.018	-0.450
독립 변수	여성 균형인사정책 수용도	0.171	2.980**	0.210	3.531***	0.099	2.092*
	장애인 균형인사정책 수용도	0.257	3.689***	0.212	2.943**	0.048	0.820
	이공계 균형인사정책 수용도	0.041	0.737	-0.007	-0.129	-0.035	-0.771
	지역인재 균형인사정책 수용도	0.211	4.060***	0.312	5.821***	0.177	4.089***
	저소득층 균형인사정책 수용도	0.101	1.573	-0.053	-0.793	-0.119	-2.254*
매개 변수	소극적 대표성	-		-		0.643	14.365***
통계량		$R^2=0.354$ $\text{adj}R^2=0.334$ $F=18.120***$		$R^2=0.305$ $\text{adj}R^2=0.284$ $F=14.591***$		$R^2=0.572$ $\text{adj}R^2=0.558$ $F=40.135$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마지막으로 독립변수(X)인 균형인사정책 수용성과 매개변수(M)인 소극적 대표성 성과 인식을 선행 요인으로 종속변수(Y)인 적극적 대표성 성과 인식을 결과요인으로 이들간의 관계를 규명한 3단계 분석 모형은 약 55.8%($\text{adj} R^2=0.558$)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독립변수 중 여성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도($\beta=0.099$, $p<0.05$), 지역인재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도($\beta=0.177$, $p<0.001$)와 매개변수인 소극적 대표성($\beta=0.643$, $p<0.001$)이 균형인사정책의 2차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저소득층 균형인사정책 수용도($\beta=-0.119$, $p<0.001$)는 적극적 대표성 확

보 인식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균형인사정책의 비수혜 집단에서는 여성 균형인사정책 수용도, 장애인 균형인사정책 수용도, 지역인재 균형인사정책 수용도 인식이 수준이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은 균형인사정책의 수용도와 2차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 간의 관계에 있어 일부 제도에서만 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공계 균형인사정책 수용도, 저소득층 균형인사정책 수용도와 적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 간의 관계에서는 소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장애인 균형인사정책 수용도와 적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 간의 관계에서는 소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이 완전 매개효과를, 여성 균형인사정책 수용도, 지역인재 균형인사정책 수용도와 적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간의 관계에서는 소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이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수혜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분석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중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와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을 매개로 2차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 중 일부 가설만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⁴⁾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 및 성과 인식을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정책공감성 정도를 진단하고 제도별 수용성 확보가 균형인사정책의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과 2차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는 것이다. 특히 균형인사정책의 수혜 여부에 따라 정책공감성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분석 대상을 균형인사정책의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공직사회 내부에 균형인사정책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공감성 수준은 어떠한가?”, “균형

4) 비수혜 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2〉와 〈가설 3〉에 대한 검증 결과

인사정책의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 간 수용성 및 성과 인식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가?”, “균형인사정책의 수용성은 균형인사정책의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을 매개로 2차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등의 세 가지 연구 질문의 해답을 구하기 위해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첫 번째 연구 질문인 “현재 공직사회 내부에 균형인사정책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공감성 수준은 어떠한가?”에 대한 분석 결과, 균형인사정책의 수용성 및 성과 인식 수준 모두 7점 척도를 기준으로 5점 내외로 나타나 균형인사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 수준이 대체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균형인사정책의 5가지 세부 제도별 수용도 측면에서는 이공계 균형인사정책의 수용성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으로 여성 및 저소득층, 장애인, 지역인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과의 경우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이 적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 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연구 질문인 “균형인사정책의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 간 수용성 및 성과 인식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 결과, 수용성 측면에서는 5가지 세부 제도 중 여성, 장애인, 이공계, 지역인재 균형인사정책에 대해서 비수혜 집단 보다 수혜 집단의 수용성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 저소득층 균형인사정책의 수용성의 경우 수혜 집단의 수용성

구분	내용	결과
가설 2	균형인사정책의 5개 제도별 수용성은 균형인사정책의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가설 2-1	여성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소극적 대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2	장애인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소극적 대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3	이공계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소극적 대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2-4	지역인재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소극적 대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5	저소득층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소극적 대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3	균형인사정책의 5개 제도별 수용성은 균형인사정책의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을 매개로 2차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가설 3-1	여성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균형인사정책의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을 매개로 2차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2	장애인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균형인사정책의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을 매개로 2차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3	이공계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균형인사정책의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을 매개로 2차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3-4	지역인재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균형인사정책의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을 매개로 2차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5	저소득층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균형인사정책의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을 매개로 2차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수준이 비수혜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균형인사정책의 성과 인식 수준의 경우,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 확보와 2차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 확보 모두 비수혜 집단 보다 수혜 집단의 인식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구 질문인 “균형인사정책의 수용성은 균형인사정책의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을 매개로 2차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 결과, 수혜 집단에서는 여성 균형인사정책 수용도, 장애인 균형인사정책 수용도, 이공계 균형인사정책 수용도, 지역인재 균형인사정책 수용도 인식이 수준이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균형인사정책의 수용도와 2차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 간의 관계에서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은 장애인 균형인사정책의 수용도와 적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 간의 관계에서는 완전 매개효과를, 지역인재 균형인사정책 수용도와 적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간의 관계에서는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비수혜 집단에서는 여성 균형인사정책 수용도, 장애인 균형인사정책 수용도, 지역인재 균형인사정책 수용도 인식이 수준이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균형인사정책의 수용도와 2차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 간의 관계에서 1차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은 장애인 균형인사정책 수용도와 적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 간의 관계에서는 완전 매개효과를, 여성 균형인사정책 수용도, 지역인재 균형인사정책 수용도와 적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간의 관계에서는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균형인사정책의 5가지 세부 제도별 수용성 측면에서 보다 정교하고 구체적인 균형인사정책의 개발과 적용, 내재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균형인사정책의 5가지 세부 제도별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무원의 정책공감성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정책집행 및 제도화에 있어 우선순위에 대한 전략적 판단과 방향 제시가 중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여성, 장애인, 이공계, 지역인재, 저소득층과 더불어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주민 등 미래 균형인사정책의 신규 정책 대상을 폭넓게 탐색하고, 제도별 중요성 및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공직 내 균형인사지수 등을 개발하여 균형인사정책의 추진력 및 이행력을 담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제도 및 가치별 중요성 및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적실성 있게 설정하는 것은 물론 각 제도별로 추

구하는 균형인사가치를 구체적인 정책 도구로 치환하고 이를 적실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여성 균형인사정책의 지표화 과정에서는 공무원의 여성 비율 확대를 포함하여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 확대, 본부 과장 및 국장급 여성 비율 확대, 주요 직위 여성 임용 확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1차적 성과인 소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이 2차적 성과인 적극적 대표성 확보 인식 수준보다 높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역할론적 대표성의 가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균형인사정책을 통해 국가 정책 과정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면서 정책의 창의성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적 책임성, 사회적 형평성, 사회적 통합성 등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한 구체적 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공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역할론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균형인사정책 구현에 있어 한국적 공직문화를 고려한 적실성 높은 정책 도구 개발을 위해 속의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구성 비율 확대라는 구성론적 대표성의 가치를 넘어서는 역할론적 대표성, 나아가 통합과 포용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공 인적자원관리에 있어 포용적 조직문화 형성을 목표로 하는 다양성 관리 시각을 적극적으로 투영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입직 이후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이 대표하는 집단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 직급으로의 승진 등과 같은 도구를 활용함과 더불어 다양성 관리의 맥락에서 공무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유연근무제, 친가족제도, 개인성장지원제도 등을 포함하는 맞춤형 일과 삶 균형 정책의 구현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과 소극적 대표성에 대한 성과인식, 적극적 대표성에 대한 성과인식 간에 인과성이 확인된 만큼 향후 발전적인 균형인사정책의 구현을 위해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관리자의 태도, 균형인사제도의 만족도 및 효과성 등을 진단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전문적 시각에서 균형인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의 다양성 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배양하고, 다양성 관리 교육 프로그램과 다문화 이해 훈련 과정을 개발하여 이를 공무원 교육 과정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인 균형인사정책을 완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공직 사회 내부의 정책공감성 수준 진단을 통해 제도별 수용성 확보를 토대로 균형인사정책의 성과 향상 방안을 논의하였다는 측

면에서 이론적·정책적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연구 방법 측면에서,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보다 풍부한 관점을 담아내지 못했다. 향후에는 분석 대상을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고 인식 조사뿐만 아니라 인터뷰 등과 같은 질적 연구(In-depth Qualitative Studies) 방법론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보다 적실성 있는 인식 조사를 위해 설문문항 구성에 있어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설문 문항을 참고함과 더불어 학계 및 실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측정 문항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연구 내용 측면에서, 본 연구는 결과변수로 소극적 대표성 인식 수준과 적극적 대표성 인식 수준만을 고려하여 균형인사정책의 구현에 따른 실질적 효과성을 검증하지는 못하였다. 향후에는 관리적 차원에서 보다 의미 있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창의성, 긍정적 조직 문화, 사회적 가치 확산 등 다양한 결과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동원. (2007). “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4(1), 261-286.
- 문미경·최무현. (2007).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수용성에서의 성별 차이: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39-358.
- 박성민·김선아. (2015). 「조직과 인간관계」. 박영사.
- 박홍엽. (2008). “과학기술인력분야 균형인사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보」, 7(1) 287-314.
- 박홍엽. (2009a). “여성 분야 균형인사정책의 평가와 발전 방안.” 「한국정책연구」, 9(1), 281-304.
- 박홍엽. (2009b). “장애인 분야 균형인사정책의 실효성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공공관리학보」, 23(2), 71-98.
- 서일준·최무현·김영우. (2014). “균형인사정책의 성과인식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3(3), 337-354.
- 신정아. (2015). “미디어 소통의 관점에서 본 여행 프로그램의 공감성 연구: tvN <꽃보

- 다 청춘> 페루 편을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21, 133-160.
- 오시영. (2009). “공직 성비(性比) 변화에 따른 임용관련 인사제도의 실효성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485-503.
- 유민봉·박성민. (2014). 「한국인사행정론 (제5판)」. 박영사.
- 이석환·조주연. (2010). “성과평가제도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평가체제요인과 내부동기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4), 269-291.
- 이정철·이정욱. (2017). “공공조직 구성원의 성과관리 수용성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보」, 13(4), 33-69.
- 인사혁신처. (2018a).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인사혁신처 발간물.
- 인사혁신처. (2018b).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 인사혁신처 발간물.
- 진종순. (2009). “균형인사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적극적 대표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4), 43-69.
- 최관섭·박천오. (2014). “중앙부처 공무원의 성과평가제도 수용성: 성별·직급별·연령별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3(3), 89-116.
- 한국행정연구원. (2006). 「균형인사정책의 실효성 평가와 개선방안」. KIPA 연구보고서.
- Agocs, C., & Burr, C. (1996). “Employment equity, affirmative action and managing diversity: Assessing the differ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manpower*, 17(4/5), 30-45.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Chacko, T. I. (1982). “Women and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Some unintended effec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7(1), 119.
- Coate, S., & Loury, G. C. (1993). “Will affirmative-action policies eliminate negative stereotyp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220-1240.
- DiPrete, T. A., & Soule, W. T. (1986). “The organization of career line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status advancement in a federal bureaucra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95-309.
- Duncan, J. W. (1981). *Organizational Behavior* (2nd Ed.). Houghto Mifflin.

- Hall, G., & Saltzstein, A. (1977).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for minorities in municipal government." *Social Science Quarterly*, 57(4), 864-872.
- Hellriegel, D., & Short, L. (1972).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in the federal government: A comparative analysi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851-858.
- Kingsley, J. D. (1944). *Representative Bureaucracy*. Antioch Press.
- Konrad, A. M., & Linehan, F. (1995). "Race and sex differences in line managers' reactions to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affirmative action interventions." *Group & Organization Management*, 20(4), 409-439
- Konrad, A. M., & Linnehan, F. (1995). "Formalized HRM structures: coordinating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or concealing organizational practic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8(3), 787-820.
- Leonard, J. S. (1990). "The impact of affirmative action regulation and equal employment law on black employmen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4(4), 47-63.
- Mosher, F. C. (1982). *Democracy and the Public Service*. Oxford University Press on Demand.
- Rifkin, J. (2009). *The Empathic Civilization: The Race to Global Consciousness in a World in Crisis*. Penguin.
- Selden, S. C. (1997). *The Promise of Representative Bureaucracy*. M. E. Sharpe.

김선아(金善娥): 주저자.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BK 21 PLUS 사업단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인적자원관리, 인사혁신, 행정관리 등이다 (seona1203@skku.edu).

박성민(朴盛民): 교신저자. The University of Georgia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인적자원관리 및 인적자원개발, 인사혁신, 행정관리 등이다.(sm28386@skku.edu).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Volume 13 Number 4

December 2018

Contents

Factors affecting educational training program for local capacity building: Empirical evidence from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in Bonghwa Changhun Son & Yongjin Ahn	1
Assets Types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s Hangchae Chang	21
Structural Analysis of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Dementia in Community Dementia Elderly: Focusing on the Third Dementia Management Plan Inkyu Choi & Keunhwan Yoo & Jieun Park & Kwanghyun Chang	45
Need for Economic Welfare of Korean Elderly: Preferable Types of Economic Welfare and Their Determinants Wangwon Lee & Muncho Kim	71
An Empirical Exploration on Public Employees' Acceptability of Balanced Personnel Policies Seona Kim & Sung Min Park	103

Abstract

Factors affecting educational training program for local capacity building: Empirical evidence from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in Bonghwa

Changhun Son & Yongjin Ahn

The operational strategy for a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has changed from physical hardware to nonphysical software programs.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the factors affecting educational training program for local capacity building. Focusing on 5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already completed in Bonghwa, Gyeongsangbuk-do, this study aim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 for the operation of software programs by quantify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with educational training program.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field survey questionnaire, we specified the empirical framework and conducted ordered logit model. The results revealed that participation in resident's meeting, field trip for excellent case areas, and publicity activitie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satisfaction with educational training program at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p < .05$), whereas the significant influence was not found among the specific variables regarding governance and job/income improvement. Moreover, the impact size of participating in resident's meeting ($B=5.08$) is larger than that of field trip ($B=3.09$) and publicity activities ($B=1.64$). From these findings, software programs more focused on individual resident's capacity building rather than on local leaders will be highlighted and recommended in operating the future rural development projects.

[Key words: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Strengthening Local Capacity, Educational training program, Residents' Satisfaction, Residents' Participation, Ordered logit model]

Assets Types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s

Hangchae Cha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verify the influence of asset patterns on life satisfaction in the aged, as analyzing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s. In order to the aim addressed above, the study used the questionnaire that was administered to KReIS panel 5th data and sub-data in 2014. In this study, some hypotheses were set through literature review to tes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bles given. Their hypotheses were tested by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in this study are as follow. (1) each asset pattern positively affect life satisfaction in the aged, (2) social supports as mediating variable on every assets pattern except debt are e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as dependent variable. These results revealed that each asset pattern differently affect the life satisfaction in the aged, and then the social supports are e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in the aged.

[Key words: Aging, Assets Portfolio, Social Support, Life Satisfaction, KReIS Panel Data]

Structural Analysis of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Dementia in Community Dementia Elderly: Focusing on the Third Dementia Management Plan

Inkyu Choi & Keunhwan Yoo & Jieun Park & Kwanghyun Chang

Recently, the importance of national policy for managing dementia has been increasing.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contents of dementia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 in Korea in terms of effective management of dementia patients, and proposed future improvement tasks. For this purpose, the DEMATEL method, one of the structural model methodologies, is used to understand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complex problems (tasks) existing in the management field of the mild demented elderly in the commun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community-centered dementia prevention and management issues associated with mild demented elderly people in the community? Second, what kind of consciousness structure do people have about the real problems of providing care for the dementia diagnosis care for people with mild dementia related work? Third, what is the difference in perceptual structure between the dementia management policy, planning, and budget allocation to provide direct service in the field in order to reduce the burden of care for family members with dementi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and the subjects of national dementia management policy, to establish integration, linkage and coordination system with medical services, to formulate policy for dementia, We also proposed the need for performance evaluation to establish effective policies.

[Key words: Dementia Management Policy, Third Dementia Management Plan, DEMATEL Method, Structural Model]

Need for Economic Welfare of Korean Elderly: Preferable Types of Economic Welfare and Their Determinants

Wangwon Lee & Muncho Kim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eed for economic welfare of the Korean elderly. Based upon the 5th. KReIS(Korea Retirement and Income Study) data, preferable types of economic welfare of Korean old generation and their determinants are investigated. Due to changing family structure, chronic economic recession and faltering traditional values, dependency on formal welfare system provided by national/local government has been growing among the Korean elderly.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self-support or private welfare largely conducted by family members has been highly favored because being rich enough not to ask any formal welfare benefit or having family member(s) to take care their elderly is thought to be more desirable than being categorized and labeled as recipient of livelihood program. In terms of ANOVA,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d supplementary t-test, preferred types of economic welfare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socio-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familial factors are analyzed.

[Key words: Aging, Elderly, Welfare, Health, Family, SES, Korea]

An Empirical Exploration on Public Employees' Acceptability of Balanced Personnel Policies

Seona Kim & Sung Min Park

Probing the effects of balanced personnel policies in Korea, this study was to test and confirm the critical roles of policy acceptability and perceived performance of public employees. Specifically, the current research analyzed the effects of positive perceptions on balanced personnel policies toward passive and active representation. In addition, on the basis of previous studies which provide a set of theoretical and heuristic rationales, this research divided the samples into a non-recipient group and a beneficiary group. Furthermore, to unveil more dynamic relationship among the designated variables, this study hypothesized the crucial mediating role of passive representation which is meaningfully associated with active representation. Drawing upon three main research questions(i.e., ① exploring the status of current Korean balanced personnel policies, ② testing the differences of public employees' perceptions on policy acceptability, and ③ confirming the mediating roles of passive representation) this study suggests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directing future research on passive and active representation as well as overhauling balanced personnel policies, practices, and strategies in Korea.

[Key words: Balanced Personnel Policies, Policy Acceptability, Passive Representation, Active Representation]

논문기고지침 및 윤리규정

■ 투고 및 심사

1. 「국정관리연구」는 거버넌스(governance)에 관한 다양한 시각의 이론적·경험적 연구와 정책사례 연구를 다룬다.
2.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의뢰한 논문이나 다른 학술지 등에 게재된 논문과 중복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3. 본 학술지에 기고하였다가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6개월이 경과한 다음, 근본적인 수정을 하고 '재투고'(처음 투고한 일자 표시)임을 명기하여 투고할 수 있다. 이 경우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은 당초의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4. 투고자는 원고 파일을 편집위원회(e-mail: goveditor@gmail.com)로 전송한다.
5. 수시로 접수하는 공모논문과 편집위원회의 기획논문 모두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3인의 비밀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6. 초심의 심사판정은 '게재 가,' '수정게재,' '게재 불가'의 3가지로, '수정게재'에 대한 재심은 '게재 가'와 '게재 불가'의 2가지로만 판정한다. 초심 또는 초·재심에서 둘 이상의 '게재 가' 판정을 받은 경우만 게재하되, 하나의 '수정게재' 또는 '게재 불가'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수정을 권고하여 게재한다. '수정게재'의 경우 투고자가 주어진 기간 내에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편집위원회가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7.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게재 논문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에게 참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8. 편집위원회는 심사 진행과정과 결과를 조속히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 원고작성

■ 기본사항

1.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괄호 속에 서양어 또는 한자를 쓸 수 있다. 외국학자의 이름은 원어로 쓰되 한자인 경우에는 괄호 속에 원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다.
2. 원고는 **호글**로 작성하며, 전체분량은 200자 원고지 135매(27,000자)를 원칙으로 하되 (**호글**의 '파일-문서정보-문서통계'에서 확인),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 5매(1,000자)당 1만 5천원의 인쇄비를 징수한다. 단, 200자 원고지 175매(35,000)를 초과하

는 논문은 기고할 수 없다.

3. 원고는 제목, 국문초록(500자 이내, 주제어 3개), 영문초록(200 단어 이내, 주제어 3개), 본문, 참고문헌, 부록의 순으로 배열한다. 표지에는 논문제목(국·영문), 성명(국·영문), 소속기관 및 직위, 연락주소, 전화(직장, 자택), 팩스번호를 기재한다.
4. 심사용 원고 제출 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문주와 참고문헌에서 필자의 이름은 삭제하며, ‘줄고’나 ‘줄저’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5. 원고작성의 세부적 지침은 다음과 같다: <글자모양>: 글꼴: 신명조; 크기: 10(본문), 9(각주·인용문단·참고문헌·필자소개); 장평 100; 자간: 0; <문단모양>: 좌·우 여백: 0; 줄간격: 160; 문단 상·하 간격: 0; 들여쓰기: 3; 정렬방식: 양쪽혼합; <편집용지>: 상·하: 30; 좌: 31; 우: 30; 머리말·꼬리말: 12.
6. 학위논문에 근거한 원고는 그 사실을 원고 1면에 각주로 밝혀야 한다.
7. 게재확정 통보를 받으면 원고의 끝 부분에는 성명(한자), 박사학위(학위명, 취득년도, 취득대학, 논문제목), 소속기관 및 직위, 학문적 관심분야(3개 이내), 최근 5년 이내의 저서 및 출간논문(3편 이내), e-mail 등을 중심으로 간략한 자기소개를 추가한 최종 원고를 제출한다.
8. 제출된 논문이 게재되면 기고자는 본 학술지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데 동의한다.
9. 원고의 본문주, 참고문헌 등은 아래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본문주

1. 인용이나 참고한 문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주(reference notes)는 본문 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reference list)을 논문의 끝부분에 첨부한다. 같은 문헌이 되풀이 될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한다.
 - ▶ 문헌의 출처는 문장의 가운데 또는 끝에 언급한다.
예: 박동서(1990: 20)에 의하면…; …을 제시하였다(안병영, 2005: 5-6 참조); 「조선일보」(1990.11.1: 3) 사설에서도….
 - ▶ 저자가 2인인 경우 국내문헌과 한자로 된 중일 문헌은 중간점(.)으로, 서양문헌은 ‘&’로 연결한다.
예: 김창준·안병만(1990)은…; …라고 볼 수 있다(Richard & Smith, 2002: 35-36).
 - ▶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 국내문헌과 한자로 된 중일 문헌은 ‘외’를, 서양문헌은 et al.을 사용한다.
예: …로 해석한다(이종범 외, 1990: 368). Bevir et al.(2003)의 분류에 따르면….
 - ▶ 번역서인 경우 원전의 발행연도 다음에 번역판의 발행연도와 해당 면을 기재한다.
예: Okun(1975/1988: 61-69)은 …를 주장하였다.
 - ▶ 둘 이상의 문헌을 언급할 때는 발행 연도순으로 한다.
예: …로 정리할 수 있다(Rhodes, 2000: 58-62; Nakamura, 2005 참조).
2. 본문의 내용에 설명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주(content notes)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에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기고(예: …하였다.1))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다.

■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한 것만을 기록하며, 저자의 성(姓)을 기준으로 국내 문헌은 가나다 순으로, 한자로 된 중·일문헌은 괄호 속에 한글식 표기를 하여[예: 菅谷章(스가라 아키라)] 가나다 순으로, 서양문헌은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2. 동일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연도 순으로 나열한다. 같은 연도에 출간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제목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되 연도 표기 옆에 a, b, c...를 부기하여 구별한다.
3.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서로 기재한다.

▶ 단행본

박동서. (1990). 「한국행정론」. 서울: 법문사.

전자정부특별위원회. (2003). 「전자정부백서」. 서울: 전자정부특별위원회.

Benz, Arthur & Yannis Papadopoulos (eds.). (2006). *Governance and Democracy: Comparing National, European and International Experienc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Kooiman, Jan. (2003). *Governing as Governance*. London: SAGE Publications.

Okun, Arthur M. (1975). *Equality and Efficiency: The Big Trade off*.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e; 정용덕(역). 「평등과 효율」.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8.

Richards, David & Martin J. Smith. (2002). *Governance and Public Policy in the UK*.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일반논문

김창준·안병만. (1989).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료행태 비교.” 박동서·김광웅(공편), 「의회와 행정부」, 77-115. 서울: 법문사.

이종범·김준한·정용덕. (1990). “행정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4(1): 367-426.

Bevir, Mark, R.A.W. Rhodes, & Patrick Weller. (2003). “Traditions of Governance: Interpreting the Changing Role of the Public Sector.” *Public Administration*, 81(1): 1-17.

Kettl, Donald F. (2000). “The Transformation of Governance: Globalization, Devolution, and the Role of Governan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0(6): 488-497.

Rhodes, R.A.W. (2000). “Gover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Jon Pierre (ed.), *Debating Governance: Authority, Steering, and Democracy*, 54-9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학위논문

신열. (2000). 「과학기술지방화정책의 기술혁신 효과 분석: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사업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Hwang, Yun-won. (1987). *An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 학술대회 발표논문

안병영. (2005). “한국행정학의 성찰과 전망.”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한국행정학의 성찰과 전망). 천안, 4.29-4.30.

Nakamura, Akira. (2005). “Government, Governance, and Governability: The Future Role and Function of Local Government.” Paper presented at the Sixth Global Forum on Reinventing Government. May 24-27, Seoul, Korea.

▶ 법률, 신문기사, 인터넷자료 등

「감사원법」(개정 2005.5.26, 법률 제7521호).

안병영. (1990). “관료부패는 고질병인가.” 「한국일보」, 6.26: 5.

「조선일보」. (1993). “통상전담기구 만들어야.” 1.30: 3.

Mallaby, Sebastian. (1999). “Big Nongovernment.” *Washington Post*, November 30: A29.

OMB. (2006). *PART: Refresher Training*. http://www.whitehouse.gov/omb/part/training/2006_refresher_training.pdf(2006.9.5).

■ 기타사항

1.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I, 1, 1), (1), ①의 순서를 따른다.
2. 표나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의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겨(예: <표 1>, <그림 1>) 표나 그림의 윗부분에 쓰고, 자료의 출처는 ‘출처:’라고 표시하고 본문 ‘참고주’의 양식에 따라 아랫부분에 밝힌다(예: Kettl(2000: 490)의 재구성).
3. 표나 그림에 대한 주는 개별주(a), b), c)의 기호 사용; 확률주인 경우에는 *p<.05, **p<.01, ***p<.001, 일반주(‘주:’로 표시하고 기재)의 순으로 자료 출처의 윗부분에 달아 준다(즉, 표나 그림의 하단에 개별주, 일반주, 출처의 순서가 되도록 배열한다).
4. 여기에 제시된 본문주와 참고문헌의 작성 양식은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01), 5th. ed.을 표준으로 하여 필요한 조정을 한 것이다. 본 양식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이 Manual에 따른다.

■ 서평

1. 서평은 편집위원회가 기획하는 ‘기획서평’과 저자의 의뢰 또는 평자의 기고로 이루어지는 ‘일반서평’으로 구분한다. 저자 의뢰의 경우 서평을 위한 저서의 제출이 이루어진 후 편집위원회에서 평자를 추천받아 서평을 의뢰한다.
2. 기획서평은 연구서에 대한 비평적 소개의 수준을 넘어 분석적 검토를 하고 참고문헌과 각주 등 논문의 온전한 형태를 갖춘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40매 이상으로 한다.
3. 일반서평은 연구서의 내용과 기여도 등 비평적으로 소개하고 원칙적으로 참고 문헌이나 각주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분량은 1권당 200자 원고지 20매 이내로 한다.
4. 서평은 교과서를 제외한 국내·외 출간 전문연구서를 대상으로 하며, 서명·저자·출판

사·출판년도·페이지·가격 등을 포함한다.

5. 서평 원고는 본 학술지의 원고작성 양식에 따라 제출한다.

■ 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부정행위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연구윤리정립과 학문적 진실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학술지에 심사를 의뢰하는 연구자 및 소속연구원 모두에 적용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표절”은 다른 연구자의 주장이나 표현을 정당한 인용 표현 없이 자신의 연구결과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중복게재”는 기존에 발표된 내용과 같거나 상당 부분이 중복되는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하여 결과적으로 논문 한 편이 두 번 인용되고 같은 내용이 불필요하게 반복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와 논문작성에 있어서 충분한 공로와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을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이 외에 학문적 진실성을 해하는 행위 일체를 포함한다.

제2장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제4조 (정직성) 본 학술지에 연구를 의뢰하는 연구자 및 소속연구자들은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연구결과를 정직하게 전달하고 학문적 진실성을 위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 책임)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가 가질 영향과 사회에 의한 연구의 오용까지도 고려해야할 책임이 있다.

제6조 (법 준수 의무) 본 학술지에 심사를 의뢰하는 연구자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해야 하며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법과 연구와 관련이 있는 모든 법들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7조 (신의성실의무) 본 학술지의 규정에 따라 책무를 다하고 연구 부정행위 조사와

절차에 협력하여야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절차

제8조 (검증주체) ① 본 학술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편집위원회에 있다.

②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이 될 수 없다.

1. 검증받는 연구자와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검증받는 연구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거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있었던 자
3. 기타 검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9조 (대상) 본 학술지는 고의적으로나 하거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연구부정행위로 보고 이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구부정행위란, 중복게재, 위조, 변조, 부당한 논문저자표기 등 제3조에 제시되어 있는 사항이다.

제10조 (절차) ① 편집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로 제소될 경우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하며, 편집위원회 전원으로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로 제소하기 위해서는 편집위원 3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연구부정행위로 보지 않는다.

③ 편집위원회는 제소된 자에 대해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개인정보보호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절대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4장 결정에 대한 조치

제11조 (결과의 통보) 연구부정행위를 행한 연구자 및 그 연구자의 논문에 대해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본 학술지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인터넷 상에 게재된 논문 삭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부정행위사실의 통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한다. 통보 받은 소속기관은 재량으로 연구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윤리교육) 연구부정행위를 행한 연구자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여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3조 (명예회복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던 것으로 판명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편집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과정 당시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조사종료일로부터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부칙

제15조 (기타 관련규정 준수) 상기 조항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 그 개정(예고) 규정, 교육과학기술
부·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2011)의 기준을 따른다.

제16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7조 (적용범위) 이 지침 시행 이전에(통권 1호~13호) 발행된 연구결과물은 당시 윤
리규정 및 소관기관 규정을 따른다.

「국정관리연구」 제13권 제4호(통권31호)

2018년 12월 30일 인쇄

2018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김근세
편집인 문상호
발행처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우: 03063)
전 화 (02)760-0745
홈페이지 <http://gsg.skku.edu>
E-mail goveditor@gmail.com

인쇄처 디자인크레파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길 25-11 오구빌딩 3층
전 화 (02)2267-0663
팩 스 (02)2285-0670
E-mail crayon0663@hanmail.net
